



2013-

# OECD Family database 한국 자료 구축 및 제공

신윤정 · 이지혜

**【책임연구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OECD KOREA Policy Centre, KIHASA, 2012(공저)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 제출문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보고서의  
한국어판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6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윤정



한국의 출산율은 전례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노력이 과거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출산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유용할 시사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OECD Family database는 OECD 회원국가 간의 현황을 비교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 정책 연구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통계 자료를 OECD 기준에 맞게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은 관련 연구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가족, 여성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상당한 중요한 과업이다.

본 연구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의 한국 자료를 최신 자료로서 보완하고 현행화함으로써 한국의 현황과 정책적인 경험을 OECD 회원국에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 된다. 동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 가족 자료의 향상 및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 및 고령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가족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신윤정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현식 부연구위원과 이지혜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영문 보고서를 국내 독자들을 위해 한글어로 번역한 내용이다. 동 연구를 지원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연구 진행 전반에 걸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전달한 OECD Social Policy Division의 Willem Adema와 Nabil Ali 그리고 이민원 과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목 차

요 약 .....	1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9
제2장 OECD Family database: 횡단면 자료 .....	13
제1절 가족의 구조 .....	18
제2절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	41
제3절 가족 및 아동 정책 .....	71
제4절 아동 성과 .....	108
제3장 OECD Family database: 시계열 자료 .....	137
제1절 핵심 지표에 대한 분석 .....	139
제2절 OECD Family database의 LFS questionnaires .....	153
제4장 결 론 .....	16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	165
제2절 향후 정책 방안 및 제언 .....	168
참고문헌 .....	175

## 표 목차

〈표 1.1〉 OECD Family database의 구조 (2012년 7월) .....	7
〈표 2.1〉 본 연구의 OECD Family data base 한국 자료 보완 및 업데이트 현황 (2012년 7월) .....	17
〈표 2.1. 1〉 Chart SF1.1.A: 가구 규모, 2010 .....	19
〈표 2.1. 2〉 Table SF1.1.A: 가구 유형, 2010 .....	20
〈표 2.1. 3〉 Table SF1.1.B: 자녀가 있는 가구, 2010 .....	21
〈표 2.1. 4〉 Chart SF1.4.A: 총 인구: 0-17세, 0-24세, 전 연령, 2010 .....	23
〈표 2.1. 5〉 Chart SF1.4.B: 아동 및 청소년 인구 분포, 2010 .....	23
〈표 2.1. 6〉 Chart SF1.4.C: 아동 인구 추이, 2002-2010 .....	23
〈표 2.1. 7〉 Chart SF1.4.D: 유소년 부양비 추이(1950-2010) 및 전망(2011-2060) .....	24
〈표 2.1. 8〉 Chart SF2.1.A: 합계출산율 추이, 1970, 1995, 2010, 2011 .....	25
〈표 2.1. 9〉 Chart SF2.1.B: 1955년, 1960년 출생 여성의 완결출산율 .....	26
〈표 2.1.10〉 Chart SF2.1.C and Chart SF2.1.D: 출생 순위별 출생아 비율, 1981, 2010 .....	26
〈표 2.1.11〉 Chart SF2.1.E: 여성취업률과 합계출산율 간 관계, 1980, 2010 .....	26
〈표 2.1.12〉 Chart SF2.2.A: 평균 이상자녀수, 2009 .....	28
〈표 2.1.13〉 Chart SF2.2.B: 이상적인 가족의 규모, 2009 .....	28
〈표 2.1.14〉 Chart SF2.3.A and Chart SF2.3.B: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 1983, 1995, 2010 .....	29
〈표 2.1.15〉 Chart SF2.3.C: 연령별 출산율, 2000, 2005, 2010 .....	30
〈표 2.1.16〉 Chart SF2.4.A, Chart SF2.4.B, Chart 2.4.C: 혼외출산 비율, 1981, 1995, 2010 .....	32
〈표 2.1.17〉 Chart SF2.4.D: 청소년 출산율, 1981, 2010 .....	32
〈표 2.1.18〉 Chart SF2.5.A: 코호트별 무자녀 여성 추이 .....	33
〈표 2.1.19〉 Chart SF2.5.B, Chart SF2.5.C: 확정적 무자녀 .....	33
〈표 2.1.20〉 Chart SF3.1.A: 1970년과 2010년 사이의 조혼인율 감소 .....	35
〈표 2.1.21〉 Chart SF3.1.B: 초혼 비율, 1972, 1995, 2010 .....	35
〈표 2.1.22〉 Chart SF3.1.C, Chart SF3.1.D: 초혼 연령, 초혼 연령의 성차, 1995, 2010 .....	36
〈표 2.1.23〉 Chart SF3.1.E: 조이혼율 증가, 1970, 2010 .....	36
〈표 2.1.24〉 Chart SF3.1.F: 혼인에서 이혼까지의 평균 기간, 1970, 2010 .....	36
〈표 2.1.25〉 Chart SF3.2.A: 관련된 자녀수별 이혼, 2010 .....	37
〈표 2.1.26〉 혼인 상태(%), 2010 .....	38
〈표 2.1.27〉 Chart SF3.4.A: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이거나 성적 폭력 경험, 남성과 여성, 2008 .....	39
〈표 2.1.28〉 Table SF3.4.A: 여성에 대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발생률, 2010 .....	40



〈표 2.2. 1〉 Table LMF1.1A: 직업 없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2009 .....	42
〈표 2.2. 2〉 Chart LMF1.1A: 양부모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취업 형태별 비중, 2009	42
〈표 2.2. 3〉 Chart LMF1.1B: 한부모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취업 형태별 비중, 2009	42
〈표 2.2. 4〉 Table LMF1.1B: 0~14 아동의 부모 취업 형태별 비중, 2009 .....	42
〈표 2.2. 5〉 2009년도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수 .....	43
〈표 2.2. 6〉 한국노동패널의 원표본 유지율 (1998~2009) .....	44
〈표 2.2. 7〉 Chart LMF1.2A: 모성 취업률과 여성 취업률 비교, 2009 .....	45
〈표 2.2. 8〉 Chart LMF1.2B: 막내 자녀 연령별 모성 취업률, 2009 .....	45
〈표 2.2. 9〉 Chart LMF1.2C: 15세 미만 자녀수별 모성 취업률, 2009 .....	45
〈표 2.2.10〉 Chart LMF1.3A: 15~64세 한부모 여성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 2009 .....	46
〈표 2.2.11〉 Table LMF1.3A: 성별연령별 한부모 취업률, 2009 .....	47
〈표 2.2.12〉 Chart LMF1.6E: 여성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의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 전체 근로자의 50%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 수 (2011년) .....	49
〈표 2.2.13〉 Chart LMF1.6F: 전체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2011 .....	49
〈표 2.2.14〉 국제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관리자 정의 비교 .....	50
〈표 2.2.15〉 Chart LMF2.2A: 0~14세 자녀를 가진 양부모의 취업 유형, 2009 .....	51
〈표 2.2.16〉 Chart LMF2.2B: 양부모 가족의 취업 상태 분포의 변화, 1999~2009 .....	51
〈표 2.2.17〉 Table LMF2.2A: 막내 자녀 연령별 양부모 가족의 취업 유형, 2009 .....	52
〈표 2.2.18〉 Table LMF2.2B: 양부모 가족의 주당 근로 시간 성별 분포, 2009 .....	52
〈표 2.2.19〉 Table LMF2.2C: 막내 자녀 연령별 양부모 가족 여성의 주당 근로 시간 분포, 2009 .....	52
〈표 2.2.20〉 Table LMF2.2D: 막내 자녀 연령별 양부모 가족 남성의 주당 근로 시간 분포, 2009 .....	53
〈표 2.2.21〉 Table LMF2.2E: 0~14세 자녀수별 양부모 가족의 여성 근로 시간 분포, 2009 .....	53
〈표 2.2.22〉 Table LMF2.2F: 0~14세 자녀수별 양부모 가족의 남성 근로 시간 분포, 2009 .....	53
〈표 2.2.23〉 Table LMF2.2G: 6세미만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족의 취업 유형 변화, 1999년과 2009년	54
〈표 2.2.24〉 Chart LMF2.4A: 유연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비중 .....	56
〈표 2.2.25〉 Chart LMF2.4B: 근로 시간 결정 방식 비중, 2009 .....	56
〈표 2.2.26〉 Chart LMF2.4C: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기회의 성별 차이, 2010 .....	57
〈표 2.2.27〉 Annex Table LMF2.4: 가족 친화를 위한 노동 시간 유연화 관련법의 주요 내용, 2012 ..	57
〈표 2.2.28〉 Table LMF2.5A: 성별 주된 행동에 소요한 시간 비중, 2009 .....	61
〈표 2.2.29〉 Table LMF2.5B: 돌봄 활동에 소요한 시간 비중, 2009 .....	61
〈표 2.2.30〉 Chart LMF2.5A: 미취학 자녀수별 돌봄 노동에 소요한 시간 비중, 2009 .....	62

〈표 2.2.31〉 Chart LMF2.5C: 주된 행동 혹은 동시 행동으로서 돌봄 활동 .....	62
〈표 2.2.32〉 Chart LMF2.5D: 돌봄 활동에 소요한 주당 평균 시간, 2010 .....	63
〈표 2.2.33〉 Annex 1: 근로 유형별 유자녀 성인의 주요 활동 시간 소요 비중, 2009 .....	63
〈표 2.2.34〉 Chart LMF2.6A: 출퇴근하는데 보낸 평균 시간, 2009 .....	65
〈표 2.2.35〉 Table LMF2.6A: 출퇴근에 보낸 시간, 성별 및 자녀별, 2009 .....	65
〈표 2.2.36〉 Chart 2.7A: 15세 이상 성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09 .....	67
〈표 2.2.37〉 Chart 2.7A: 20세 이상 성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05 .....	67
〈표 2.2.38〉 Chart2.7B: 중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	68
〈표 2.2.39〉 Chart 2.7C: 성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9 .....	68
〈표 2.2.40〉 Chart 2.7C: 성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5 .....	68
〈표 2.2.41〉 Chart 2.7D: 취업 상태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9 .....	69
〈표 2.2.42〉 Chart 2.7D: 취업 상태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5 .....	69
〈표 2.3. 1〉 Table PF1.3A: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 2012 .....	72
〈표 2.3. 2〉 Table PF1.5A: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 제도의 주요 특징 .....	73
〈표 2.3. 3〉 한부모 가구 수 및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2008 .....	74
〈표 2.3. 4〉 Table PF1.5C: 자녀 양육비 지급 현황: 패널 A .....	74
〈표 2.3. 5〉 Table PF1.5C: 자녀 양육비 지급 현황: 패널 B .....	75
〈표 2.3. 6〉 Table PF2.1A: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특성, 2012 .....	80
〈표 2.3. 7〉 Chart PF2.1A: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100% 지급 된다고 가정할 때 휴가 기간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 기간 .....	80
〈표 2.3. 8〉 Table PF2.1B: 출산전후휴가제도의 주요 내용, 2012 .....	81
〈표 2.3. 9〉 Table PF2.1C: 출산전후 휴가급여 외 모성 수당 및 모성 보조금 .....	81
〈표 2.3.10〉 Table PF2.1D: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주요 내용, 2012 .....	81
〈표 2.3.11〉 Table PF2.1E: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2012 .....	81
〈표 2.3.12〉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인원 수 .....	83
〈표 2.3.13〉 Table PF2.3A: 법정 혹은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되는 연간 유급 휴가 일수, 2012 .....	85
〈표 2.3.14〉 Table PF2.3B: 취업 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휴가, 2012 .....	85
〈표 2.3.15〉 둘째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	88
〈표 2.3.16〉 둘째 자녀 출생 이후 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가처분 소득 .....	89
〈표 2.3.16.1〉 국내 사회보험요율 .....	90
〈표 2.3.16.2〉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율(2012년 귀속), 연소득 기준 .....	90

〈표 2.3.17〉 출산 전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비중, 2012	91
〈표 2.3.18〉 Chart 2.4A: 출산전후휴가의 소득대체율, 2012	91
〈표 2.3.19〉 Chart 2.4B: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2012	91
〈표 2.3.20〉 Chart 2.4C: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2012	92
〈표 2.3.21〉 Chart 2.4D: 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가처분 소득, 2012	92
〈표 2.3.22〉 Chart 2.4E: 출산 전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비중, 2012	92
〈표 2.3.23〉 Table PF3.1A: 고용주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 2012년 9월	94
〈표 2.3.24〉 Table PF3.1A: 고용주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 2005년	94
〈표 2.3.25〉 Chart PF3.2A: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영유아별(2009~2011년)	96
〈표 2.3.26〉 Table PF3.2A: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각세별(2009~2011년)	96
〈표 2.3.27〉 Chart PF3.2B: 0~2세 영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97
〈표 2.3.28〉 Chart PF3.2C: 0~2세 영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2001~2008	97
〈표 2.3.29〉 Chart PF3.3A: 아동 연령별 주 중 낮 동안 비공식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 2009	99
〈표 2.3.30〉 Chart PF3.3B: 아동 연령별 주 중 낮 동안 비공식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 2009	100
〈표 2.3.31〉 Chart PF3.3C: 아동 연령별 주 중 낮시간 동안 전형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중, 2009	100
〈표 2.3.32〉 Table PF4.1A: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체계	102
〈표 2.3.33〉 보육 시설 아동 정원에 따른 평균 보육 교사 수, 2009	103
〈표 2.3.34〉 Chart PF4.2B: 유치원에서 아동 대 교사 비중, 2012	104
〈표 2.3.35〉 Table PF4.2A: 보육 시설 교사 자격 및 관련 규정	104
〈표 2.3.36〉 Table PF4.2B: 유치원 교사 자격 및 관련 규정	104
〈표 2.3.37〉 Chart PF 4.3A: 3~11세 아동의 방과후 보육 서비스 이용률, 2011~2012	105
〈표 2.3.38〉 Table PF4.3. A: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105
〈표 2.3.39〉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유치원 방과후 과정	106
〈표 2.3.40〉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지역아동센터	106
〈표 2.3.41〉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106
〈표 2.3.42〉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07
〈표 2.3.43〉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	107
〈표 2.4. 1〉 CO1.1: 영아사망, 1970-2010	109
〈표 2.4. 2〉 CO1.2: 기대수명, 1960-2010	112

〈표 2.4. 3〉 CO1.3: 저체중 출생, 1993-2010 .....	114
〈표 2.4. 4〉 CO1.4: 아동 예방접종, 2008, 2010 .....	116
〈표 2.4. 5〉 CO1.5: 모유수유율, 2009 .....	118
〈표 2.4. 6〉 CO1.6: 12개월 천식 증상 유병률, 2010 .....	119
〈표 2.4. 7〉 CO1.7 15세의 과체중 비율, 2005-2010 .....	121
〈표 2.4. 8〉 CO1.8: 15세 흡연자 비율, 2005-2010 .....	122
〈표 2.4. 9〉 CO2.1.A: 불평등 지표, 1990-2010 .....	124
〈표 2.4.10〉 CO2.1.B: 가구유형별 상대소득, 2000년대 중반 .....	124
〈표 2.4.11〉 CO2.2: 아동빈곤, 1990-2010 .....	126
〈표 2.4.12〉 CO3.1 교육수준, 2010 .....	128
〈표 2.4.13〉 CO3.2: 고등교육 학위에서 여성의 비율, 1998-2009 .....	129
〈표 2.4.14〉 CO3.4 PISA 문해 점수, 2000, 2003, 2006, 2009 .....	131
〈표 2.4.15〉 CO4.2: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생애 첫 투표 참여율 .....	133
〈표 2.4.16〉 한번 이상 술을 마셔본 적 있는 15세 비율, 2005-2010 .....	134
〈표 2.4.17〉 CO4.4: 10만명 당 15~19세 자살률, 2000-2010 .....	135
〈표 3.1. 1〉 OECD Family database 핵심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가족의 구조 .....	140
〈표 3.1. 2〉 OECD Family database 핵심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	144
〈표 3.1. 3〉 OECD Family database 핵심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가족 및 아동 정책 .....	147
〈표 3.1. 4〉 OECD Family database 핵심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아동 성과 .....	149
〈표 3.2. 1〉 막내 자녀 연령 0~24세 가구의 취업 유형별 빈도수 .....	154
〈표 3.2. 2〉 막내 자녀 연령 0~2세 가구의 취업 유형별 빈도수 .....	155
〈표 3.2. 3〉 막내자녀 연령 3~5세 가구의 취업 유형별 빈도수 .....	156
〈표 3.2. 4〉 막내자녀 연령 6~14세 가구의 취업 유형별 빈도수 .....	157
〈표 3.2. 5〉 부부 가구 중 여성(15~64세)의 막내 자녀 연령별 취업 유형 빈도수 .....	158
〈표 3.2. 6〉 한어머니(15~64세) 가구의 막내 자녀 연령별 취업 유형 빈도수 .....	159
〈표 3.2. 7〉 부부 가구 중 여성(15~64세)의 취업 유형 및 자녀수별 빈도수 .....	160
〈표 3.2. 8〉 한어머니(15~64세) 가구의 취업 유형 및 자녀수별 빈도수 .....	161
〈표 4.1〉 OECD family database 한국 자료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 .....	171

## 그림 목차

[그림 3.1. 1] 합계 출산율 (1970~2011) .....	141
[그림 3.1. 2] 한부모 가족의 비중 (1985~2010) .....	142
[그림 3.1. 3] 평균 초산 연령 (1983~2010) .....	142
[그림 3.1. 4] 혼외 출생 비중 (1981~2010) .....	142
[그림 3.1. 5] 조이혼율 (1970~2010) .....	143
[그림 3.1. 6] 직업 없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1999~2009) .....	144
[그림 3.1. 7] 모성취업률 (1999~2009) .....	145
[그림 3.1. 8] 한부모의 취업률 (1999~2009) .....	145
[그림 3.1. 9]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0~2007) .....	147
[그림 3.1.10]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2001~2011) .....	148
[그림 3.1.11] 영아 사망률 (1981~2010) .....	150
[그림 3.1.12] 기대 수명 (1970~2009) .....	151
[그림 3.1.13] 아동 빈곤율 (2003~2010) .....	151
[그림 3.1.14] 국제학업성취도평가점수 (2000년대) .....	152
[그림 3.1.15] 청소년 출산율 (1980~2010) .....	152



## 요약 <<

OECD Family database는 회원국의 가족을 둘러싼 현황과 가족 정책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발전 및 효과적인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횡단면 자료 그리고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급속한 가족 구조의 변화 및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에 대한 최신의 한국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에게 한국의 가족 관련 현황을 알리고 가족 정책의 추진 경험을 전달하는데 있다.

제2장 “OECD Family database: 횡단면 자료”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 온라인 상에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누락된 한국자료를 보완하고 오래된 한국 자료를 최신 자료로서 업데이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총 168개 표와 그림에 포함되는 자료 중 97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완하였다. 동 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료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한국자료가 개선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체계는 가족 구조 및 정책 현실에 있어서 서구 국가와는 차별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필요가 있다.

제3장 “OECD Family database: 시계열 자료”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 “20개 핵심 변수” 및 “LFS questionnaires”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였다. 동 시계열 자료 구축 작업은 최근 OECD Social Policy Division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 가족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0개 핵심 변수는 OECD Family database의 4개 대분류에 각각 5개씩 포함되어 있는 변수로서 제공 가능한 국내 자료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LFS questionnaires”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패널(2000~2009)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제4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동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의 가족 통계의 개선 방안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2010년도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2005년도와 비교하여 변화하였으며 그 양상은 서구의 가족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취업률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OECD 다른 회원국가와 비교하여 아직도 낮은 상황이며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 여성들은 가족의 돌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가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함에 따라 급여율의 소득 대체율을 증가하였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들만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위한 목적으로 확대한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 확대에 의해 영유아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률이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가족 통계와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통계청은 가족 구조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인구총조사는 혼외 출산, 동거 및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족 구조 및 자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 특성별 근로 행태를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아동 보건과 관련한 자료는 OECD 기준에 따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생산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아동 보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 많은 과학적인 연구 수행이 요청된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의 읽기 능력 및 인지 발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학업능력성취 평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OECD Family database의 각 지표별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인 제언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행정 부처 및 관련 기관에 대해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론 부분의 <표 4.1>에 정리하였다.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OECD Family database는 2006년도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료가 공개되었다. OECD Family database가 처음으로 구축된 이후 지표들의 자료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표들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 한국 자료 구축 및 제공 연구를 시작한 2012년 2월 현재 63개 지표에 대하여 2000년 후반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OECD Family database는 OECD 34 개국에 대한 가족 관련 자료와 가족 정책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 구축되기 시작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에 OECD는 "Babies and Bosses" 보고서 시리즈를 2002~2005 기간에 걸쳐 4권을 출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동 보고서 시리즈의 완결판을 발표하였다. "Babies and Bosses" 보고서 시리즈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돌봄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 분석한 지표들이 OECD Family database를 개발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OECD Family database에 포함된 가족의 현황과 가족 정책에 대한 지표를 토대로 OECD는 아동 정책 및 가족 정책에 대한 "Doing better for children(2009)"와 "Doing better for families(2011)" 출판하였다. 두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에게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유용한 정책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OECD 국가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연구가 한 층 더 진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OECD Family database는 지표와 데이터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마무리된 시점인 2012년 7월 현재 지표의 체계는 가족의 구조,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가족 및 아동 정책, 아동 성과의 4개의 대분류하에 16개의 중분류, 63개의 지표, 261개의 표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63개 지표를 중심으로 특정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지표 하에 정의 및 방

법론, 주요 결과,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출처 및 관련자료 순서로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1.1>). 이러한 통계 생산 방식을 통하여 OECD Family database는 OECD 회원국들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은 물론 각 국가의 현황에 대한 기술적인 비교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가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은 회원국가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요청하여 제공 받는 방법과 더불어 관련된 지표가 OECD의 내부적인 데이터 베이스 혹은 외부 기관의 국제적인 데이터 베이스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참고로 하고 있다<sup>1)</sup>.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가족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가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증적인 데이터 및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본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한 2012년 2월 현재 OECD Family database에서의 한국 자료 현황은 전체 214개 표와 도표 중에서 단지 89개의 표와 도표에 해당되는 한국 자료만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20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105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한국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핵심적인 가족 현황에 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가족 정책 현황에 대한 한국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가족 관련 이슈에 대한 국내 현황 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OECD Family database, 2012).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육 정책 및 육아 휴직 정책 등 가족 정책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제시하고, 변화하고 있는 국내 가족 구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OECD Family database에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구조, 출산 행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아동 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에 대한 최신의 한국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한국 자료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국내 자료의 한계성, OECD 지표의 기준과의 상이성 및 OECD 기준을

1) OECD 데이터 베이스로서 교육(OECD Education database), 고용(OECD Employment database), 보건(OECD Health data), 사회지출(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조세 및 급여(Benefit and Wages)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 등을 이용하고 있다.

따르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가족 이슈와 관련한 한국적인 상황을 OECD 회원국가와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OECD Family database에 대한 한국 자료 구축 및 자료 제공의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경험은 아직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다른 OECD 회원국들 및 비회원국가들에게 유용한 사례로 전달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노력은 OECD 회원국들 및 비회원국들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 추진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파트너십을 확대해 가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OECD Family database의 구조 (2012년 7월)

대분류	중분류	지표	표/도표
가족의 구조	가족과 아동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4
		SF1.2 가족에서의 아동	3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2
		SF1.4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인구나 유소년 부양비	6
	출산력 지표	SF2.1 출산율	5
		SF2.2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	5
		SF2.3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	3
		SF2.4 혼외출산 비율과 10대 출산	4
		SF2.5 무자녀	4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	SF3.1 혼인율과 이혼율	6
		SF3.2 가족 해체와 아동	3
		SF3.3 동거율과 다른 유형의 파트너십	3
		SF.3.4 가정 폭력	5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가족, 아동과 고용 상태	LMF1.1 부모 고용 형태에 따른 아동 현황
LMF1.2 모성 취업률			4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취업률			2
LMF1.4 생애 주기별 취업률			1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와 교육 수준에 따른 수입 격차			6
LMF1.6 취업 상태의 성별 격차			7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		LMF2.1 성별 주당 근로 시간	2
		LMF2.2 양부모 가족 부모의 막내 자녀 연령별·자녀수별 근로시간 분포	9
		LMF2.3 막내 자녀 연령 및 자녀수별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	4
		LMF2.4 가족 친화 제도	5
		LMF2.5 근로, 돌봄, 기타 일상 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7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	3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	4

<표 1.1> 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표/도표	
가족 및 아동 정책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PF1.1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1	
		PF1.2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2	
		PF1.3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	1	
		PF1.4 가족에 대한 조세 혜택 체계	2	
		PF1.5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3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	5	
	자녀 관련 휴가	PF2.1 모성 휴가 제도의 주요 특징	7	
		PF2.2 부모의 자녀 관련 휴가 제도 사용 현황	3	
		PF2.3 취업 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휴가제도	2	
		PF2.4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5	
	영유아 아동에 대한 공적 보육 및 교육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3	
		PF3.2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4	
		PF3.3 비공식적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4	
		PF3.4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	3	
	보육 급여의 유형과 가족 유형과 소득 수준별 부모의 순 이용료	PF4.1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체계	1	
		PF4.2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	4	
		PF4.3 방과후 보육 서비스	2	
	아동 성과	아동 건강	CO1.1 영아 사망	4
			CO1.2 기대수명	5
CO1.3 저체중 출생			2	
CO1.4 아동기 예방접종			2	
CO1.5 모유수유율			2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의 당뇨병과 천식 유병률			3	
CO1.7 15세의 성별 과체중과 비만			6	
CO1.8 15세 중 성별 정기적 흡연자			2	
아동 빈곤		CO2.1 소득불평등과 가구유형별 소득지위 추세	4	
		CO2.2 아동빈곤	5	
교육/문해력		CO3.1 성별 교육수준과 정규교육 수학기간	3	
		CO3.2 전공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3	
		CO3.3 10세의 성별 문해 점수	3	
		CO3.4 15세의 성별 문해 점수	3	
		CO3.5 교육이나 취업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	2	
		CO3.6 이민 아동의 비율과 이들의 교육 성과	9	
사회 참여		CO4.1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비정부기구 회원	4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	2	
		CO4.3 청소년의 약물 남용	4	
		CO4.4 십대 자살	3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 전체 지표에 대하여 한국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기 제공된 자료가 하더라도 최신의 한국 자료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 하였다. 둘째, 4개의 대분류에서 다섯 가지 중요한 지표로 선정된 총 20개의 중요한 지표("Priority indicators")에 대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시계열 자료 구축은 2최근 OECD Family database 작업팀의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다<sup>2)</sup>. 셋째, 부모의 노동 행태를 다양한 가족 유형별로 분석한 내용을 담은 "LFS questionnaires"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LFS questionnaires" 상에서의 지표들은 OECD Family database의 대분류 중의 하나인 "노동시장에서의 가족의 지위"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유형별 노동 행태 변수를 시계열로 확대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 한국 자료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연구 방법은 OECD Family database가 적용하고 있는 자료 수집 및 구축 방법론을 따라 추진하였다.

첫째, OECD Family database 상에서의 지표들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가 제시하는 지표의 정의가 국내 제공 가능한 자료의 지표의 정의와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OECD Family database가 제시하는 지표의 정의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 자료를 제공함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다. OECD Family database가 제시하는 지표의 정의와 동일한 한국 자료가 국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원자료 출처를 참고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의 경우 통계청의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합계 출산율 자료를 제공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가 제시하는 지표의 정의와 동일한 한국 자료가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차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정의와 동일한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가족 유형별 노동 행태를 분석함에 있

2) OECD Family database 시계열 자료 구축 작업을 통하여 OECD Social Policy Division은 최근 유럽 경제 위기 이후 가족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추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OECD Social Policy Division, 2013. 4. 내부자료)

어 관련된 지표에 대한 한국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2009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정의에 부합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활용 가능한 국내 1차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정의에 따라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자료를 소개하고 그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이혼한 한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전국적인 국내 자료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샘플 조사로 수행한 국내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제공된 자료가 갖는 한계점을 기술한 후 전국적인 조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셋째, 통계 작성의 기준은 OECD Family database의 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각 지표별로 정의 및 방법론, 주요 결과,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출처 및 관련 자료 순서로 기술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관련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구총조사, 출생 통계 보고서, 생활시간조사 등의 자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활용하였다. 그 다음의 우선순위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이 국가 통계 승인을 받고 수행하는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결혼 출산 동향 조사, 가족실태조사, 전국보육실태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로서도 OECD Family database 지표에 부합하는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 연구 기관이 특별한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OECD Family database 한국 자료 구축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 데이터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OECD Family database에 한국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함에 있어 이해가 필요한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차이를 OECD Social Policy Division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제언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구축하지 못한 한국 자료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의 학술 용역 사업 및 보건복지부의 OECD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금의 지원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원활한 연구 진행과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의 협조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OECD Social Policy Division에서는 연구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연구의 전 진행과정, 그리고 연구의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적인 협조와 조언을 제공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 관련 전문가들과의 현지 회의, 이메일 연락 및 유선 통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및 협조를 통하여 본 연구의 질과 신뢰성은 더욱 향상되었다.

둘째, 통계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통계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서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공 협조를 받았으며, 연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한국 자료 구축을 위해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셋째, 인구, 가족, 노동, 아동 등 관련 분야별로 국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그리고 연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제2장 OECD Family database:

### 횡단면 자료

제1절 가족의 구조

제2절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제3절 가족 및 아동 정책

제4절 아동 성과



# 2

## OECD Family database:

### 횡단면 자료 <<

본 장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 웹사이트 상에 공개되어 있는 지표를 대상으로 본 연구가 한국 자료를 업데이트한 현황과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에 2012년 2월 현재 공개되어 있는 가족의 구조,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가족 및 아동 정책, 아동 정책의 4개 대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163개 표와 도표(measurements)를 대상으로 한국자료 구축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족의 구조” 영역에서는 총 53개 표와 도표 중 19건에 대해서만 한국 자료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34건에 대해서는 한국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한국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34개의 표와 도표 중 8건에 대해서는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정의에 맞게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15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OECD의 정의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한국의 자료가 OECD 지표의 정의에 따라 수집되거나 분석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국내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제공하지 못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2010년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005년도 자료를 기초로 기 제공되고 있는 19개의 표와 도표 중에서 14건에 대해서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영역은 한국 자료가 가장 많이 누락된 부분이다. 전체 59개 표와 도표 중에서 한국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부분은 16건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한국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43개의 표와 도표 중 25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의 샘플은 전국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보기에에는 제한점이 있어 국내 현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 25건에 대한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국 자료가

3)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기 제공되고 있는 16건의 표와 도표 중에서 2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가족 및 아동 정책” 영역은 최근 확대된 가족과 아동에 대한 정책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전체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 육아휴직급여지원도 2011년부터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통상 임금의 40%를 지원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20개의 표와 도표 중 18건에 대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보완된 18건 중에서 14건은 OECD Family database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그 이유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서구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기 제공되고 있는 31개의 표와 도표 중에서 새롭게 변화된 정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10건에 대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하였다.

“아동 성과” 영역에 대해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37개의 표와 도표 중에서 10건에 대해 한국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한국 자료가 기 제공되고 있는 34건 중 18건에 대하여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하였다. 아동 보건과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한국 과 OECD 지표 간의 정의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소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의 경우 국내 현황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제적인 학업 능력 평가 조사인 PISA, PIRLS, TIMSS에 한국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저조하여 이에 대한 한국 자료를 제공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동 연구가 OECD Family database에서의 한국 자료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한 결과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표 2.1〉 본 연구의 OECD Family data base 한국 자료 보완 및 업데이트 현황 (2012년 7월)

대영역 (표와 도표 수)	한국 자료 보완 및 업데이트 현황							
	한국 자료 누락				한국 자료 기 제공			
	한국 자료 보완		자료 보완 불가능	계	한국 자료 업데이트		자료 업데이트 불가능	계
	OECD 기준 부합함	OECD 기준 부합 않음			OECD 기준 부합함	OECD 기준 부합 않음		
가족의 구조 (53)	8	15	11	34	14	-	5	19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59)	5	25	13	43	2	-	14	16
가족 및 아동 정책 (51)	4	14	2	20	7	3	21	31
아동 성과 (71)	3	7	27	37	16	2	16	34
합계 (163)	17	54	26		23	3	40	
	71		26		26		40	
제공 가능한 한국 자료	137 (OECD 기준에 부합 80,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57)							
제공 불가능한 한국 자료	26							

## 제1절 가족의 구조

### 1.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 Chart SF1.1.A: 가구의 규모

##### 가. 정의 및 방법론

-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가 포함되었으며, 부부의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는 제외되었음.
- 한부모 가구: 부와 미혼 자녀, 모와 미혼 자녀 가구가 포함되었으며, 부/모의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는 제외되었음.
- 집단 가구(6인 이상의 비친족 가구나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되었음.
- 한국과 OECD 국가들 간 자녀의 정의에 차이가 있음. OECD 국가들은 의존적인 자녀를 의미하는 반면, 한국 자료에서는 미혼 자녀를 의미함.
- 이러한 자녀에 대한 정의 차이는 한국과 OECD 국가들 간 청년의 독립에 대한 문화적 차이 때문임. 한국에서는 학교나 회사가 부모의 집에서 멀지 않으면 독립해서 혼자 살 수 있어도 결혼할 때까지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았음. 그러나 한국 문화도 변화하고 있음.

##### 나. 주요 결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가구 규모(평균 가구원수)는 2.7명이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평균 가구 규모는 3.7명이며,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평균 규모는 2.5명이다. OECD는 전체 가구 규모가 2.6명, 유자녀 커플 3.7명, 한부모 가구 2.5명으로 한국의 가구 규모와 매우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1.1〉 Chart SF1.1.A: 가구 규모, 2010

	평균 가구원 수	년도
전체 가구	2.7	2010
유자녀 부부 <sup>1)</sup>	3.7	
한부모 가구 <sup>2)</sup>	2.5	

주: 1) 자녀가 있는 부부는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를 의미함.

2) 한부모 가구는 미혼 자녀가 있는 모 또는 부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2011), 2010년 인구총조사

Table SF1.1.A: 가구 유형

### 가. 정의 및 방법론

- 부부 가족: 부부 가구,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가 포함되었음.
- 1인가구
- 한부모 가구: 미혼 자녀가 있는 부, 미혼 자녀가 있는 모 가구가 포함되었음.
- 기타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의 다양한 가구 유형이 포함되었음.
  - 1세대 가구에서는 미혼 형제자매가 있는 부부, 기타 친인척과 함께 사는 부부, 미혼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가구주, 기타 친인척과 함께 사는 가구주, 기타 1세대 가구가 포함되었음.
  - 2세대 가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부부, 미혼 자녀와 미혼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부부, 미혼 손자녀와 함께 사는 조부모, 기타 2세대 가구가 포함되었음.
- 집단 가구(6인 이상의 비친족 가구나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되었음. 자녀는 연령과 상관 없이 “미혼 자녀”를 의미함.

### 나. 주요 결과

한국에서는 부부 가족이 흔한 유형으로,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는 약 1/4을, 한부모 가구는 9.2%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 중에서는 한 어머니 가구가 전체 한부모 가구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평균 가구 규모는 3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2.7명으로 감소하여 OECD 평균인 2.6명에 근접하였다. 부부 가족은 2005년 72.6%에서 2010년 52.4%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인 57.6%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1인가구의 비율은 2010년 23.9%로, OECD 평균인 27.7%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한부모 가족은 다른 OECD 국가 수준(9.1%)과 비슷하다.

한국의 전통은 장남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었으나 요즘에는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여전히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2%로 많다.

<표 2.1.2> Table SF1.1.A: 가구 유형, 2010

	전체 가구 대비 %	년도
부부 가족	52.4	2010
1인 가구	23.9	
한부모 가족	9.2	
한부모 중 한어머니 가구 비율	78.2	
한부모 중 한아버지 가구 비율	21.8	
기타 가구	14.5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총조사

Table SF1.1.B: 자녀가 있는 가구

### 가. 정의 및 방법론

- 전체 가구 중 유자녀 가구 비율: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미혼 자녀가 있는 한부모, 미혼 자녀와 형제자매가 있는 부부, 3세대 이상 가구가 포함되었음.
- 전체 부부가구 중 유자녀 부부 비율: 유자녀 부부 가구 ÷ (부부 가구 + 유자녀가 부부 가구) × 100
- 전체 유자녀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율: (유자녀 한아버지 가구 + 유자녀 한어머니 가구) ÷ 유자녀 가구 × 100
- 집단 가구(6인 이상의 비친족 가구나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되었으며, 자녀는 연령에 상관 없이 “미혼 자녀”를 의미함.

## 나. 주요 결과

전체 가구 대비 유자녀 가구의 비율은 52.7%이며 전체 부부 가족 중 자녀가 있는 부부 가족은 70.6%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6.4%, 58.6%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기혼 부부가 대체로 최소한 한 자녀는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표 2.1.3〉 Table SF1.1.B: 자녀가 있는 가구, 2010

	%	년도
전체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	52.7	2010
전체 커플 가족 중 자녀가 있는 커플 비율	70.6	
전체 자녀가 있는 가구 중 한부모 가족 비율	17.4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총조사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한국 자료에서는 자녀는 연령에 관계 없이 “미혼 자녀”를 의미하므로 다른 국가와 정의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 구조가 아닌 가구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가구에 사는 자녀만이 포함된다.

인구총조사는 가구 조사이다. 여기서는 가족을 같은 가구에 사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한국에서의 최신 가구 구조 추세라는 것을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몇몇 한국 자녀들은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있다. 이들 중 몇몇은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서 일하고 자녀와 어머니만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기도 하며 이런 현상을 “기러기 가족”이라고 한다. 기혼 부부들 중에서도 직장 때문에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Table SF1.1.C “자녀수별 가구 (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자료는 한국의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산출 가능하며, 추후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통계청 (2011), 2010년 인구총조사.

## 2. SF1.2: 가족에서의 아동

### 3.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 가.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SF1.2)과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SF1.3)를 위한 자료는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자료는 한국의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산출 가능하며, 추후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SF1.4: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 가. 정의 및 방법론

여기서는 한국 통계청에서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1년에 실시한 “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다. 유소년 부양비는 20세 미만 아동 수와 근로 연령 인구(20-64세)의 비로 계산된다.

#### 나. 주요 결과

##### 아동 및 청소년 수

2010년 한국의 0~17세 아동 인구는 10,065,018명이다(남성 5,262,057명, 여성 4,802,961명). 성비(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는 1.10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2009년 OECD 평균은 1.05).

2010년 아동 및 청소년(0-24세) 인구는 14,652,080명(남성 7,684,969명, 여성 6,967,111명)이며, 성비는 1.10이다.

〈표 2.1.4〉 Chart SF1.4.A: 총 인구: 0-17세, 0-24세, 전 연령, 2010

	천명	년도
0-17세 인구	10,065	2010
0-24세 인구	14,652	

자료: 통계청 (2011), 인구 추계 자료.

0-24세 인구 중에서는 0-5세가 18.6%, 6-11세가 22.4%, 12-17세가 22.7%, 18-24세가 31.3%로,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아동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성비가 증가한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 어린 아동과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아동의 구성비 간의 차이가 크다.

〈표 2.1.5〉 Chart SF1.4.B: 아동 및 청소년 인구 분포, 2010

	인구(천명)	0-24세 인구 대비 비중(%)	년도
0-5세	2,725	18.6	2010
6-11세	3,276	22.4	
12-17세	4,064	27.7	
18-24세	4,587	31.3	

자료: 통계청 (2011), 인구 추계 자료.

0-17세 아동은 2002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02년 0-17세 아동이 100일 때 2010년 0-17세 아동은 86.3이다.

〈표 2.1.6〉 Chart SF1.4.C: 아동 인구 추이, 2002-201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17세 아동(기준 2002년=100)	100	98.4	96.8	95.2	93.5	91.8	90.4	88.5	86.3

자료: 통계청 (2011), 인구 추계 자료.

###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는 2010년 35.2%였으며, 이는 EU 평균인 35.1%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OECD 평균인 39.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유소년 부양비는 1950년 114.3%에서 2010년 35.2%까지 지난 60년 동안 80%p 감소해 왔다. 유소년 부양비는 1967년

120.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 꾸준히, 그리고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 향후 50년간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정도는 이전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표 2.1.7〉 Chart SF1.4.D: 유소년 부양비 추이(1950-2010) 및 전망(2011-2060)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14.3	112.0	110.7	110.0	109.8	110.0	110.5	111.1	111.9	112.8	115.3	116.3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17.1	118.3	119.1	120.2	121.1	120.9	120.1	119.5	119.0	118.5	118.2	117.0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근로 연령 (20- 64세)	115.1	111.4	107.1	103.1	99.0	94.9	91.0	87.2	83.8	80.7	77.7	74.8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인구 대비	72.1	69.5	67.0	64.3	61.0	58.6	56.4	54.5	52.9	51.5	50.6	4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동 및 청소년 (20세 미만) 인구	48.7	47.5	46.1	44.4	42.8	41.4	40.3	39.4	38.4	37.6	36.8	36.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구	35.2	34.2	33.1	32.1	31.2	30.2	29.4	28.7	28.0	27.5	27.1	26.8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인구	26.8	26.9	27.1	27.4	27.8	28.1	28.2	28.5	28.7	28.8	29.0	29.1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인구	29.3	29.4	29.5	29.6	29.6	29.6	29.5	29.4	29.2	29.1	28.9	28.8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인구	28.8	28.7	28.6	28.5	28.3	28.2	28.1	28.0	28.1	28.1	28.3	28.6
	2058	2059	2060									
인구	28.8	29.2	29.5									

자료: 통계청 (2011), 인구 추계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현재 OECD Family database의 SF1.4 영역에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200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에 실시한 인구추계 자료이다. 통계청에서는 2010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1년에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두 인구추계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코호트요인법”으로 동일하지만 추계 모형을 개선함에 따라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기존 자료를 2011년 인구 추계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하였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통계청(2011), 인구추계 자료.

## 5. SF2.1: 출산율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에서의 출산율에 대한 정의는 OECD family database의 정의와 동일하다. 특정 년도의 합계출산율(TFR)은 여성이 가임기가 끝날 때까지 산다면, 그리고 여성이 각 연령에서 자녀를 낳을 확률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ASFR)과 같다면, 각 여성이 낳을 자녀의 수이다.

완결출산율(CFR)은 특정 코호트의 여성이 가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성 한 명당 실제로 낳은 자녀의 수이다. 한국에서는 49세를 가임기가 끝난 시점으로 간주한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0에서 2010년 1.226으로 지난 40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 197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67에 비해 훨씬 높았으나 2010년에는 OECD 평균인 1.7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983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을 밑돌았으며, 2001년 이후로는 쪽 초저출산 수준인 1.3 이하이다.

〈표 2.1.8〉 Chart SF2.1.A: 합계출산율 추이, 1970, 1995, 2010, 2011

	1970	1995	2010	2011
합계출산율	4.530	1.634	1.226	1.244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1955년에 태어난 여성의 완결출산율은 2.23이고 1960년에 태어난 여성의 완결출산율은 2.08이다. 한국에서는 49세를 출산을 완료한 연령으로 간주하므로 가장 최근 자료가 1960년에 태어난 여성의 완결출산율이다. 1955년에 태어난 여성에 비해 1960년에 태어난 여성의 완결출산율은 0.1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명은 넘는 수준이며, 이는 2010년의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1.22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2.1.9〉 Chart SF2.1.B: 1955년, 1960년 출생 여성의 완결출산율

	1955년 출생 코호트	1960년 출생 코호트
완결출산율	2.23	2.08

자료: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1981년과 2010년의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첫째아의 비율은 1981년 41.0%에서 2010년 전체 출생아수의 절반 이상(50.4%)으로 증가하였으나 셋째아 이상은 1981년 25.5%에서 2010년 10.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한국인들이 셋째아 이상을 가지는 경향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표 2.1.10〉 Chart SF2.1.C and Chart SF2.1.D: 출생 순위별 출생아 비율, 1981, 2010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1981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41.0	33.5	16.4	9.1	25.5
2010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50.4	38.9	9.4	1.3	10.7
1981년과 2010년 차이 (%p)	9.4	5.4	-7.0	-7.8	-14.8

주: 출생 순위 미상은 비율 계산 시 제외되었음.

자료: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25-54세 여성취업률은 시간 변화에 따라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0에서 2010년 1.226으로 감소했지만 25-54세 여성 취업률은 1980년 47.0%에서 2010년 60.3%로 증가했다.

1980년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의 취업률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았으나, 2010년에는 여성의 취업률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 2.1.11〉 Chart SF2.1.E: 여성취업률과 합계출산율 간 관계, 1980, 2010

	1980	2010	자료 출처
합계출산율	2.820	1.226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25-54세 여성취업률	47.0	60.3	OECD 통계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특정 년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년도와 가장 가까운 년도의 자료로 대체하였다. 1950년 코호트 여성의 완결출산율 (Chart SF2.1B) 대신 1955년 코호트 여성의 완결출산율을 이용하였고, 1980년 출생순위별 비율 (Chart SF2.1D) 대신 198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 출처 및 관련자료

OECD 통계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 6. SF2.2: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

#### 가. 정의 및 방법론

이번 섹션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NSDMF)」 자료를, 여성의 경우에는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NFFHW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두 조사 모두 일반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의 이상자녀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여기서는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20~44세 미혼 남성의 이상자녀수를 제시하였고,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15~44세 기혼 여성의 이상자녀수를 제시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15~54세 남녀의 개인적인 이상자녀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의 혼인 여부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한국 자료는 남성은 20~44세의 미혼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성은 15~44세의 기혼으로 제한되어 있다.

#### 나. 주요 결과

2009년 20~44세 한국 미혼 남성의 이상자녀수는 1.87명이었으며, 이는 대체출산

력 이하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2009년 15~44세 기혼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3 명으로 대체출산력 이상 수준이다.

<표 2.1.12> Chart SF2.2.A: 평균 이상자녀수, 2009

	전체	15-24세	25-39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54세	자료 출처
미혼남성	1.87 (20-44세)	1.89 (20-24세)	-	1.87	1.94	1.72 (35-44세)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기혼여성	2.3 (15-44세)	2.2	-	2.2	2.2	2.3	2.3 (40-44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 1) 남성: 20~44세 미혼 남성의 이상자녀수

2) 여성: 15~44세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

자료: 1) 남성: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 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이상자녀수가 2명인 여성의 비율은 2009년 59.1%로 OECD 평균인 5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자료는 응답자의 연령이나 결혼상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시 제한점이 있다.

<표 2.1.13> Chart SF2.2.B: 이상적인 가족의 규모, 2009

	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15~44세 여성, %	10.8	59.1	28.1

주: 15~44세 기혼 여성의 이상자녀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조사 자료는 응답자의 연령이나 결혼 상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국 자료는 20~44세 미혼 남성과 15~44세 기혼 여성으로 제한적이므로 한국 자료 검토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자료는 일반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 이상자녀수와 개인적 이상자녀수의 차이를 계산할 수 없다.

**출처 및 관련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7. SF2.3: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가. 정의 및 방법론**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은 첫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성의 평균 연령으로 OECD Family database의 정의와 동일하다.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 연령의 여성의 출생아수를 특정 연령의 여성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나. 주요 결과**

2010년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은 30.10세였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은 1983년 24.38세에서 1995년 26.49세였으며, 2010년에는 30세가 넘도록 증가해 왔다. 이는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결혼 연령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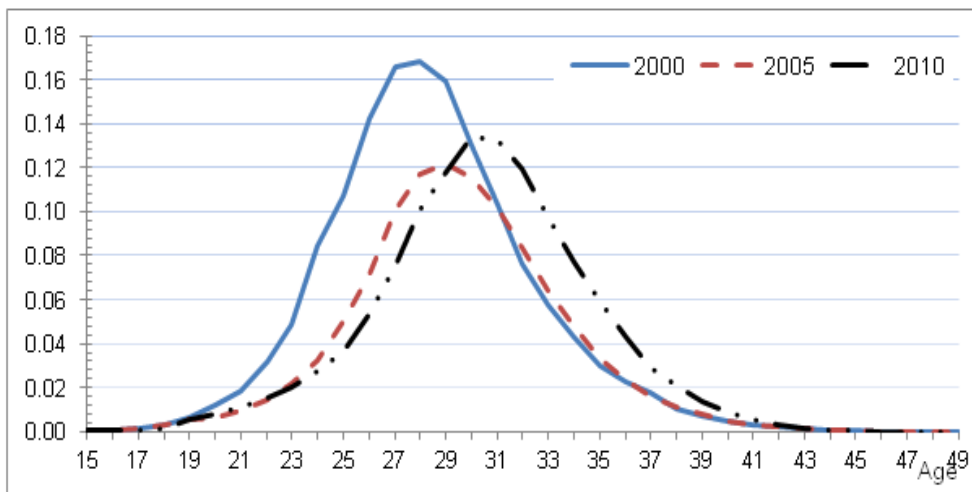
〈표 2.1.14〉 Chart SF2.3.A and Char SF2.3.B: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 1983, 1995, 2010

	1983	1995	2010	1983-1995	1995-2010	자료 출처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	24.38	26.49	30.10	2.11	3.61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2000년, 2005년, 2010년의 연령별 출산율은 다음과 같다. 2000년, 2005년, 2010년 중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00년이고 가장 낮았을 때는 2005년이며 2010년에는 출산율이 약간 증가하였다. 아래 자료를 보면 생애 주기에 걸쳐 출산이 연기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00년에는 연령별 출산율이 가장 높을 때가 28세였으나 2005년에는 29세로, 2010년에는 30세로 증가한다.

<표 2.1.15> Chart SF2.3.C: 연령별 출산율, 2000, 2005, 2010

	15	16	17	18	19	20	21
2000	0.00013	0.00053	0.00159	0.00301	0.00625	0.01165	0.01879
2005	0.00016	0.00052	0.00121	0.00279	0.00565	0.00660	0.00969
2010	0.00027	0.00057	0.00105	0.00179	0.00531	0.00816	0.01129
	22	23	24	25	26	27	28
2000	0.03189	0.04844	0.08480	0.10726	0.14261	0.16565	0.16862
2005	0.01431	0.02207	0.03234	0.04992	0.07177	0.10084	0.11729
2010	0.01520	0.02008	0.02739	0.03624	0.05342	0.07562	0.10063
	29	30	31	32	33	34	35
2000	0.15972	0.13034	0.10293	0.07649	0.05764	0.04301	0.02996
2005	0.12186	0.11554	0.10156	0.08327	0.06394	0.04789	0.03344
2010	0.11817	0.13379	0.13271	0.11947	0.09760	0.07749	0.05953
	36	37	38	39	40	41	42
2000	0.02233	0.01737	0.01070	0.00737	0.00500	0.00312	0.00208
2005	0.02305	0.01615	0.01095	0.00783	0.00500	0.00339	0.00226
2010	0.04289	0.02924	0.02062	0.01400	0.00887	0.00531	0.00302
	43	44	45	46	47	48	49
2000	0.00117	0.00068	0.00039	0.00023	0.00015	0.00009	0.00008
2005	0.00110	0.00071	0.00038	0.00022	0.00011	0.00007	0.00007
2010	0.00169	0.00095	0.00048	0.00021	0.00015	0.00006	0.00004



주: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 합계출산율과 다를 수 있음. 합계출산율은 연령이 미상인 경우와 연령이 15세 미만이거나 49세 초과인 경우가 포함되지 때문임.

자료: 통계청의 년도별 출생 통계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로 계산하였음.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특정 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그 해와 가장 가까운 해의 자료로 대체하였다. 1970년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Chart SF2.3B) 대신 1983년 자료를 제시하였다.

통계청에서는 각세별 연령별 출산율을 제공하지 않으며, 연앙인구는 1998년부터 제공되어 각세별 연령별 출산율을 2000년부터 제시하였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 8. SF2.4: 혼외출산 비율과 10대 출산

### 가. 정의와 방법론

혼외출산 비율은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비율이다. 총 출생은 결혼한 부모로부터의 출생과 결혼하지 않은 부모로부터의 출생, 그리고 부모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혼외출산 비율을 구할 때 부모의 혼인 여부가 미상인 경우는 제외하지 않았으나, 미상인 경우가 매우 적으므로 미상인 경우가 포함된 결과와 포함되지 않은 결과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10대 출산율은 15-19세 여성 1000명 당 출생한 아동으로 정의된다.

### 나. 주요 결과

혼외출산 비율은 1981년 1.12%에서 1995년 1.22%, 2010년 2.05%였다. 비록 혼외출산율이 증가해 왔지만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2.1.16〉 Chart SF2.4.A, Chart SF2.4.B, Chart 2.4.C: 혼외출산 비율, 1981, 1995, 2010

	1981	1995	2010	1995-1981	2010-1981	2010-1981 (TFR)
혼외출산 비율 (%)	1.12	1.22	2.05	0.10	0.93	-0.34

주: 아동의 부모의 혼인상태가 미상인 경우가 포함되었음. 미상인 경우를 제외한 결과는 1981년 1.12%, 1995년 1.22%, 2010년 2.06%임.

자료: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한국의 청소년 출산율은 1981년 16.2에서 2010년 1.8로 감소해 왔다. 이는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이 증가한 것과 같이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혼인 연령 상승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표 2.1.17〉 Chart SF2.4.D: 청소년 출산율, 1981, 2010

	1981	2010	자료 출처
청소년 출산율	16.2	1.8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특정 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년도와 가장 가까운 년도의 자료로 대체하였다. 그에 따라 1970년 혼외출산 비율과 1980년 청소년 출산율의 경우 1981년 자료로 대체되었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 9. SF2.5: 무자녀

### 가. 정의 및 방법론

다양한 코호트의 특정 연령에서의 무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총조사의 10~15% 샘플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구총조사는 전체 인구를 대

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출산력이나 사회 활동, 경제 활동 등과 같은 몇몇 세부적인 질문의 경우에는 총조사와 함께 표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50년에 태어난 여성의 30세 당시 무자녀 비율은 1980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무자녀 비율은 특정 연령의 여성 중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는 여성을 그 연령의 전체 여성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특정 코호트 여성의 확정적 무자녀를 45세 때 무자녀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 나. 주요 결과

30세와 40세 당시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증가해 왔다. 1980년에는 30세 여성(1950년 코호트 여성) 중 3.7%만이 무자녀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 30세 여성 중 9%가 무자녀였다. 비록 무자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분명하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무자녀 비율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 2.1.18〉 Chart SF2.5.A: 코호트별 무자녀 여성 추이

	1950	1955	1960	1965	1970
30세 당시 무자녀 여성 비율	3.7		5.1		9.0
40세 당시 무자녀 여성 비율	1.6	n.a	3.0	n.a	

자료: 통계청, 1980, 1990, 2000년 인구총조사, 출산력 또는 여성 및 아동 관련 질문을 위한 10~15% 샘플 조사 자료.

한국 여성의 45세 당시 무자녀 비율은 3% 미만이다. 이는 거의 모든 45세 여성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19〉 Chart SF2.5.B, Chart SF2.5.C: 확정적 무자녀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CFR 1965
코호트별 확정적 무자녀 여성	1.9	1.5	1.4	1.4	n.a	2.3	n.a	n.a	1.96

자료: 통계청, 1975, 1980, 1985, 1990, 2000년 인구총조사, 출산력 또는 여성 및 아동 관련 질문을 위한 10~15% 샘플 조사 자료.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한국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낳은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을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사람에게만 물어본다. 이는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은 질문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혼외출산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결과를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조사에서는 결혼한 적은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이후로는 통계청에서 5세 연령 간격으로 여성의 출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과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특정 연령의 무자녀 비율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자녀가 없는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 비율 (Table SF2.5.A)”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자료는 한국의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산출 가능하며, 추후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통계청, 1975, 1980, 1985, 1990, 2000년 인구총조사, 출산력 또는 여성 및 아동 관련 질문을 위한 10~15% 샘플 조사 자료

## 10. SF3.1: 혼인율과 이혼율

### 가. 정의 및 방법론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은 각 년도별 인구 1000명 당 혼인 및 이혼 건수의 비이며, 초혼 비율은 그 년도에 결혼한 전체 인구 중 처음으로 결혼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나 여성이 처음 결혼했을 때의 연령을 의미한다. 한국 통계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을 각각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 초혼 연령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frac{(\text{초혼남성수} \times \text{초혼남성 평균연령}) + (\text{초혼여성수} \times \text{초혼여성 평균연령})}{\text{전체 초혼 남성과 여성의 수}}$$

초혼 시 성별 연령차는 남성과 여성 간 평균 초혼 연령의 차이로 측정한다.

## 나. 주요 결과

초혼인율은 1970년 9.2에서 2010년 6.5로 감소하였다. OECD 평균이 1970년 8.14, 2009년 5.00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초혼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2.1.20〉 Chart SF3.1.A: 1970년과 2010년 사이의 초혼인율 감소

	1970	2010	자료 출처
초혼인율	9.2	6.5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전체 결혼한 사람들 중 초혼인 사람의 비율은 감소해 왔다. 1972년에는 결혼한 사람들의 95% 정도가 초혼이었으나(95.8%), 2010년에는 결혼한 사람들의 83% 정도가 초혼이었다.

〈표 2.1.21〉 Chart SF3.1.B: 초혼 비율, 1972, 1995, 2010

	1972	1995	2010	자료 출처
초혼 비율	95.8	89.3	83.0	통계청, 각 년도별 혼인 통계 보고서

주: 1) 결혼 유형 미상(초혼인지 재혼인지 여부 미상) 포함

2) 1970년부터 1980년까지의 혼인 및 이혼 자료는 신고연도와 상관없이 실제 발생연도도 기준으로 수집되었음. 1981년부터는 신고 기준으로 수집되고 있음. (1975년에 결혼했으나 1977년에 신고한 경우, 이 결혼은 1975년 자료에 포함됨. 그러나 1981년부터는, 1985년에 결혼했으나 1990년에 신고한 경우 이 결혼은 1990년 자료에 포함됨.)

2010년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각각 31.84세와 28.91세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남성의 초혼 연령이 여성의 초혼 연령보다 높다. 남성과 여성 간 연령 차이는 2010년 2.93세였다. 이는 1995년의 연령차이인 3.04세 보다 작다.

〈표 2.1.22〉 Chart SF3.1.C, Chart SF3.1.D: 초혼 연령, 초혼 연령의 성차, 1995, 2010

	전체 (2010)	남성 (2010)	여성 (2010)	1995년 성차	2010년 성차	1995년에서 2010년 차
초혼 연령	30.39	31.84	28.91	3.04	2.93	-0.11

자료: 통계청, 각 년도별 혼인 통계 보고서

조이혼율은 1970년 0.4에서 2010년 2.3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2.1.23〉 Chart SF3.1.E: 조이혼율 증가, 1970, 2010

	1970	2010	1970년에서 2008년 차	자료 출처
조이혼율	0.4	2.3	1.9	통계청, 각 년도별 이혼 통계 보고서

2010년 혼인에서 이혼까지의 기간은 평균 13.0년으로, 다른 OECD 국가들('08년 기준, 13.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1970년에는 혼인에서 이혼까지의 평균 기간이 8.3년으로, 다른 OECD 국가들(11.0년)에 비해 매우 짧은 수준이었다.

〈표 2.1.24〉 Chart SF3.1.F: 혼인에서 이혼까지의 평균 기간, 1970, 2010

	1970	2010	자료 출처
혼인에서 이혼까지의 평균 기간	8.3	13.0	통계청, 각 년도별 이혼 통계 보고서

주: 1970년부터 1980년까지의 혼인 및 이혼 자료는 신고년도와 상관없이 실제 발생년도 기준으로 수집되었음. 1981년부터는 신고 기준으로 수집되고 있음. (1975년에 결혼했으나 1977년에 신고한 경우, 이 결혼은 1975년 자료에 포함됨. 그러나 1981년부터는, 1985년에 결혼했으나 1990년에 신고한 경우 이 결혼은 1990년 자료에 포함됨.)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혼인과 이혼 건수 자료 수집 방법이 1981년부터 발생년도 기준에서 신고년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70년의 경우 결혼 유형 자료에 결측치가 전체 결혼의 50% 이상으로 매우 많아 1970년 자료 대신 1972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통계청, 각 년도별 혼인 및 이혼 통계 보고서

## 11. SF3.2: 가족 해체와 아동

### 가. 정의 및 방법론

이혼은 결혼의 최종적인 법적 해체로 정의하며, 통계청에서는 의존적인 자녀를 20세 미만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비율은 이혼한 “사람”의 수가 아닌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 나. 주요 결과

2010년 전체 이혼 중 45.9%는 자녀가 없었으며, 25.6%는 1자녀, 24.2%는 2자녀, 4.0%는 세자녀 이상이 있었다.

〈표 2.1.25〉 Chart SF3.2.A: 관련된 자녀수별 이혼, 2010

	자녀 없음	자녀가 있는 이혼				미상
		전체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자녀수별 이혼 (2010)	45.9	53.8	25.6	24.2	4.0	0.2

자료: 통계청, 각 년도별 이혼 통계 보고서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한국과 다른 OECD 국가들 간에는 의존적인 자녀의 연령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의존적인 자녀는 20세 미만의 자녀인 반면 다른 OECD 국가들은 18세 미만이다.

“자녀가 있거나 없는 경우 이혼했거나 별거중인 성인의 비율(Proportion of divorced or separated adults with or without children)” (Chart SF3.2.A)과 “자녀가 있는 성인의 이혼했거나 별거한 비율 변화(Evolution of the percentage of divorced or separated adults with children)” (Chart SF3.2.B)는 World Value Survey(WVS) 자료를 이용하지만, 최신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WVS 자료가 공개되면 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통계청, 각 년도별 이혼 통계 보고서

## 12. SF3.3: 동거율과 다른 유형의 파트너십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커플은 결혼을 하며 동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동거하는 커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동거에 대한 국가 통계 자료는 없다. 인구총조사에서는 법적 혼인과 동거를 구분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네 가지 유형(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으로 조사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한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에서는 법적 결혼과 동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라는 제한점이 있다.

### 나. 주요 결과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전체 응답자들 중 동거하는 사람들은 0.8%에 불과하다.

〈표 2.1.26〉 혼인 상태(%), 2010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	무응답/거절
혼인 상태	63.1	8.1	3.9	0.6	23.4	0.8	0.2

주: 응답자들은 18세 이상 1,576명임.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보고서』.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동거하는 대신 법적으로 결혼하며 동거에 대한 국가 통계는 없다. 따라서 “파트너십과 동거 현황”이나 “파트너십과 아동”에 관한 정보는 없다. 다만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로 한국에서의 동거가 매우 적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및 관련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1).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보고서』.

### 13. SF3.4: 가정 폭력

#### 가. 정의 및 방법론

이 섹션에서는 두 가지 다른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가정 폭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는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이다.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는 14세 이상 10,67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2008년 한해 동안 경험한 다양한 범죄에 대하여 응답한다. 이 조사에서는 여자친구/남자친구(이전 여자친구/남자친구 포함)에 의한 폭력, 남편과 아내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기혼자나 미혼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가정폭력 경험은 19-64세 2,569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 나. 주요 결과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이거나 성적 폭력 경험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7〉 Chart SF3.4.A: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이거나 성적 폭력 경험, 남성과 여성, 2008

	성적 폭력 (해당되는 사람 수)	신체적 폭력 (해당되는 사람 수)	협박 (해당되는 사람 수)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이거나 성적 폭력 경험	0%(0)	0.03%(3)	0.01(1)

주: 응답자들은 14세 이상 10,671명임.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VI).

그러나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와 다르다. 남편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들 중 22%의 기혼 여성이 전체 결혼기간 동안 경험하였으며, 지난 1년간은 15.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으로부터의 성적 폭력의 경우에는 결혼기간 동안 13.1%가, 지난 1년간은 9.3%의 기혼 여성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이 다른 OECD 국가들의 여성보다 1년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런 결과는 한국과 다른 OECD 국가들 간 조사 응답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조사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의 조사는 현재 또는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십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28> Table SF3.4.A: 여성에 대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발생률, 2010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생애 폭력 경험률 (결혼기간 중 경험률)	22.0	13.1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1년간 폭력 경험률	15.3	9.3

주: 응답자들은 19-64세의 기혼 여성임.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한국과 다른 OECD 국가들의 조사 간에는 응답자들의 연령이나 결혼상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경험률(Table SF3.4.A)의 경우 한국과 다른 OECD 국가들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들이 19-64세의 기혼 여성이지만 호주와 덴마크는 18-69세의 여성, 스웨덴과 프랑스는 20-59세의 여성이다.

**출처 및 관련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VI).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제2절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 1. LMF1.1: 부모 고용 형태에 따른 아동 현황

#### 가. 정의 및 방법론

2009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 지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부터 시작된 패널조사로서 조사 첫해에 5,000가구 샘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12차에 해당되는 2009년 조사는 6,721 가구를 대상으로 동 가구에 거주하고 21,225명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자 21,225명 중 15세 이상 가구원 14,489명이 개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완료하였다. 2009년 노동패널자료는 원표본 가구인 5,000 가구 중 3,657가구를 유지하였으며, 원 표본 유지율은 76%로 나타났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참조).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따랐으며 반드시 생물학적인 혈연 관계가 아닌 관계일 수도 있다. 가구주의 첫 번째 자녀부터 네 번째 자녀까지 파악하였다. 부양자녀는 OECD Family database의 정의에 따라 0~14세 자녀로 정의하였다.

“양부모 가족”은 아동이 양부모와 함께 같은 가구에서 살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양부모는 혈연 관계에 있는 부모, 부모 중 일방과 그 혹은 그녀의 파트너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부모 가족”은 아동이 파트너가 없는 부모 중 일방과 살고 있는 가족이다. 조부모 등 부모 이외 다른 친인척이 함께 살고 경우라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양쪽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양부모 가족,” 부모 중 일방하고만 살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복합 가족”은 동 분석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참조).

고용상태는 ILO의 표준적인 정의에 따라 지난 주 동안의 고용상태로 정의하였다. 시간제 근로는 평상적인 한주 동안 주된 직업에서 3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종일제 근로는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산전후 휴가 혹은 육아 휴직 상태에 있는 여성도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동 지표는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전체 아동 중에서 부모의 고용 상태에 따른 비중을 나타낸다.

나. 주요 결과

〈표 2.2.1〉 Table LMF1.1A: 직업 없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2009  
(각 가구 유형 별 15세 이하 아동 비중)

구분	비중
직업 없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6.6%
직업 없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2.0%
직업 없는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27.4%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2〉 Chart LMF1.1A: 양부모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취업 형태별 비중, 2009

구분	비중
양부모 모두 종일제 근로	29.0%
한명은 종일제 근로, 다른 한명은 시간제 근로	4.7%
한명만 종일제 근로	47.6%
부모 모두 비 취업 상태	1.8%
기타	20.0%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3〉 Chart LMF1.1B: 한부모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취업 형태별 비중, 2009

구분	비중
종일제 근로	44.5%
시간제 근로	0.0%
근로하지 않음	24.7%

주: 한부모 가구의 28%가 취업 상태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거나 보고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4〉 Table LMF1.1B: 0~14 아동의 부모 취업 형태별 비중, 2009

구분		비중
양부모 가족과 거주하는 아동	양부모 모두 종일제 근로	29.0%
	한명은 종일제 근로, 다른 한명은 시간제 근로	4.7%
	한명만 종일제 근로	47.6%
	부모 모두 비 취업 상태	1.8%
	기타	20.0%
한부모 가족과 거주하는 아동	종일제 근로	44.5%
	시간제 근로	0.0%
	근로하지 않음	24.7%

주: 한부모 가구의 28%가 취업 상태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거나 보고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한국노동패널은 조사가 시작된 1998년부터 해마다 원표본 샘플의 가구원, 각 가정의 자녀, 결혼 등의 이유로 분가해 나간 가족들을 추적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대상 가구는 1998년도 현재 비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하는 샘플이다. 가구별 그리고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중치들이 인구 성장을 감안하여 매해 조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모수를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매년 동일한 샘플을 대상으로 추적하여 조사함에 있어 샘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각 연도의 조사 대상 가구가 당해 연도의 모수 가구를 대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OECD Family database에서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은 친인척이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친인척 등 기타 성인이 아동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복합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은 조부모 혹은 부모의 형제 자매와 같은 친인척들이 같은 가구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친인척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가족만을 대상으로 양부모와 한부모를 정의하는 경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양부모가족과 한부모 가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인척과 기타 성인의 거주와는 무관하게 아동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양부모 가족으로,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OECD Family database 정의에 따른 복합 가정은 이러한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다.

〈표 2.2.5〉 2009년도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수

구분		표본수
가구	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수	6,721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가구수	1,415
가구원	총 가구원 수	21,225
	15세 이상 총 가구원 수	16,186
	개인 조사를 완료한 15세 이상 총 가구원 수	14,489

〈표 2.2.6〉 한국노동패널의 원표본 유지율 (1998~2009)

	조사 성공 가구수	원표본 가구수	원표본 유지율 (%)
1차 (1998)	5,000	5,000	100
2차 (1999)	4,508	4,378	88
3차 (2000)	4,266	4,044	81
4차 (2001)	4,248	3,866	77
5차 (2002)	4,298	3,798	76
6차 (2003)	4,592	3,862	77
7차 (2004)	4,762	3,863	78
8차 (2005)	4,849	3,822	77
9차 (2006)	5,001	3,820	78
10차 (2007)	5,069	3,775	77
11차 (2008)	5,116	3,709	76
12차 (2009)	5,306	3,657	7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거시 경제 분석과 정부의 인력 자원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조사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매월 공표되고 있다. 동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 단위 조사로서 개인의 노동 행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가구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 유형별 근로 행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자녀 수, 자녀 연령, 자녀의 출생 순위 등 가구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09년 한국노동패널  
통계청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 2. LMF1.2: 모성 취업률

### 가. 정의 및 방법론

2009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모성 취업률을 분석하였다. 혼인 상태는 응답자가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질문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였다. 고

용상태는 ILO의 표준적인 정의에 따라 지난 주 동안의 취업 상태로서 파악하였다.

## 나. 주요 결과

〈표 2.2.7〉 Chart LMF1.2A: 모성 취업률과 여성 취업률 비교, 2009

구분	비중
여성 취업률 (25~49세)	58.6%
모성 취업률 (자녀 연령 15세 미만)	56.2%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8〉 Chart LMF1.2B: 막내 자녀 연령별 모성 취업률, 2009

구분	비중
막내 자녀 연령 3세 미만	30.1%
막내 자녀 연령 3~5세	37.6%
막내 자녀 연령 6~14세	45.3%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9〉 Chart LMF1.2C: 15세 미만 자녀수별 모성 취업률, 2009

구분	비중
15세 미만 자녀 1명	42.9%
15세 미만 자녀 2명	39.4%
15세 미만 자녀 3명	35.5%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통계청은 15세 성인의 성별·연령별 취업률 자료를 매년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률 자료는 5세 그리고 10세 연령별로 발표되고 있다. 연령 그룹별로 통계청은 15~64세, 15~24세, 15~29세 여성 취업률을 발표하고 있으나, 25~49세 연령층에 대해서는 취업률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통계청은 모성 취업률 자료를 공표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자녀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 응답자 여성의 자녀 유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연령별 취업률을 공표함에 있어 결혼과 임신 그리고 자녀 양육기에 해당하

는 연령인 25~49세 연령 집단에 대한 성별 취업률 자료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성 취업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 정보에 대한 질문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가구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월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매년 1회에 한해 가구조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해 본다.

2009년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3세 미만 여성의 샘플 수가 충분하기 못한 한계점으로 인해 "Chart LMF1.2D: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 (maternity rates for mothers with children under 3 years)" 자료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09년 한국노동패널  
통계청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 3.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취업률

#### 가. 정의 및 방법론

혼인 상태별 모성 취업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한부모 여성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급여가 지불되는 취업 상태는 ILO의 전형적인 정의에 따라 지난 주 동안의 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 나. 주요 결과

〈표 2.2.10〉 Chart LMF1.3A: 15~64세 한부모 여성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 2009

구분	비중
한부모 여성	73.0%
배우자가 있는 여성	51.1%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11〉 Table LMF1.3A: 성별·연령별 한부모 취업률, 2009

구분		비중
성별 취업률 (15~64세 한부모)	여성 한부모	73.0%
	남성 한부모	75.8%
연령별 취업률 (전체 한부모)	15~64세	74.1%
	25~49세	78.5%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출처 및 관련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09년 한국노동패널

**4. LMF1.4: 생애 주기별 취업률**

생애 주기별 취업률 현황은 20~24세, 25~29세, 30~34세 등과 같은 5세 간격의 연령 그룹의 취업률을 반영하고 있다. “Chart LMF 1.4A: 2010년도 성별 생애 주기별 취업률 현황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in 2010)”에 대한 한국자료는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의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고 있다.

**5.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와 교육 수준에 따른 수입 격차**

OECD Family database는 성별 임금 격차를 남성의 평균 소득 대비 여성의 평균 소득의 비중으로서 보고하고 있다. 동 지표에 대한 각 회원국가의 자료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10에 기초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 자료 역시 이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6. LMF1.6: 취업 상태의 성별 격차****가. 정의 및 방법론**

취업 상태의 성별 격차 분석은 ① 시간제 취업, ② 임시직 취업, ③ 교육 수준별 차

이, ④ 근로자의 직종 분포의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제 취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 취업자 비중,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시간제 취업 여성 비중의 변화, 취업률의 성별 격차의 세가지 측면에서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OECD Employment database와 OECD Factbook을 기초로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 자료도 이를 근거로 제공되고 있다.

임시직 취업에서의 성별 격차는 전체 취업자 중 임시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성별 비교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관련 자료는 OECD Employment database에 기초하여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자료도 이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교육 수준별 성별 격차는 교육 수준에 따른 성별 취업률 격차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 관련 자료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를 기초로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자료도 이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동 지표에 대해서 본 연구는 한국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근로자의 직종 분포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 ④ 근로자의 직종 분포에서의 성별 격차

OECD Family database는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ISCO)에 따라 근로자의 직종 분포에서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ISCO는 4단위 분류체계에 따라 직종을 세분화하고 있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KSCO)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직업별 근로자 분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은 4단위 분류체계에 따라 직종이 아닌 3단위 분류체계에 따른 직종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료는 OECD가 발표하는 직종보다 다양하지 못한 직업 종류를 제시하고 있어 유럽국가의 경우 493개 직종에 대한 근로자의 분포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46개 직종에 대한 근로자의 분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전체 취업자중 50%가 넘는 취업자가 근로하고 있는 직업의 수는 유럽 국가에 비해 한국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관리자는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 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 나. 주요 결과

OECD 국가들과 유사하게 한국의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제한된 수의 직종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전체 취업 남성의 50%가 13개 직종에서 근로하고 있는 반면, 전체 취업 여성 중 50%는 8개 직종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위 분류체계에 따라 직종이 구분될 경우 취업자의 직종 분포에서의 성별 차이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12〉 Chart LMF1.6E: 여성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의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  
전체 근로자의 50%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 수 (2011년)

남성	여성
13개 직종	8개 직종

주: 직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3단위 분류체계에 따라 정의되었음  
자료: 통계청(201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1년 9월

한국에서 2011년 현재 전체 관리자 중 여성의 비중은 10.10%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에서 전체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한국 여성의 관리자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2.13〉 Chart LMF1.6F: 전체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2011

전체 관리자 중 여성의 비중 (%)
10.1

자료: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직업분류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직업 유형을 구분하고 정의함에 있어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의 정의는 국제표준직업분류가 정의하고 있는 관리자의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표 2.2.14〉 참고).

국제적인 지표와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서의 직업 분류를 현행 3분류 체계에서 4분류 체계로 확대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표 2.2.14〉 국제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관리자 정의 비교

국제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1. 관리자	1. Managers
11. 경영 간부, 고위직, 입법가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상업 관리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생산 및 특수 서비스 관리직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4. 접객산업, 소매상, 기타 서비스 관리직	14.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 출처 및 참고자료

통계청 (201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7. LMF2.1: 성별 주당 근로 시간

평상 근로 시간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당 평상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 인구의 분포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의 변화(1995~2000)의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동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는 OECD Labour Force Statistics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 자료 역시 이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다.

## 8. LMF2.2: 양부모 가족 부모의 막내 자녀 연령별·자녀수별 근로 시간 분포

### 가. 정의 및 방법론

동 지표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양부모 가족, 부양 자녀, 취업 상태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 분석한 지표에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근로 시간은 평상시의 주당 근로 시간이다. 근로 시간은 정규적인 초과근로 시간을 포함하나 주된 일자리가 아닌 부가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상시 주당 근로시간은 1~29시간, 30~39시간, 40~44시간, 그리고 45시간 이상의 네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 시간제 근로는 주당 40시간 미만의 근로로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시간제 근로를 주당 30시간 미만의 근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시간제 근로로 정의하였다.

## 나. 주요 결과

〈표 2.2.15〉 Chart LMF2.2A: 0~14세 자녀를 가진 양부모의 취업 유형, 2009

구분	비중 (%)
부모 둘 다 종일제 근로	30.1
부모 중 한 사람만 종일제 근로	45.7
한사람은 종일제 근로, 다른 한사람은 시간제 근로	4.1
부모 둘다 비취업 상태	2.0
기타	18.2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16〉 Chart LMF2.2B: 양부모 가족의 취업 상태 분포의 변화, 1999~2009

구분	1999(%)	2009(%)	변화(% p.)
부모 둘 다 종일제 근로	37.6	43.2	+5.6
남성은 종일제 근로, 여성은 비취업	46.7	45.8	- 0.9
남성은 종일제 근로, 여성은 시간제 근로	4.4	4.4	0
부모 둘 다 비취업	6.9	3.9	-3.0

자료: 한국노동패널(2009)

〈표 2.2.17〉 Table LMF2.2A: 막내 자녀 연령별 양부모 가족의 취업 유형, 2009

구분		비중 (%)
막내 자녀 연령 0~2세 양부모 가족	부모 둘 다 종일제 근로	27.1
	부모 중 한 사람만 종일제 근로	67.0
	한사람은 종일제 근로, 다른 한사람은 시간제 근로	1.7
	부모 둘 다 비취업 상태	3.2
	기타	0.9
막내 자녀 연령 3~5세 양부모 가족	부모 둘 다 종일제 근로	31.5
	부모 중 한 사람만 종일제 근로	62.5
	한사람은 종일제 근로, 다른 한사람은 시간제 근로	3.8
	부모 둘 다 비취업 상태	1.6
	기타	0.7
막내 자녀 연령 6~14세 양부모 가족	부모 둘 다 종일제 근로	43.0
	부모 중 한 사람만 종일제 근로	45.6
	한사람은 종일제 근로, 다른 한사람은 시간제 근로	6.4
	부모 둘 다 비취업 상태	2.8
	기타	2.2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18〉 Table LMF2.2B: 양부모 가족의 주당 근로 시간 성별 분포, 2009

구분	구분	비중 (%)
0~14세 자녀를 가진 여성	1~29 시간	9.5
	30~39 시간	9.0
	40~44 시간	42.3
	45 시간 이상	39.2
0~14세 자녀를 가진 남성	1~29 시간	2.1
	30~39 시간	2.6
	40~44 시간	30.8
	45 시간 이상	64.5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19〉 Table LMF2.2C: 막내 자녀 연령별 양부모 가족 여성의 주당 근로 시간 분포, 2009

구분	구분	비중 (%)
0~2세 자녀를 가진 여성	1~29 시간	4.9
	30~39 시간	3.7
	40~44 시간	58.3
	45 시간 이상	33.1
3~5세 자녀를 가진 여성	1~29 시간	5.6
	30~39 시간	4.9
	40~44 시간	57.6
	45 시간 이상	31.9
6~14세 자녀를 가진 여성	1~29 시간	11.6
	30~39 시간	11.3
	40~44 시간	34.5
	45 시간 이상	42.6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20〉 Table LMF2.2D: 막내 자녀 연령별 양부모 가족 남성의 주당 근로 시간 분포, 2009

구분		비중 (%)
0~2세 자녀를 가진 남성	1~29 시간	1.1
	30~39 시간	3.3
	40~44 시간	35.7
	45 시간 이상	60.0
3~5세 자녀를 가진 남성	1~29 시간	2.9
	30~39 시간	1.7
	40~44 시간	30.4
	45 시간 이상	65.0
6~14세 자녀를 가진 남성	1~29 시간	2.1
	30~39 시간	2.7
	40~44 시간	28.8
	45 시간 이상	66.2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21〉 Table LMF2.2E: 0~14세 자녀수별 양부모 가족의 여성 근로 시간 분포, 2009

구분		비중 (%)
0~14세 자녀가 없는 여성	1~29 시간	10.2
	30~39 시간	10.6
	40~44 시간	29.2
	45 시간 이상	50.1
0~14세 자녀 1명 있는 여성	1~29 시간	7.2
	30~39 시간	9.0
	40~44 시간	42.3
	45 시간 이상	41.6
0~14세 자녀 2명 이상 있는 여성	1~29 시간	10.0
	30~39 시간	8.6
	40~44 시간	44.0
	45 시간 이상	37.4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22〉 Table LMF2.2F: 0~14세 자녀수별 양부모 가족의 남성 근로 시간 분포, 2009

구분		비중 (%)
0~14세 자녀가 없는 남성	1~29 시간	5.1
	30~39 시간	5.5
	40~44 시간	28.2
	45 시간 이상	61.3
0~14세 자녀 1명 있는 여성	1~29 시간	2.0
	30~39 시간	2.5
	40~44 시간	32.6
	45 시간 이상	62.9
0~14세 자녀 2명 이상 있는 여성	1~29 시간	1.9
	30~39 시간	2.6
	40~44 시간	28.7
	45 시간 이상	66.9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23〉 Table LMF2.2G: 6세미만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족의 취업 유형 변화, 1999년과 2009년

구분	1999(%)	2009(%)
부모 둘 다 종일제 근로	23.5	31.7
남성은 종일제 근로, 여성은 비취업	64.5	62.0
남성은 종일제 근로, 여성은 시간제 근로	4.6	1.9
부모 둘 다 비취업	4.8	2.6
기타	2.7	1.8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9, 2009)

**출처 및 참고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09년 한국노동패널

한국노동연구원 (1999) 1999년 한국노동패널

**9. LMF2.3: 막내 자녀 연령 및 자녀수별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

OECD Family database에서 동 지표에 대한 분석은 “0~14세 자녀가 있는 한부모의 취업 상태,” “막내 자녀 연령별 한부모의 취업 유형,” “막내 자녀 연령별 한부모 근로시간 유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노동패널자료에서 한부모의 샘플수가 너무 적어서 한부모의 취업 유형과 근로 시간 유형을 막내 자녀 연령별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동 지표에 대한 분석은 한국노동패널자료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LMF2.4: 가족 친화 제도****가. 정의 및 방법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써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로제” 등의 유연 근무 제도가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유연 근무 제도로써 정의하고 있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과 같은 가족 친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혹은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용주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 시간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로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주가 처벌이나 가산임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로써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 근로시간대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근로시간제도로써 기본 취지는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시간 배분 및 업무 수행 방법을 위임하고자 하는데 있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의 수에 대한 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근로 시간은 대부분 취업 규칙 혹은 노동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2005년 사업체 패널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근로자 30명 이상의 1,90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사업체 패널 조사에서는 선택적 근무 시간제 혹은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비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도 한국 노동패널 자료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결정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가족실태조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근무시간 조절 가능성을 질문하였다. 그러나 동 조사에서는 취업자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하다고 응

답한 비중이 과대 추정되었을 우려가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수집되지 않았다.

가족 친화 제도와 관련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유연 근무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나. 주요 결과

2005년 사업체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비중은 12.48%,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비중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4〉 Chart LMF2.4A: 유연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비중

선택적 근무 시간제	탄력적 근무 시간제
12.48%	8.00%

주: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대상  
자료: 사업체패널 (2005)

2009년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대체로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5〉 Chart LMF2.4B: 근로 시간 결정 방식 비중, 2009

구분	비중
취업 규칙 혹은 근로 계약	75.5%
단체 협약	5.7%
상급 지휘자의 판단	13.2%
본인의 판단	5.5%
모름 혹은 무응답	0.1%

주: 임금 근로자 대상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자료는 근무 시간 조절 가능성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 조사 결과는 응답자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무 시간 조절 가능성에 대한 동 조사 결과는 근로자들이 실제 가능한 근무 시간 조절 정도 보다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고 나서도 여전히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29.9%)이 남성(23.0%)보다 높았다.

〈표 2.2.26〉 Chart LMF2.4C: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계획의 성별 차이, 2010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자 비중

남성	여성
23.0%	29.9%

주: 응답자에는 근로자, 근로주, 자영업자가 모두 포함됨  
자료: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표 2.2.27〉 Annex Table LMF2.4: 가족 친화를 위한 노동 시간 유연화 관련법의 주요 내용, 2012

구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령 내용	-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주가 처벌이나 가산임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기준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근로 및 사회적 보호	- 취업 규칙 혹은 사용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름 -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구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령 내용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
근로 및 사회적 보호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함

구분	재량 근로 시간제
법령 내용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기준	-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는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집 또는 고안 업무, ④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
근로 및 사회적 보호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함 - 근로시간의 산정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내용을 따름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령 내용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
기준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근로 및 사회적 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구분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법령 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기준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근로 및 사회적 보호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조정,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함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유연근무제도로써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도를 한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며 현재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는 “교대 근무제도”이다. 2005년 사업체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38.5%의 사업체가 교대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 근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유연 근무제도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켜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근로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 시간 조절 가능성과 근로 시간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주를 제외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현황에 대한 국내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Chart LMF2.4D: 재택 근무 현황 (Working from home)" 자료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 출처 및 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8) 2005년 사업체 패널  
 김혜원 외(2008) "WPS 2005 한국의 사업체와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근로기준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1. LMF2.5: 근로, 돌봄, 기타 일상 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 가. 정의 및 방법론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한국인들이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이래 매 5년마다 수행되고 있다.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는 봄과 가을에 각각 1회씩 조사가 수행되었다.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의 표본은 540개 조사구에 있는 8,100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성인 약 2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생활시간조사는 가구관련사항, 개인관련사항, 시간일지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 일지 작성을 통해 하루 24시간의 활동 형태를 10분 간격으로 "주행동" 및 "동시행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일상 행동들을 "주행동" 혹은 "동시행동"으로 구분하고 있

다. “주행동”은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한가지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을 말하며, 같은 시간대에 두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가장 길게 한 행동이나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주된 행동이라고 판단한 행동을 말한다. “동시행동”은 같은 시간대에 두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주 행동 이외의 행동을 말하며 두 개의 행동이 병행되는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동시행동으로 인정한다. “모든행동”은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포괄하여 집계한 행동이다.

응답자가 행동한 목적에 따라 행동을 9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144개 소분류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행동분류부호를 세자리로 구성하여 첫째자리는 대분류, 둘째자리는 중분류, 셋째자리는 소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9개의 대분류 행동은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로 구분된다. 동 지표의 분석 결과는 통계청이 생활시간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주요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유급 노동 혹은 학습: 일, 학습, 출퇴근, 그 외 일과 관련한 이동, 통학 및 학습과 관련한 이동
- 무급 노동: 가정 관리, 참여 및 봉사 활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 활동 관련 이동
- 돌봄 노동: 가족보살피기, 가족보살피기 관련 이동
- 개인 유지: 개인 유지, 개인 유지 관련 이동
- 여가: 교제 및 여가 활동, 종교 활동 제외, 교제 및 여가 활동 관련 이동
- 기타: 기타, 종교 활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한편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 자녀의 연령에 대해 질문하기 않고 미취학자녀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따라서 동 분석에서 자녀 연령은 미취학 자녀로서 정의된다.

## 나. 주요 결과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하게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개인 유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시간 중에서 개인 유지 활동에 소요하는 시

간 비중은 남녀 모두 약 4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개인 유지 활동 시간 비중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총 시간 중에서 유급 노동 활동에 소요하는 비중은 남성이 26.8%, 여성이 16.5%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돌봄 활동에 대하여 남성은 총 시간 중 1%, 여성은 총 시간 중 3.4%를 소요하고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돌봄 노동에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8〉 Table LMF2.5A: 성별 주된 행동에 소요한 시간 비중, 2009

24시간 중 각 행동의 시간 소요 비중(%)

	유급 노동 혹은 학습	무급 노동	돌봄 노동	개인유지	여가	기타	합계
15세 이상 남성	26.8	2.5	1.0	45.8	22.3	1.7	100.0
15세 이상 여성	16.5	12.0	3.4	45.8	19.7	2.6	100.0

자료: 통계청 (2012), 2009년 생활시간조사

〈표 2.2.29〉 Table LMF2.5B: 돌봄 활동에 소요한 시간 비중, 2009

주된 행동으로 돌봄 활동에 소요한 시간 비중 (%)

	무배우자 성인 <sup>1)</sup>		유배우자 성인 <sup>2)</sup>	
	유자녀 <sup>3)</sup>	무자녀	유자녀 <sup>3)</sup>	무자녀
합계	5.9	0.5	9.1	1.7
근로자	6.3	0.3	5.2	1.1
비근로자	3.6	0.7	17.6	3.1

주: 1) 18세 이상으로 혼인 상태가 미혼, 사별, 이혼 등 배우자 없는 성인

2) 18세 이상으로 혼인 상태가 배우자 있는 성인

3) 미취학 자녀

자료: 통계청 (2012), 2009년 생활시간조사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하게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 있는 사람에 비해 자녀가 2명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소요하는 돌봄 노동 비중은 자녀가 없는 가정에 비해 한자녀 가정이 더 많이 소요하는 돌봄 노동 시간 비중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하게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에 비해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 비중을 소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 돌봄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 여성들은 다른 OECD 국가 여성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한국 남성들은 다른 OECD 국가 남성들과 비교하여 더 적은 시간을 돌봄 노동에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0〉 Chart LMF2.5A: 미취학 자녀수별 돌봄 노동에 소요한 시간 비중, 2009

주활동 혹은 2차 활동으로 돌봄 활동에 소요한 비중(%)

	무자녀	1 자녀	2 자녀 이상
25~44세 남성	0.6	3.6	4.7
25~44세 여성	3.1	16.0	19.7

주: 미취학자녀에만 해당

자료: 통계청 (2012), 2009년 생활시간조사

한국 여성들은 돌봄 활동을 2차적인 활동 보다 주된 활동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44세 여성이 돌봄 노동을 주된 활동으로 소요하고 있는 시간은 주당 하루 평균 약 96.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 노동을 2차적인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주당 하루 평균 약 9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녀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에 “주로 무엇을 했나요(주행동),” “누구와(함께한 사람),” “어디서,” “그 밖에 무엇을(동시행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함께한 사람”은 “주행동을 당신이 아는 누군가와 같이 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응답자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함께한 사람을 말한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응답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였을 때 누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답자가 자녀와 얼마만큼 시간을 함께 보냈는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불가능하다.

〈표 2.2.31〉 Chart LMF2.5C: 주된 행동 혹은 동시 행동으로서 돌봄 활동

25~44세 여성

주된 행동으로서 돌봄 활동	2차 활동으로서 자녀 양육	자녀와 함께한 시간
96.4분	9분	-

주: 주당 하루 평균 시간

자료: 통계청 (2012), 2009년 생활시간조사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는 생활시간조사에서와 같은 시간 일지 기록 방법이 아닌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돌봄 노동에 소요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돌봄 노동 소요 시간 행태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취학 자녀를 가진 사람들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돌봄 노동에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여성들은 OECD 국가 여성들과 비교하여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OECD 국가 남성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돌봄 필요 가족을 돌보는데 소요하는 시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2〉 Chart LMF2.5D: 돌봄 활동에 소요한 주당 평균 시간, 2010

	자녀			고령자 혹은 돌봄 필요 가족원
	0~6세	7~12세	13~24세	
15세 이상 남성	12.6	7.0	10.1	20.4
15세 이상 여성	31.8	14.5	9.1	22.0

자료: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표 2.2.33〉 Annex 1: 근로 유형별 유자녀 성인의 주요 활동 시간 소요 비중, 2009

	남성				여성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가사 활동	전체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가사 활동	전체
개인 유지 활동	45.3	44.9	48.7	45.6	45.5	43.6	45.1	44.9
근로 관련 활동	32.1	26.3	6.9	30.7	24.8	16.4	0.1	8.9
가사 활동	2.0	3.1	5.8	2.2	9.0	13.2	17.5	14.7
돌봄 노동	3.5	2.6	5.8	3.5	9.1	12.2	18.3	15.1
2차적 활동으로서 육아	3.3	2.4	5.9	3.3	9.2	12.0	18.6	15.3
여가	15.8	21.3	31.5	16.7	10.1	12.4	16.9	14.4
기타	1.3	1.7	1.2	1.3	1.5	2.2	2.1	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12), 2009년 생활시간조사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생활시간조사는 OECD 국가들 간의 조사 방법이 유사하여 국가들 간의 자료 일관성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시간조사가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가지 개선 사항이 요청된다.

우선적으로 패밀리데이터 베이스에서는 응답자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자녀가 함께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도 자녀가 옆에 있었는가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자녀가 옆에 있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에 대한 정보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수, 자녀의 출생 순위, 자녀 연령 등 자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가 자녀의 출생 순위를 조사하고 있지 않아 “Chart LMF2.5B: 여성이 돌봄 노동에 소요한 시간 비중: 막내 자녀 연령 별” 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통계청 (2012). 생활시간조사, 2009.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 12.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

### 가. 정의 및 방법론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는 “이동”을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동 항목 하에 평일 동안 사람들이 “출퇴근”에 소요한 평균 시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에 대한 자료를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다.

## 나. 주요 결과

한국 남성들은 평일에 평균적으로 출퇴근하는데 51분을 소요하고 있어 한국 여성들의 30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인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출퇴근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4〉 Chart LMF2.6A: 출퇴근하는데 보낸 평균 시간, 2009

평일 동안 보낸 시간(분): 15세 이상 모든 응답자

전체	남성	여성
40	51	30

자료: 통계청 (2012), 생활시간조사, 2009

출퇴근에 보낸 시간은 통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전체 응답자 뿐만 아니라 통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출퇴근에 보내는 시간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통근자의 경우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간에 출퇴근에 소요한 시간은 모두 77분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 통근자의 경우 학령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평일 평균 출퇴근 시간이 63분으로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의 72분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학령전 연령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직장에 통근하는데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더 빠른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2.2.35〉 Table LMF2.6A: 출퇴근에 보낸 시간, 성별 및 자녀별, 2009

평일 동안 보낸 시간(분): 통근하고 있는 응답자

남성			여성			전체남성/ 전체여성
무자녀	유자녀(학령전)	전체	무자녀	유자녀(학령전)	전체	
77	77	77	72	63	71	1.08

주: 통근하고 있는 응답자의 평균 시간, 가정주부 혹은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 제외

자료: 통계청 (2012), 생활시간조사, 2009

**출처 및 참고자료**

통계청(2012). 생활시간조사, 2009.

**13.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과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9년도 한국노동패널은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15세 이상의 응답자가 느끼는 행복감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만족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그렇다면 \*\*\*\*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①매우 만족스럽다, ②만족스럽다, ③보통이다, ④불만족스럽다, ⑤매우 불만족스럽다”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2005년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는 20세 이상 한국인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 당신의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응답자들이 1(“완전히 불만족한다”)부터 10(“완전히 만족한다”)까지의 척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현재 세계갤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성별 그리고 취업상태별 삶에 대한 만족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는 2005년도 자료로서 2009년도 세계갤럽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오래된 자료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도 세계가치관조사 자료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자료의 업데이트 작업이 요청된다.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도에 수행한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는 2,268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이다.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네가지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볼 때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연령은 11~15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11~15세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중학교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 나. 주요 결과

본 보고서는 성인들이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한국노동패널과 세계가치관조사 각각의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공한다. 2009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세 이상 성인 중 43.8%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9.6%가 보통으로 응답하고, 나머지 6.6%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는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1~10 척도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만족도 측정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2005년 세계가치관조사결과는 OECD Family database와 같은 1~10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10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 만족도 수준은 6.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도 세계가치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자료로서 현재 OECD Family database에 보고되어 있는 5.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2.2.36〉 Chart 2.7A: 15세 이상 성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09

### 5점 척도에서의 비중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5점 척도 평균 점수
0.5%	6.1%	49.6%	42.9%	0.9%	3.38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37〉 Chart 2.7A: 20세 이상 성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05

### 0~10점 척도에서의 평균 점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0~10점 척도)
6.35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2005)

2010년도에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중 72%가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혹은 “다소 그렇다”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8〉 Chart2.7B: 중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나는 지금 행복하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3.8%	48.7%	23.0%	3.9%

주: 응답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1,039명 학생들임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2009년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삶에 대해 “만족스럽다”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남성 44.3%, 여성 44.1%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간에 별다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만족스럽다” 혹은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응답은 보인 사람들은 남성 6.3%, 여성 4.2%로 나타나 삶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년도 세계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남성 6.27과 여성 6.44로 남성이 약간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2.39〉 Chart 2.7C: 성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9

5점 척도에서의 비중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5점척도 평균점수
남성	0.4%	5.9%	50.3%	42.4%	0.9%	3.37
여성	0.6%	3.6%	49.0%	43.3%	0.8%	3.38

주: 15세 이상 성인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40〉 Chart 2.7C: 성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5

1~10 척도 중 평균 점수

구분	평균 점수
남성	6.27
여성	6.44

주: 20세 이상 성인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2005)

취업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노동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중 삶에 대해 만족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중은 46.7%인데 비해, 비취업자 중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0.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05년도 세계가치관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임금을 받는 취업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서 평균 6.42점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을 받지 않는 취업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6.30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표 2.2.41〉 Chart 2.7D: 취업 상태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9

5점 척도에서의 비중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5점척도 평균점수
취업자	0.3%	4.5%	48.5%	45.7%	1.0%	3.43
비취업자	0.8%	8.0%	51.0%	39.5%	0.7%	3.31

주: 응답자는 15세 이상 성인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

〈표 2.2.42〉 Chart 2.7D: 취업 상태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5

10점 척도에서의 평균 점수

구분	평균 점수
임금을 받는 취업자	6.42
임금을 받지 않는 취업자	6.30

주: 응답자는 15세 이상 성인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2005)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동일한 표준을 가지고 만족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비교상의 한계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조사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OECD 국가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과와 동 보고서가 한국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비

교하는 것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의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설문 조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질문과 측정 방식을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높은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09년 한국노동패널

세계가치관조사 (2005)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제3절 가족 및 아동 정책

### 1. PF1.1: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에서 주요 지표는 “가족에 대한 현금, 서비스, 조세 감면 공적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동 지표에 대한 자료는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 자료 역시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 2. PF1.2: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에서 주요 지표는 “교육 수준에 따른 공적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학생 1인당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대한 공적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동 지표에 대한 자료는 OECD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 자료 역시 OECD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 3. PF1.3: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Family database는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를 자녀와 관련하여 가족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는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는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를 3~12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해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중심으로 각국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득 지원과는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다루고 있다. 가족 현금 급여에는 소득 수준이 면세점 이하로 낮아서 자녀 부양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 역시 포함된다.

## 나. 주요 결과

〈표 2.3.1〉 Table PF1.3A: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 2012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정부는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를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li> <li>• 2009년 7월 1일부터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2세 아동에 대해 양육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0~5세 아동으로 확대됨</li> <li>• 한국 정부는 자녀를 입양한 가족과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함</li> <li>•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 출생한 아동에게 “출산 축하금”과 0~2세 아동에 대해 “자녀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지자체의 현금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둘째아 혹은 셋째아를 대상으로 지급됨</li> </ul>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한국은 현재 OECD Family database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12). <http://www.mw.go.kr/>

## 4. PF1.4: 가족에 대한 조세 혜택 체계

가족에 대한 조세 혜택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두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지표는 6~11세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평균 소득 133~200%에 해당하는 부부 가족이 총 가계 소득 중 몇 %를 정부에 조세로 지출하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두 번째 지표는 평균 소득의 67%에 해당하는 수입을 벌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지출하게 되는 조세 부담액이다.

동 지표에 대한 자료는 OECD Tax/Benefit models에서 수집되고 있으며 한국 자료 역시 이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다.

## 5. PF1.5: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에서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주로 부모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위해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등의 국가와 다르게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집행 이행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부양비 결정과 이행에 관해서 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김승권 외, 2011).

2012년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육비 수준이 결정된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advance maintenance payments)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원은 자녀 연령이 18세 될 때까지 지원되며 이혼한 부모는 재혼하지 않고 한부모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혼한 한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비 지급 기간은 자녀가 종일제 교육을 마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 나. 주요 결과

〈표 2.3.2〉 Table PF1.5A: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 제도의 주요 특징

양육비 결정에 관여하는 주체	부모	관여함 (법원의 허가 필요)
	법원	관여함
	기관	관여하지 않음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	부모 혹은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는 방식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기관	법원	
사실혼 부부의 자녀에 대한 다른 규정	없음	
양육비 지원이 종료되는 자녀 연령	- 미혼 한부모의 경우 자녀 연령 18세 - 이혼 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종일제 교육을 마치는 연령까지 연장됨	
양육비 선지급 제도	없음	

김승권 외 (2011)는 국내 전체 한부모 가족의 수와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의 정의를 따라 동일한 가구에서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중은 2005~2010년도 사이에 약 8% 내외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3.3〉 한부모 가구 수 및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200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부모 가구 수 <sup>1)</sup>	1,376,021	1,393,515	1,420,790	1,447,168	1,471,961	1,511,961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sup>2)</sup>	8.61%	8.43%	8.65%	8.67%	8.70%	8.72%

주: 1) 한부모가족은 동일한 가구에서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임

2) 한부모 가족 수와 전체 가구 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함

자료: 김승권 외(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 가족지원체계구축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내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한부모의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소규모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제한적인 수의 연구가 한부모들이 받고 있는 양육비 규모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소규모 샘플 결과는 전국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미정 외 (2011) 연구에서는 전체 213명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미혼부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샘플 중 8%의 미혼 한부모만이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4〉 Table PF1.5C: 자녀 양육비 지급 현황: 패널 A

양육비 액수(원)	미혼모	
	수 (명)	비중 (%)
0	196	92.0
0~100,000원	3	1.4
100,001 ~ 300,000원	3	1.4
300,001 ~ 500,000원	7	3.3
500,001 ~ 1,000,000원	2	0.9
1,000,000 ~ 1,500,000원	2	0.9
전체	213	100.0

자료: 이미정 외 (2011) “미혼부의 책임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외(2006)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한부모 3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혼한 한부모들이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전체 387명의 샘플 중에서 불과 12.7%에 해당하는 49명의 한부모들만이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49명의 한부모들은 모두 여성 한부모이었다.

〈표 2.3.5〉 Table PF1.5C: 자녀 양육비 지급 현황: 패널 B

구분		이혼 한부모	
		수(명)	비중(%)
지급받지 않고 있음		338	87.3
지급받고 있음	액수	49	12.7 (100)
	110,000~ 200,000원		(10.2)
	210,000~ 300,000원		(28.6)
	310,000~ 500,000원		(28.6)
	510,000~1,000,000원		(26.5)
전체		387	100.0

자료: 김혜영 외 (2006) “이혼후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한부모 현황에 대한 전국 대표적인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에는 한부모들의 생활 현황 뿐만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 또는 미혼부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 한부모들의 비중 및 받고 있는 양육비 규모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3년간의 주기로 “전국 한부모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사 결과가 수집되는 대로 한부모 현황에 대한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김승권 외 (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 가족지원체계 구축과 자립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미정 외 (2011). *미혼부 책임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외 (2006). *이혼 후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6. PF2.1: 모성 휴가 제도의 주요 특징

### 가. 정의 및 방법론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제도란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출산전후 휴가의 대상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모두가 포함되며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 정규직 근로자도 대상자에 포함되며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로서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2년 8월 2일부터 유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산 전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규모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135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써 출산일 전후 3~5일 사용 가능하며 최초 3일에 대해 유급으로 지원된다. 2012년 8월 2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2월 2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 연령이 만6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 휴직 전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상한액 100만원과 하한액 5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육아 휴직급여의 15%는 동일한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

상이어야 한다.

## 나. 주요 결과

(1)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 혹은 12.8주이다 (주당 근로일수를 7일로 간주)

(2)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86.88% 이다.

〈추정 방식〉

- 출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산전후 휴가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그리고 통상 임금에서 135만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135만원만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상 임금 전액이 지원되며 나머지 30일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135만원을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정한다.
- 월평균 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90일 동안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받는다.
- 월평균 임금이 135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100% 미만(135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받는다.
-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사용 확률이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전체근로자 가운데 135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비중을 구하여 이를 소득대체율에 반영한다.
- 월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식의 가정을 따름
  - \* (1안) 2010년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5~45세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임금이 135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68.99%, 월평균 임금이 135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053,499원으로 가정함
  - \* (2안)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44세 여성 근로자의 월 정책 급여를 1,837,555원으로 가정함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내부자료, 2012. 8)

- 1안을 따르는 경우 월평균 임금이 135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전체의 31.01%)는 출산전후기간 90일 동안 405만원을 받아 100%의 소득대체율을 보이며, 135만원 이상인 여성 근로자(전체의 68.99%)는 2달 동안 (3,053,499\*2)원을 받고 마지막 한달 동안 13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며 90일 동안 총 7,456,998원을 받는다. 이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 9,160,497원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1안을 따르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다음과 같이 산식에 따라 추정된다.

$$(100 \times 0.31) + (81 \times 0.69) = 86.88\%$$

- 2안을 따르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91.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내부자료, 2012. 8)

(3) 임금의 전액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출산전후휴가기간

- 1안:  $12.8\text{주} \times 86.9\% = 11.1\text{주}$

- 2안:  $12.8\text{주} \times 91.2\% = 11.7\text{주}$

(4)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0.6주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중 3일은 유급 휴가이며 추가적인 2일은 무급휴가임. 따라서 근로자에게 권리로 할당된 휴가일수는 3일이며 주 5일 근로이므로  $3\text{일} \div 5\text{일} = 0.6\text{주}$

(5)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동안에 임금의 전액이 지원된다.

(6)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동안에 임금의 전액이 지원되므로 임금의 전액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은  $0.6\text{주} \times 100\% = 0.6\text{주}$

(7) 육아 휴직 기간은 1년이므로 52주

(8)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된 휴가는 없음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하되 하한선 50만원과 상한선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가정에 따라 추계한다. 1안은 하한선과 상한선을 무시하고 전체 여성에 대해 통상 임금의 40%를 지원한다고 가정한다. 2안은 하한선과 상한선의 범위 하에서 통상 임금의 40%를 지원한다고 가정한다.

- (9) 육아휴직급여율은 1안을 따르는 경우 40%, 2안을 따르는 경우 45%로 추계되었다. 2안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율을 추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25세부터 45세까지 가입기에 해당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에 대해 모든 소득 구간의 남녀 육아휴직 이용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 지급받는 집단 (월 통상임금 1,250,000원 이하)의 급여율과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에 해당하는 집단(월 통상임금 2,500,000원 이상)의 급여율을 구한다. 각 집단의 임금 분포 비중을 반영하여 최종 평균 급여율을 구한다.
- 육아휴직급여 50만원을 지급받는 집단인 월 통상임금 1,250,000원 이하 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58,153원이며,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을 지급받는 집단인 월 통상임금 2,500,000원 이상 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272,600원이다 (한국노동패널 2010년도 조사 결과).
  - 1,250,000원 이하 임금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율은  $(500,000 \div 958,153) \times 100 = 52\%$ 이며, 2,500,000원 이상 임금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율은  $(1,000,000 \div 4,272,600) \times 100 = 23\%$ 이다.
  - 각 소득 집단의 상대적인 비중은 월 125만원 이하 임금 근로자 19.21%, 월 125만원 ~ 월 250만원 사이의 임금 근로자 46.09%, 월 250만원 이상 임금 근로자 34.70% (한국노동패널 2010년도 조사 결과).
  - 따라서 평균 급여율은  $(52\% \times 0.19) + (40\% \times 0.46) + (23\% \times 0.34) = 45\%$
- (10) 육아휴직급여가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육아 휴직기간은 1안을 따를 경우  $52\text{주} \times \text{육아휴직급여율 } 0.4 = 20.8\text{주}$ , 2안을 따를 경우  $52\text{주} \times \text{육아휴직급여율 } 0.45 = 23.4\text{주}$

(11)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 기간은 1안을 따를 경우 52주 - 20.8주 = 31.2주이며, 2안을 따를 경우 52주 - 23.4주 = 28.6주로 계산됨

〈표 2.3.6〉 Table PF2.1A: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특성, 2012

구분		내용
출산전후휴가	(1) 휴가 기간 (주)	12.8
	(2) 급여의 소득 대체율 (%)	①86.9 ②91.2
	(3) 임금 전액이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휴가기간 (주)	①11.1 ②11.7
배우자 출산휴가	(4) 휴가 기간 (주)	0.6
	(5) 급여의 소득 대체율 (%)	100.0
	(6) 임금 전액이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휴가기간 (주)	0.6
육아휴직	(7) 휴가 기간 (주)	52
	(8)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된 휴가	-
	(9) 급여의 소득 대체율 (%)	①40 ②45
	(10) 임금 전액이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휴가기간 (주)	①20.8 ②23.4
	(11)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 기간	①31.2 ②28.6
	(3)+(10) 임금 전액이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	①31.9 ②35.1
	(1)+(8)or(7)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64.8

〈표 2.3.7〉 Chart PF2.1A: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100% 지급 된다고 가정할 때 휴가 기간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 기간

구분		내용
출산전후휴가	임금 100% 지급 가정 시 휴가 기간	12.8 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 기간	-
배우자출산휴가	임금 100% 지급 가정 시 휴가 기간	0.6 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 기간	0.4 주
육아휴직	임금 100% 지급 가정 시 휴가 기간	① 20.8 주 ② 23.4 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 기간	① 31.2 주 ② 28.6 주

〈표 2.3.8〉 Table PF2.1B: 출산전후휴가제도의 주요 내용, 2012

구분	내용
휴가기간 (주)	12.8주 (90일)
급여 수급 자격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휴가급여 지급여부	휴가급여가 지급됨
급여액	60일 동안에는 급여 100% 지급,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지급
급여지원 주체	고용보험 + 사업주

〈표 2.3.9〉 Table PF2.1C: 출산전후 휴가급여 외 모성 수당 및 모성 보조금

구분	내용	
출산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에서 일시금 혹은 분할급의 출산축하금 지원</li> <li>- 출산축하금은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둘째아 혹은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li> <li>- 수급자격과 지원액수는 지자체별로 다양함</li> </ul>	
해산급여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액	출생 영아 1명당 500,000원

〈표 2.3.10〉 Table PF2.1D: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주요 내용, 2012

구분	내용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휴가 기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일 전후 3~5일
급여 제공 기간	3일
급여액	임금의 100%
고용보장	보장됨
급여 지원 주체	사업주

〈표 2.3.11〉 Table PF2.1E: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2012

구분	내용
휴가 기간	동일한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모 1명당 12개월
자녀 연령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li> <li>-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li> <li>-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li> </u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음</li> <li>-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li> <li>-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전일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li> <li>-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하여야 함</li> </ul>
아버지 할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연령 만6세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li> </ul>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급여의 소득 대체율과 임금 전액이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의 휴가기간을 추정함에 있어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액에 상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적용한 추계 방식을 OECD 소개함과 더불어 국내에서와 같이 정률제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되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소득 대체율과 전액 급여 지원시 휴가기간을 추정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영문명 표기에 있어 "출산전후휴가(Maternity leave)"와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Parental Leav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Childcare Leave"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내부자료, 2012. 8).

### 출처 및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12) <http://www.moel.go.kr/>

한국노동패널 2010년도 조사결과보고서.

## 7. PF2.2: 부모의 자녀 관련 휴가 제도 사용 현황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통계자료를 기초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인원과 지원 금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수급 인원에 대한 자료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급여 수급 인원과 지원 금액 등 실적 자료만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체 취업자 중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비중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휴가제도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OECD Family Database 지표 중에서 다음과 같은 모성 휴가 이용과 관련한 국내 자료는 제공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 Chart PF2.2A: 1세 미만 자녀를 가진 취업 부모 중에서 육아휴직 중에 있는 부모의 비중
- Chart PF2.2B: 1세 미만 자녀를 가진 취업 여성 중에서 육아휴직 중에 있는 여성의 비중
- Chart PF2.2C: 육아휴직 이용자의 성별 비중

#### 나. 주요 결과

본 고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기초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수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인원 수를 제공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혹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다.

〈표 2.3.12〉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인원 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명)	육아휴직 수급인원 (명)		
		전체	여성	남성
2011년 4월	11,897	28,216 (100%)	27,717 (98.2%)	499 (1.8%)
2012년 4월	12,493	37,217 (100%)	36,385 (97.8%)	832 (2.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고용보험통계현황" 2012년 4월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한국노동패널조사 샘플 중에서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응답자 수가 적어서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취업자 중에서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

직을 사용한 사람들의 비중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적은 수의 샘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련된 질문 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중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람들의 규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2년 4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8. PF2.3: 취업 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휴가제도

### 가. 정의 및 방법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1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년 중 공휴일 수는 14일로서 이러한 공휴일에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등이 포함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의를 통해 합의된 유급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서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장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

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되어 근로자는 무급 휴가로 사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의 위한 지원).

국내에서는 아직 질병이나 응급 상황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민간회사에서 사규로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 나. 주요 결과

〈표 2.3.13〉 Table PF2.3A: 법정 혹은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되는 연간 유급 휴가 일수, 2012

연간 유급 휴가 일수		
법정 유급 휴가 일수	단체 협약을 통한 유급 휴가일수	공휴일
15일	-	14일

자료: 근로기준법 (201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12)

〈표 2.3.14〉 Table PF2.3B: 취업 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휴가, 2012

유형	목적	법정규정	휴가 기간	급여
부양가족돌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연간 최장 90일 - 90일의 휴가기간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무급휴직
개인적인 질병 혹은 응급 상황		법정규정사항 없으며 기업체의 사규로 규정함		

자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출처 및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201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1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12)

## 9. PF2.4: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기간 90일 동안 지급되는데 처음 60일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전액이 지급되며,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월 1,350,000원이 지급된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전체 휴가 기간 5일 중 3일에 대하여 100%의 임금이 지원된다.

과거에 육아휴직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정된 액수 (월 50만원)가 지급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월 1,000,000원 그리고 하한액 월 500,000원 범위 안에서 통상 임금의 40%가 지원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중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원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정률제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2012년 현황에 맞게 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OECD Tax-Benefit model이 사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http://www.oecd.org/dataoecd/44/17/39753700.pdf>). 한편 OECD Tax-Benefit calculator에서 제시된 한국의 2010년 평균 임금 자료는 제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것으로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 C-K 산업이 포괄하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을 구하여 적용하였다<sup>4)</sup>.

####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 2010년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 결과 C-K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328,571원으로 산출되었다.
-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대체율: 근로자 월 평균임금 2,328,571원의 50%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은 월 1,164,285이다. 출산

4) C-K에 포함되는 산업은 다음과 같다: C-mining,quarrying (광업, 채석업), D-manufacturing (제조업), E-electricity,gas,water supply (전기, 가스, 상수도 공급업), F-construction (건설업), G-wholesale,retail (도소매업), H-hotel,restaurant (숙박 및 음식업), I-transport,communication (운송 및 통신업), J-financial (재정), K-real estate,business (부동산, 사업)

전후휴가 기간 중 첫 60일 동안은 전체 임금에 해당하는 1,164,285원이 지급되며, 월 임금 수준이 1,350,000원 이하이므로 나머지 3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도 임금의 전액인 1,164,285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소득 대체율은 100%이다.

- 근로자 평균 임금의 100%를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대체율: 근로자 월 평균 임금 2,328,571원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은 월 2,328,571원이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첫 60일 동안은 전체 임금에 해당하는 월 2,328,571원이 지급되어 60일 동안에 받는 총 급여액수는 4,657,142원 (=2,328,571원×2개월)이다.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임금 수준이 급여의 상한액수인 1,350,000원보다 높으므로 급여액의 상한액수인 1,350,000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4,657,142\text{원} + 1,350,000\text{원}) \div (2,328,571\text{원} \times 3\text{개월}) = 85.99\%$ 이다.

- 근로자 평균 임금의 150%를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대체율: 근로자 월 평균 임금 2,328,571원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은 월 3,492,857원이다. 이 여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처음 60일 동안에는 전체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받으며  $(3,492,857\text{원} \times 2\text{개월} = 6,985,713\text{원})$ , 나머지 3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350,000원을 지급 받는다. 따라서 이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의 소득대체율은  $(6,985,713\text{원} + 1,350,000\text{원}) \div (3,492,857\text{원} \times 3\text{개월}) = 79.55\%$ 이다.

●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

- 전일제 부부가 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부부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벌고 있다고 가정한다.

- C-K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328,571원으로 가정한다.

- 평균 임금 수준의 50%를 벌고 있는 사람의 임금의 40%는 465,714원으로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인 500,000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월 500,000원이 지급된다.

- 평균 임금 수준의 100%를 벌고 있는 사람의 임금의 40%는 931,428원으로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500,000원과 상한액 1,000,000원 사이에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통상 임금의 40%인 931,428원이 지급된다.

- 평균 임금 수준의 150%를 벌고 있는 사람의 임금의 40%는 1,397,000원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0,000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인 1,000,000원이 지급된다.

〈표 2.3.15〉 둘째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소득수준		둘째 자녀 출산 전 임금 수준		둘째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임금 수준		소득대체율 (B/A*100)
		개인	가구(A)	개인	가구(B)	
평균임금 50% 수준	남편	1,164,286	2,328,571	1,164,286	1,664,286	71%
	아내	1,164,286		500,000		
평균임금 100% 수준	남편	2,328,571	4,657,142	2,328,571	3,259,999	70%
	아내	2,328,571		931,428		
평균임금 150% 수준	남편	3,492,857	6,985,713	3,492,857	4,492,857	64%
	아내	3,492,857		1,000,000		

주: 단위는 원화임.

- 둘째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전후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가처분소득
  - ① 자녀 1명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 전 가처분소득 (A)
    - 가처분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세금과 사회보험에는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하였다 (〈표 2.3.16.1〉참조).
    - 과세 대상 소득은 비과세소득인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소득으로서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월 평균 임금을 연평균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 임금의 50%, 100%, 150%를 구한 결과 과세 표준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소득세율 15%를 적용하였다 (〈표 2.3.16.2〉참조).
    - 남편과 아내의 가처분 소득을 합하여 가구 가처분 소득을 구하고, 동등화지수 (equivalence scale)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가구원의 증가를 반영하였다. 즉, 출산 전 가구가처분소득을 3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1인당 가구소득을 구하였다.
  - ② 둘째 자녀 출산 후 2자녀 맞벌이 가구의 출산전후기간 동안 가처분 소득(B)
    - 남편의 경우 출산 전과 똑같이 근로소득을 벌고 있다고 가정한다.
    - 아내의 경우 출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동안 모두 사회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만 직장 복귀 이후 일시 혹은 분할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이며 고용보험도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만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 로 출산후 휴가 급여에서 공제한다. 보험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출산후휴가 급여 가운데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는 기업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출산후 급여 가운데 135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15%를 적용한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용한다.
  - 출산후 휴가 기간에 출산축하금/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고 지자체별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장려금<sup>5)</sup>의 평균값을 소득으로 산입한다. 분할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어 제외하고 일시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평균값 695,076원을 적용한다.
  - 출산 후 가처분소득을 4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1인당 가처분소득을 구한다.
- ③ 둘째 자녀 출생 후 가처분 소득 비중(C) = {둘째 자녀 출산 후 출산전후기간 동안 가처분 소득 (B) ÷ 둘째 자녀 출산 전 가처분 소득 (A)} × 100

〈표 2.3.16〉 둘째 자녀 출생 이후 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가처분 소득

(단위: 원)

평균 임금의	부부	개인소득 (a)	사회 보험료 (b)	소득세 (c)	지방세 (d)	개인 가처분소득 a-(b+c+d)	가구 가처분소득 (e)	출산 축하금 (f)	e+f	1인당 가처분 소득	
1자녀 맞벌이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 전 가처분소득 (A)											
50%	남편	1,164,286	94,773	160,427	16,043	893,044	1,786,087			1,031,198	
	아내	1,164,286	94,773	160,427	16,043	893,044					
100%	남편	2,328,571	189,545	320,854	32,085	1,786,087	3,572,174			2,062,396	
	아내	2,328,571	189,545	320,854	32,085	1,786,087					
150%	남편	3,492,857	284,317	481,281	48,128	2,679,131	5,358,261			3,093,594	
	아내	3,492,857	284,317	481,281	48,128	2,679,131					
둘째 자녀 출산 후 2자녀 맞벌이 가구의 출산전후기간 동안 가처분 소득(B)											
50%	남편	1,164,286	94,773	160,427	16,043	893,044	2,021,353	695,076	2,716,429	1,358,215	
	아내	1,164,286	35,976	0	0	1,128,310					
100%	남편	2,328,571	189,545	320,854	32,085	1,786,087	3,620,745	695,076	4,315,821	2,157,911	
	아내	2,002,381	71,952	87,064	8,706	1,834,658					
150%	남편	3,492,857	284,317	481,281	48,128	2,679,131	5,131,868	695,076	5,826,944	2,913,472	
	아내	2,778,571	107,928	198,097	19,810	2,452,737					
둘째 자녀 출산 후 가처분 소득 비중(C) = (B/A) × 100											
						50%			132%		
						100%			105%		
						150%			94%		

5)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자료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였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fehealth&logNo=20158460677>

〈표 2.3.16.1〉 국내 사회보험요율

	기준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 × 5.8%	2.9%	2.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6.5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고용보험	월급여(임금) 총액	0.55%	0.55%

〈표 2.3.16.2〉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율(2012년 귀속), 연소득 기준

과세표준	세율
12,000,000 이하	6%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3억 이하	35%
3억 초과	38%

- 평균임금의 50%를 버는 2자녀 맞벌이 가구의 육아 휴직 기간의 가처분 소득
  -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엄마가 출산 직후 출산후 휴가 3개월을 사용하여 연이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다. 따라서 출산 후 6개월 시점은 육아휴직 3개월 시점이며, 출산 후 1년은 육아휴직 9개월 시점이다. 출산 후 2년은 육아휴직에서 직장으로 복귀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출산 후 6개월 시점부터 출산 후 1년 시점까지 육아휴직급여 상황을 반영한다.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복귀 인센티브는 도표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므로 소득에 산입하지 않았다.
  -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앞서 분석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출산 후 6개월, 1년, 2년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경우 출산 전과 똑같이 근로소득을 벌고 있다고 가정한다.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아내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월 50만원)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만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보험료 만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공제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세는 없다. 출산 후 가처분소득을 4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1인당 가처분소득을 구한다.



〈표 2.3.17〉 출산 전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비중, 2012

시점	부부	개인소득 (A)	사회보험료 (B)	소득세 (C)	지방세 (D)	개인가처분 소득 A-(B+C+D)	가구 가처분 소득 (E)	1인당 가처분소득
둘째 출산 전	남편	1,164,286	94,773	160,427	16,043	893,044	1,786,087	1,031,198
	아내	1,164,286	94,773	160,427	16,043	893,044		
출산 후 6개월	남편	1,164,286	94,773	160,427	16,043	893,044	1,377,594	688,797
	아내	500,000	484,550	0	0	484,550		
출산 후 1년	남편	1,164,286	94,773	160,427	16,043	893,044	1,377,594	688,797
	아내	500,000	484,550	0	0	484,550		
출산 후 2년	남편	1,164,286	94,773	160,427	16,043	893,044	1,786,087	893,044
	아내	1,164,286	94,773	160,427	16,043	893,044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출산 후 6개월		67%						
출산 후 1년		67%						
출산 후 2년		86%						

## 나. 주요 결과

〈표 2.3.18〉 Chart 2.4A: 출산전후휴가의 소득대체율, 2012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따른 출산전 소득의 대체율: 소득수준별

소득 수준	소득 대체율
평균 임金的 50%	100%
평균 임金の 100%	86%
평균 임金の 150%	80%

주: 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은 2,328,571원으로 추정함 (한국노동패널, 2010)

〈표 2.3.19〉 Chart 2.4B: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2012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따른 출산전 임금의 대체율: 소득 수준별

소득 수준	소득 대체율
평균 임金の 50%	100%
평균 임金の 100%	100%
평균 임金の 150%	100%

주: 배우자출산휴가급여 5일 중 처음 3일 동안만 임금의 100%가 지급됨

〈표 2.3.20〉 Chart 2.4C: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2012

소득 수준	소득 대체율
평균 임금의 50%	71%
평균 임금의 100%	70%
평균 임금의 150%	64%

〈표 2.3.21〉 Chart 2.4D: 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가처분 소득, 2012

소득 수준	소득 대체율
평균 임금의 50%	132%
평균 임금의 100%	105%
평균 임금의 150%	94%

〈표 2.3.22〉 Chart 2.4E: 출산 전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비중, 2012

기간	소득 대체율
자녀 출생 이후 6개월	67%
자녀 출생 이후 1년	67%
자녀 출생 이후 2년	86%

**출처 및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12) <http://www.moel.go.kr/>

한국고용정보원(2012) 2009년 한국노동패널

## 10.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Family database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지표는 두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둘째, 아동 1인당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액수이다. 동 지표에 대한 한국 자료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가 구축하고 있으며 동 데이터로부터 OECD

Family database는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 사항은 현재 OECD Family database에 한국 자료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시행령에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나. 주요 결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직장 어린이집 수는 523개소이다 (보육통계, 2012). 2012년 9월말 현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장 수는 620개소이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411개소로 전체 66.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33.7%에 해당하는 209개소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무 이행 사업장 620개소 중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212개소, 보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138개소, 외부 시설에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은 61개소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2013).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005)는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전국의 대표성 있는 1,905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체 비중은 2.50%로서 노조가 있는 사업체 중에서는 3.96%, 노조가 없는 사업체 중에서는 2.13%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체 비중은 6.51%로서 노조가 있는 사업체 중에서는 13.92%, 노조가 없는 사업체 중에서는 4.6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3> Table PF3.1A: 고용주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 2012년 9월

(단위: 개소수, %)

전체 <sup>1)</sup>	의무이행 (A+B+C)	어린이집 설치 (A)	보육수당 지급 (B)	위탁 (C)	미설치 (D)
620 (100%)	411 (66.3%)	212 (51.6%)	138 (33.6%)	61 (14.8%)	209 (33.7%)

주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여성 300인 이상 또는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  
자료: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2012)

<표 2.3.24> Table PF3.1A: 고용주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 2005년

(단위: 개소수, %)

	전체 <sup>1)</sup>	노조 있음	노조 없음
직장보육시설	951 (2.50%)	300 (3.96%)	652 (2.13%)
보육료지원	2,482 (6.51%)	1,053 (13.92%)	1,429 (4.68%)

주 1):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전국의 대표성 있는 1,905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김혜원 외(2008). 『WPS 2005 한국의 사업체와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한국에서 3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 "WPS 2005, 한국의 사업체와 노동"에서 나타난 현황은 자료가 오래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국내 사업체의 보육 지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다 최근의 사업체패널 자료가 구축되는 경우 직장 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최신의 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2012)"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2013) <http://www.escac.or.kr/>

김혜원 외(2008). 『WPS 2005 한국의 사업체와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 11. PF3.2: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고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 정의에 기초하여 0~2세 영아가 이용하는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에 시설 보육 서비스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산정하였다. 시설 보육 서비스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포함시켰다 (보육사업안내, 2012).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집으로 파견되어 자녀를 돌보아 주는 서비스로서 여성가족부가 2010년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가 포함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12개월 아동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산정함에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고에서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만을 포함하였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보육·교육 서비스에는 시설 보육 서비스와 유치원 교육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과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은 2013년 현재 전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적인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전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나. 주요 결과

2011년 현재 0~2세 영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54.2%로 나타났다. 2009년도 41.6%와 비교해 볼 때 10% 포인트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0~2세 영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의 확대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

된다. 3~5세 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2011년 현재 82%로서 2009년도 이래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3.25〉 Chart PF3.2A: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영유아별(2009~2011년)

(단위: %)

연도	만 0~2세 (영아)	만 3~5세 (유아)
2009	41.6	82.0
2010	50.5	80.7
2011	54.2	82.0

주: 1) 아동의 연령은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률은 매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수집되고, 유치원 이용률은 매해 4월 말을 기준으로 수집된다. 이러한 시점을 차이로 인하여 실제 보육·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은 보고된 아동의 연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만 0~2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3~12개월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2010년 124명, 2011년 1,204명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9~2011), 여성가족부 (2012),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2009~2011),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2009~2011).

〈표 2.3.26〉 Table PF3.2A: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각세별(2009~2011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09	25.3	42.8	54.4	73.4	87.2	85.3
2010	27.9	51.7	71.2	71.9	80.8	90.5
2011	32.7	53.1	77.0	87.0	76.8	82.7

주: 1) 아동의 연령은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률은 매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수집되고, 유치원 이용률은 매해 4월 말을 기준으로 수집된다. 이러한 시점을 차이로 인하여 실제 보육·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은 보고된 아동의 연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만 0~2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3~12개월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2010년 124명, 2011년 1,204명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9~2011), 여성가족부 (2012),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2009~2011),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2009~2011).

0~2세 영아의 경우 종일제를 기준으로 보육 시설에서 돌보아지고 있다. 3개월~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역시 종일제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0~2세 영아의 경우 종일제 기준 서비스 이용률은 앞서 보고한 서비스 이용률과 동일하다.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98.2%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시설에서 돌보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당 0~2세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7시

간 22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시간에는 학원까지 통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는바, 통원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2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0~2세 아동 1인당 주당 평균 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 0\sim 2\text{세 영아 1인당 주당 평균 보육 시설 이용 시간} \\ & = (7 \text{ 시간 } 22\text{분} - 22\text{분}) \times 5\text{일} \times 0.982 = 36.2 \text{ 시간} \end{aligned}$$

〈표 2.3.27〉 Chart PF3.2B: 0~2세 영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만0~2세	이용률 (2011)		주당 평균 보육시설 이용 시간 (2009)
	전체 이용률	종일제 기준 이용률	
	54.2%	54.2%	36.2시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1),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표 2.3.28〉 Chart PF3.2C: 0~2세 영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2001~200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9.4%	12.4%	15.9%	18.3%	22.0%	26.3%	30.6%	37.7%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01~2008)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에서 아동 연령은 아동이 속해 있는 “연령 반”을 의미하며 실제적인 아동의 연령은 아니다. 아동이 시설을 이용할 때 보고하는 연령은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연령인데 반해, 보육통계는 보육 시설 이용 아동 현황을 매해 12월 말에 수집하고 있으며, 유아교육통계에서는 매해 4월 말에 유치원 이용 아동 현황을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 현황을 조사할 때 아동의 생일이 지난 경우 아동의 연령은 그해 1월 1일에 보고한 연령 보다 한 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2011년도에 0~2세라고 보고한 아동의 경우 실제적으로 태어난 해는 2008~2011년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1~2011)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 (2009~201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내부자료 (2012)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2001~2011)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12. PF3.3: 비공식적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Family database는 비공식적 보육서비스를 아동의 가정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친인척, 친구, 이웃, 베이비시터 혹은 유모가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비공식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소득 및 생활 실태 조사 (EU-SILC)”에서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나 친인척 혹은 비친인척 누구이든지 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와 미국에서는 비공식 보육 서비스를 조부모, 친인척, 혹은 비친인척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로서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의의 차이로 인하여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기초로 조부모, 친인척, 친구, 이웃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로서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보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 이외에 조부모나 친인척, 탁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등 개인에 의한 보육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을 지불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비용 지불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현황을 보고하고자 한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친인척이 아닌 비혈연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현황만



을 발표하고 있다.

전형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 비중은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전체 아동 중에서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비중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 비중을 제외한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초등학생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은 방과 후에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아동 혹은 방과후에 학원 등 다니는 곳이 없는 아동으로 정의하였다. 6~8세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정의하고, 9~12세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 나. 주요 결과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은 0~2 유아 27.7%, 3~5세 유아 23.6%, 6~12세 초등학교 저학년 14.8%로 나타났다.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은 단독으로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이 있으며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기관 서비스와 병행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 비중과 시설 서비스와 병행으로 이용하는 아동 비중을 모두 보고하였다.

〈표 2.3.29〉 Chart PF3.3A: 아동 연령별 주 중 낮 동안 비공식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 2009

	만 0~2세	만 3~5세	만 6~12세	전체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	27.7%	23.6%	14.8%	19.7%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	17.1%	0.8%	1.3%	4.9%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 이용 아동	10.6%	22.8%	13.6%	14.8%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중 비혈연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0-2세 45.9시간, 3-5세 23.2시간, 초등학교 저학년(6~8세) 30.8시간, 초등학교 고학년(9~12세) 29.6세로 나타났다.

<표 2.3.30> Chart PF3.3B: 아동 연령별 주 중 낮 동안 비공식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 2009

연령	만 0~2세	만 3~5세	만 6~8세	만 9~12세	전체
주 중 낮 동안 평균 이용 시간 <sup>1)</sup>	45.9 시간	23.2 시간	30.8 시간	29.6 시간	35.1 시간

주: 1) 비혈연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임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전형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 비중은 0~2세 영아 55.1%, 3~5세 유아 26.6%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전형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방과후에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아동으로 정의하는 경우 6~8세 아동(초등학교 저학년) 6.0%, 9~12세 아동(초등학교 고학년) 13.4%로 나타났다. 방과후에 학원 등 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으로 정의하는 경우 6~8세 아동(초등학교 저학년) 9.7%, 9~12세 아동(초등학교 고학년) 10.9%로 나타났다.

<표 2.3.31> Chart PF3.3C: 아동 연령별 주 중 낮시간 동안 전형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중, 2009

만0~2세	만3~5세	만 6~8세 <sup>1)</sup>	만 9~12세 <sup>1)</sup>
55.1%	26.6%	6.0% <sup>2)</sup> 9.7% <sup>3)</sup>	13.4% <sup>2)</sup> 10.9% <sup>3)</sup>

주: 1) 6~8세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 9~12세 아동은 초등학교고학년 학생으로 정의함  
 2) 방과후에 돌보는 사람없이 혼자 지내는 아동  
 3) 방과후에 다니는 곳 없는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우리나라에서 친인척 등이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지불하고 있다면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별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비혈연인에 의한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는데, 조부모, 친인척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주체별 이용 시간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0~5세 미취학자녀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자료가 구축되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연령별이 아닌 학년별로 자료가 마련되고 있다. 아동 연령 정의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기 위하여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13. PF3.4: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에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보육·교육 시설에 다니는 2세 아동이 지불하는 보육료이다. 둘째, 평균 임금의 167%를 벌고 있는 종일제 맞벌이 부부가 지불하는 순 보육료, 셋째, 평균 임금의 67%를 벌고 있는 종일제 한부모가 지불하는 순 보육료이다. 동 지표에 대한 자료는 OECD Benefit and Wages 을 기초로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 자료도 이에 기반하여 제공되고 있다.

현재 동 지표들에 대해서 2004년도 현황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이후 보육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3년부터 전체 0~5세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OECD Family database에 나와 있는 한국 자료 현황은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 14. PF4.1: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체계

#### 가. 정의 및 방법론

국내에서 0~5세 학령전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 체계는 보육 시설 서비스와 유치원에서의 유아 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보육 시설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규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에 대한 관리 및 규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3~5세 유아의 경우 보육 시설 서비스 혹은 유치원 교육을 제공 받고 있다.

시설 보육 서비스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보육사업안내, 2012).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고 있어 2011년 12월 현재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79%가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1).

유치원은 운영 주체별로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된다. 2011년 현재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 중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77.7%로서 역시 보육 시설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이 높다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 2012)

2012년 3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만5세 누리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되어 제공되고 있다.

〈표 2.3.32〉 Table PF4.1A: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체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 보육 시설 ----->							
			<----- 유치원 ----->				
						초등학교 의무교육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1.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 (2011)

## 15. PF4.2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

### 가. 정의 및 방법론

우리나라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관리 및 규제함에 있어 보건, 급식, 위생, 안전, 교사 대 아동 수 비중, 반별 아동 수, 교사의 자격 및 교육 수준, 학부모 참여 정도, 보육 시설의 평가인증제도 등에서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육 시설에서의 교사 대 아동 수 비중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의 비중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육 시설 현장에서 교사 대 아동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보육시설조사 보고서에서는 시설 아동 정원 당 평균 보육교사 수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유치원에서의 교사 대 아동 비중에 대해서는 1개 학급 당 한명의 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 보조 인력 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유치원에서의 학급 당 아동 대 교사 수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전체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는 아동 수를 전체 유치원 교사수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였다.

### 나. 주요 결과

〈표 2.3.33〉 보육 시설 아동 정원에 따른 평균 보육 교사 수, 2009

보육 시설의 아동 정원 수	시설 당 평균 보육 교사 수
아동 20명 이하	교사 2.4 명
아동 21~39명	교사 3.6 명
아동 40~79명	교사 5.2 명
아동 80명 이상	교사 7.2 명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년 현재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 수는 564,834명이며 전체 유치원 교사 수는 38,662명이다. 따라서 전체 유치원 취원 아동 수를 전체 유치원 교사수로 나누면 14.6으로서 유치원 교사 1명당 14.6명의 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4> Chart PF4.2B: 유치원에서 아동 대 교사 비중, 2012

유치원에서 교사 1명 대 아동 수
14.6 명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 2012

<표 2.3.35> Table PF4.2A: 보육 시설 교사 자격 및 관련 규정

자격 기준	보육 시설 교사
최소한의 교육 수준	2년제 대학 졸업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 관련 교육
보육하는 아동 연령	만 0~5세
보육하는 장소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보수 교육	매 2년 마다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교사 1명 당 아동 수	3명(만0세), 5명(만1세), 7명(만2세), 15명(만3세) * 공식적인 규정 사항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2012

<표 2.3.36> Table PF4.2B: 유치원 교사 자격 및 관련 규정

자격 기준	유치원 교사
최소한의 교육 수준	4년제 대학 졸업
교육하는 아동 연령	만 3~5세
교육하는 장소	유치원
보수교육	지방교육청이 보수교육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음
교사 1명당 아동 수 (남자 교사 비중)	14.6 (1.72%) * 2012년 현황 자료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육통계서비스(2012) 유아교육통계

## 다. 비교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OECD 국가에서는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의 질에 대한 지표로서 보육 교사 대 아동 수 비중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각 보육 시설 및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 1인당 몇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 구축이 요청된다.

###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1)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2012)  
 교육통계서비스(2012), 유아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2012)

## 16. PF4.3: 방과후 보육 서비스

### 가. 정의 및 방법론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 서비스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및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방과후 돌봄 교실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아동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5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지역아동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6~11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이 있다. 한 아동이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의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를 더하여 국내 방과후 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 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아동 보육 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방과후 보육 서비스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인 방과후 보육 서비스만 고려하였으므로 민간이 운영하는 학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 나. 주요 결과

〈표 2.3.37〉 Chart PF 4.3A: 3~11세 아동의 방과후 보육 서비스 이용률, 2011~2012

연령	방과후 보육서비스 등록 (명)	인구 (명)	이용률 (%)
만3~5세	385,208	1,394,242	27.6
만6~11세	260,085	2,922,734	8.9

자료: 보건복지부(2012), 여성가족부(2012),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표 2.3.38〉 Table PF4.3. A: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연도	아동연령	이용률	방과후 보육 서비스 유형	아동 대 교사 비중
2011~2012	만3~5세	27.6	방과후 보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함
	만6~11세	8.9		

자료: 보건복지부(2012), 여성가족부(2012),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 다.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를 프로그램에 따라 연령별 혹은 연령 그룹별로 보고하거나 연령 대신 학년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과후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를 아동 연령별로 파악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 연령별 이용 현황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후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중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방과후 보육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방과후 돌봄 교실의 프로그램 별 현황과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3.39>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유치원 방과후 과정

아동 연령	이용 아동 수	서비스 제공 시간	공휴일 운영 여부	아동 대 교사 비중
만3세	72,866명	방과후	시설에 따라 토요일 혹은 수요일이 있는 경우 휴일에도 운영함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함
만4세	137,763명			
만5세	170,001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표 2.3.40>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지역아동센터

아동 연령	이용 아동 수	서비스 제공 시간	공휴일 운영 여부	아동 대 교사 비중
만3~5세	4,578명	수업전 혹은 방과후	시설에 따라 토요일 혹은 수요일이 있는 경우 휴일에도 운영함	시설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함 <sup>1)</sup>
만6~8세	37,407명			
만9~11세	42,324명			

주: 1) 아동 50명 이상 시설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3명, 영양사 1명), 아동 30~49명 시설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아동 10~29명 시설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아동 0~9명 시설 (시설장 1명)

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

<표 2.3.41>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아동 연령	이용 아동 수	서비스 제공 시간	공휴일 운영 여부	아동 대 교사 비중
만6세	4,020명	방과후	시설에 따라 토요일 혹은 휴일에도 운영함	아동 20명 대 교사 1명
만7세	10,886명			

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



〈표 2.3.42〉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 연령	이용 아동 수	서비스 제공 시간	공휴일 운영 여부	아동 대 교사 비중
만6~11세	6,200명	방과후	토요일에도 운영함	학급당 아동 20명

자료: 여성가족부(2012), 내부자료

〈표 2.3.43〉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주요 특징: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

아동 연령	이용 아동 수	서비스 제공 시간	공휴일 운영 여부	아동 대 교사 비중
만6~11세	159,248 명	방과후	시설에 따라 토요일 혹은 수요가 있는 경우 휴일에도 운영함	학급당 아동 20명 이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내부자료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

여성가족부(2012),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 제4절 아동 성과

### 1. CO1.1: 영아사망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Health data에서는 영아사망률을 특정 년도에 출생한 총 출생아수 1000명 당 1세 미만 영아의 사망자수로 정의한다. OECD Health data에서는 한국의 영아사망률에 대해 1970-1991년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간한 년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동태 신고에 기반한)를 이용하고 1993년부터 2008년까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아사망조사보고서를 이용하고 있다. 영아사망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자료원(의료 보험 급여 자료, 의료 기관에서의 조사 자료, 동태 신고 자료)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중복 조정 후에 하나로 통합되었다. 총 영아사망자수를 동태 신고에 기반하여 추정된 총 출생아수로 나눈다.

통계청의 영아모성사망조사(IMMS) 자료는 특정 년도에 출생한 총 출생아수 1000명 당 발생한 1세 미만 영아의 사망자수로 OECD와 같은 정의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건강보험, 통계청, 병원이나 보건소로부터 보고된 자료와 같은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영아사망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망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한 영아모성사망조사(Infant Maternal Mortality Survey)에 기반하며, 이 자료는 OECD에 제공된 자료와 같다.

신생아사망은 28일 미만의 아동 사망으로 정의되며, 신생아후기사망은 28일부터 11개월까지 발생한 영아사망으로, OECD 정의와 동일하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료는 영아사망에 대해 위에서 이용된 것과 같은 정의를 사용한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료는 2008년까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2008년 이후 병원에서의 보고서와 같은 다른 정보는 영아사망률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었다.

## 나. 주요 결과

〈표 2.4.1〉 CO1.1: 영아사망, 1970-2010

년도	OECD <sup>1)</sup>	통계청 영아모성사망조사 <sup>2)</sup>			통계청 사망원인 <sup>3)</sup>
		신생아	신생아후기	영아사망	영아사망률
1970	45				
1981	17				
1983					4.1
1984	16				4.1
1985	13				3.8
1986					3.6
1987	13				3.5
1988					3.3
1989	12				3.2
1990					3.0
1991	10				2.9
1992					3.1
1993	9.9	6.6	3.3	9.9	3.1
1994					3.1
1995					2.8
1996	7.7	4.1	3.6	7.7	2.9
1997					2.5
1998					2.3
1999	6.2	3.8	2.4	6.2	4.6
2000					4.8
2001					5.3
2002	5.3	3.3	2.0	5.3	5.1
2003					5.4
2004					4.8
2005	4.7	2.8	1.9	4.7	4.2
2006	4.1	2.5	1.6	4.1	4.1
2007	3.6	2.1	1.5	3.6	3.8
2008	3.5	2	1.5	3.5	3.5
2009					3.3
2010					3.5

주: 자료 출처는 1) OECD Health data, 2) KOSIS: 영아모성사망조사 파일, 3) KOSIS: 사망원인 파일임.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통계청의 영아모성사망조사 자료는 건강보험에 보고되지 않은 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전체 년도의 자료는 없지만 가장 신뢰할만하고 대표성 있는 자료로 보

인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는 사망진단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출생 초기에는 높은 사망률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보고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자녀의 죽음도 보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관습 때문에 1998년 이전에 보고된 영아사망률은 인위적으로 낮았으며 1999년 이후로 이런 관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해에 영아사망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는 2006년 이후로 통계청의 영아모성사망조사 자료와 매우 비슷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치가 낮게 편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OECD 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료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및 관련자료

OECD, Health data

통계청, 영아모성사망조사.

통계청, 사망원인조사.

## 2. CO1.2: 기대수명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Health data에서는 기대수명을 연령별 사망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으로 정의한다. OECD 통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1960년의 기대수명은 1996년에 간행된 한국의 경제와 사회변화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으며 이는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의 기대수명을 평균한 것이다. 1970년 이후 자료는 2010년에 간행된 한국의 생명표라는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며 한국의 생명표는 Chiang의 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한국 통계청 자료는 OECD health data와 같은 정의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사망동태 신고와 주민등록인구에 기초로 하고 있다. 연령별 사망자 수( $n_{dx}$ )를 이용하여 사

망 확률( ${}_nq_x$ )을 계산하고 기대수명을 계산하는 Greville 방법론을 이용한다. 이는 연령 별 사망률( ${}_nm_x$ )을 구하고 사망 확률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인구학적 방법론과 약간 차이가 있다.

건강기대수명은 출생 시 한 사람이 건강한 상태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기간으로 정의된다. 건강기대수명은 인구를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범주로 나누고 Sullivan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대수명을 계산한다(WHO). 이는 World Health Statistics 2005년부터 2011년 자료에서 가져 왔다.

강은정 외(2008)는 건강보정 기대여명(HALE)을 출생 시의 사람이 건강한 상태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년수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정 기대여명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계산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이다.

#### 나. 주요 결과

다른 나라와 같이 한국은 지난 50년간 극적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기대수명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OECD 자료의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보면 1960년에 63.5세였지만 2009년에 80세로 증가하였다. 기대수명 통계치에서는 OECD와 한국 통계청 자료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기대수명은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이 더 발전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들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반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비교적 낮다는 것이며, 그 결과 전체 인구의 기대 수명이 중간 수준이다.

〈표 2.4.2〉 CO1.2: 기대수명, 1960-2010

년도	OECD			한국 통계청			건강기대수명(WHO)			건강기대수명(강은정 외)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960	53.7	51.1	52.4									
1970	65.6	58.7	62.1	65.6	58.7	61.9						
1971	66.1	59.0	62.5	66.1	59.0	62.3						
1972	66.6	59.3	63.0	66.6	59.3	62.7						
1973	67.0	59.6	63.3	67.0	59.6	63.1						
1974	67.5	59.9	63.7	67.5	59.9	63.5						
1975	67.9	60.2	64.0	67.9	60.2	63.8						
1976	68.3	60.5	64.4	68.3	60.5	64.2						
1977	68.7	60.8	64.8	68.7	60.7	64.5						
1978	69.1	61.0	65.0	69.1	61.0	64.8						
1979	69.5	61.3	65.4	69.5	61.3	65.2						
1980	70.0	61.8	65.9	70.0	61.8	65.7						
1981	70.5	62.3	66.4	70.5	62.3	66.2						
1982	71.0	62.8	66.9	71.0	62.8	66.7						
1983	71.5	63.2	67.3	71.5	63.2	67.1						
1984	72.2	63.8	68.0	72.2	63.8	67.8						
1985	72.8	64.5	68.7	72.8	64.4	68.4						
1986	73.4	65.1	69.3	73.4	65.1	69.1						
1987	74.0	65.8	69.9	74.0	65.8	69.8						
1988	74.6	66.3	70.5	74.6	66.3	70.3						
1989	75.1	66.8	71.0	75.1	66.8	70.8						
1990	75.5	67.3	71.4	75.5	67.3	71.3						
1991	75.9	67.7	71.8	75.9	67.7	71.7						
1992	76.4	68.2	72.3	76.4	68.2	72.2						
1993	76.8	68.8	72.8	76.8	68.8	72.8						
1994	77.1	69.2	73.2	77.1	69.2	73.2						
1995	77.4	69.6	73.5	77.4	69.6	73.5						
1996	77.8	70.1	74.0	77.8	70.1	74.0						
1997	78.1	70.6	74.3	78.1	70.6	74.4						
1998	78.5	71.1	74.8	78.5	71.1	74.8						
1999	79.2	71.7	75.5	79.2	71.7	75.6						
2000	79.6	72.3	76.0	79.6	72.3	76.0						
2001	80.0	72.8	76.4	80.0	72.8	76.5						
2002	80.5	73.4	77.0	80.5	73.4	77.0	70.8	64.8	67.8			
2003	80.8	73.9	77.3	80.8	73.9	77.4						
2004	81.4	74.5	78.0	81.4	74.5	78.0						
2005	81.9	75.1	78.5	81.9	75.1	78.6				69.6	67.5	68.6
2006	82.4	75.7	79.0	82.4	75.7	79.2						
2007	82.7	76.1	79.4	82.7	76.1	79.6	74	68	71			
2008	83.3	76.5	79.9	83.3	76.5	80.1						
2009	83.8	76.8	80.3	83.8	77.0	80.5						
2010				84.1	77.2	80.8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대체로 기대수명을 계산할 때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동태 신고 자료로 조정하지만 한국통계청 자료는 정지인구(생명표에서  $nL_x$  칼럼)를 인구총조사 자료가 아닌 주민등록 자료에서 가져온다.

Chart CO1.2.C와 Chart CO1.2.D는 건강보정 기대수명(HALE)과 건강 기대수명(HLY)을 각각 보여준다. WHOSIS 자료(Global Health Observatory, GHO로 통합)는 2002년 건강기대수명(HALE)만을 제공한다. World Health Statistics 2011에서는 건강기대수명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World Health Statistics 2010에서는 2007년 건강기대수명(HALE)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Chart CO1.2.C에 제시되어 있는 년도에 의심이 간다.

### 출처 및 관련자료

강은정·조영태·김나연·신호성 (2008).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CO1.3: 저체중 출생

### 가. 정의 및 방법론

저체중 출생은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로 정의된다. 아래 표의 자료는 한국통계청으로부터 왔으며 한국통계청에서는 동태 신고(출생신고) 자료를 이용한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의 저체중 신생아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 산모의 연령 증가와 의료 기술로 조산을 권장받은 산모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 2008년 OECD 평균은 6% 이상인 반면 한국은 4.9%였다.

〈표 2.4.3〉 CO1.3: 저체중 출생, 1993-2010

년도	총 출생	저체중 출생	비율
1993	705,329	18,532	2.6
1994	718,294	20,047	2.8
1995	713,012	21,604	3.0
1996	689,590	21,355	3.1
1997	667,665	21,744	3.3
1998	634,728	21,978	3.5
1999	612,849	21,938	3.6
2000	632,934	24,083	3.8
2001	553,324	21,934	4.0
2002	488,417	19,472	4.0
2003	486,194	19,806	4.1
2004	469,391	19,543	4.2
2005	431,959	18,519	4.3
2006	445,280	19,507	4.4
2007	490,850	23,007	4.7
2008	463,688	22,725	4.9
2009	443,326	21,954	5.0
2010	468,642	23,537	5.0

자료: 통계청. 체중 정보가 미상인 경우는 총 출생과 저체중 출생에서 제외하였음.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체중 정보가 없는 경우는 전체 출생아수나 저체중 출생아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는 전체 출생의 1% 미만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통계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자리 선호가 저체중 출생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즉, 자녀의 체중이 2,999g인 경우 부모가 2,500g으로 신고해 저체중 신생아를 과소추정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출처 및 참고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 4. CO1.4: 아동기 예방접종

##### 가. 정의 및 방법론

예방접종률은 권고되는 기간에 관련된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박수경(2009)은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대면 면접과 전화조사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여기서 비교가능성을 위해 19-35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회상에 의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카드가 있는 아동만이 연구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방접종 카드가 있는 경우는 95.6%였다.

이석구 외(2011) 또한 예방접종률을 추정하기 위해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준 일자 2010년 12월 31일이었다. 이들 역시 표집틀에 예방접종 카드가 있는 아동만을 포함시켰으며 거주 지역과 성별에 따라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백일해와 홍역의 경우는 십만명 당 보고된 수를 측정하며 이는 전체 인구 기준이다. 발생 정도는 보고된 경우의 수를 201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누고 100,000을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 별로 대상 인구에 있어서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OECD 통계는 예방접종률의 경우 2세 아동을, 발생률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박수경(2009)의 연구는 19~35개월의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석구 외(2011)는 백일해 접종은 15~18개월의 아동, 홍역 접종은 12~15개월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은경·유효순(2011) 연구에서의 발생률은 OECD의 기준과 동일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에서는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발생률도 OECD 평균보다 낮다. 예방접종률이 낮은 것은 기준 인구 집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

역 예방접종률은 백일해 예방접종률보다 높으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다.

〈표 2.4.4〉 CO1.4: 아동 예방접종, 2008, 2010

년도	백일해			홍역		
	예방접종		발생률	예방접종		발생률
	면접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2008 <sup>1)</sup>	60.4	79.5		94.5	96.9	
2010		93.5 <sup>2)</sup>	0.05 <sup>4)</sup>		99.2 <sup>3)</sup>	0.23 <sup>4)</sup>

- 주: 1) 박수경(2009)의 자료임. 기준 인구 집단은 19~35개월 아동임.  
 2) 이석구 외(2011)의 자료임. 기준 인구 집단은 15~18개월 아동임.  
 3) 이석구 외(2011)의 자료임. 기준 인구 집단은 12~15개월 아동임.  
 4) 이은경·유효순(2011)의 자료임. 기준 인구 집단은 전체 인구임.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조사 방법 별로, 심지어 같은 조사에서도 예방접종률 추정치에 불일치하는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백일해 접종의 경우 같은 전국 조사에서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방법 간에 19%p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2008년과 2010년 백일해 예방접종률 추정치 간에 14%p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이유는 기준 인구 집단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2008년 조사가 19~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된 반면 2010년 조사에서는 15~1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준 인구집단이 OECD 기준 인구집단과 다르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출처 및 관련자료**  
 이석구 외(2011).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학교.  
 이은경·유효순(2011). 『2010년도 감염병감시체계 운영 결과』. 질병관리본부.  
 박수경(2009).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및 체계개발』. 질병관리본부.

## 5. CO1.5: 모유수유율

### 가. 정의 및 방법론

모유수유율에 대한 정의는 OECD의 정의인 “한 번이라도 모유수유를 한 적이 있는 경우이며, 완전모유수유는 특정 기간 동안 모유만 먹은 아동”을 따른다. Table CO1.5는 출생 후 기간 별로 모유수유율과 완전모유수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수집된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Chart CO1.5.B(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한 아동의 비율)는 Table CO1.5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나 Chart CO1.5.A(모유수유를 한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에서 모유수유한 적이 있는지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Table CO1.5는 출생 후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Chart CO1.5.A의 통계는 Table CO1.5로부터 바로 얻을 수 없지만, 하한값이 90.3%이며 상한값이 100%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으므로 Table CO1.5.A의 경우 90.3%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한값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 나. 주요 결과

모유수유를 한 적이 있는 한국 아동의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아 보이며, 2009년에 90% 이상의 아동이 모유수유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모성 휴가와 같은 모성 급여가 매우 잘 발달된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다. 한국의 완전모유수유율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그리 높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인 일본이나 미국, 영국보다는 높다. 이는 경제 발전과 모유수유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4.5〉 CO1.5: 모유수유율, 2009

생후	완전모유수유	모유수유
1주	73.0	90.3
2주	72.0	89.1
3주	70.8	88.6
4주	70.4	88.1
1개월	65.6	84.6
2개월	61.2	77.8
3개월	57.0	72.1
4개월	49.4	64.6
5개월	36.2	61.4
6개월	13.6	53.8
7개월	6.4	47.9
8개월	4.1	44.2
9개월	3.4	40.9
10개월	2.5	38.8
11개월	1.9	34.9
12개월	0.8	25.8
13개월	0.5	18.4
14개월	0.2	13.4

자료: 김승권 외(2009). 통계치는 특정 시기에서의 비율을 나타냄.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15~44세 배우자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동에 대한 모유수유를 질문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없는 유아는 조사에 제외되었을 수 있으므로 모유수유율이 과대측정되었을 수 있다.

##### 출처 및 관련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6.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의 당뇨병과 천식 유병률

0~14세 아동의 제1형 당뇨병에 관한 통계는 찾을 수 없었다. 천식에 관한 통계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조사로부터 통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OECD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전국 대표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천식 유병률에 관한 두 가지 최근 통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정의 및 방법론

천식에 관해서는 OECD에서 2002년에 6~7세(ChartCO1.6.B)나 13~14세(Chart CO1.6.C) 중 천식을 앓았던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보고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는 12개월 동안의 증상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는 안강모 외(2011)의 조사에서 온 것으로, 12개월 증상 유병률을 위해 지난 1년간의 천식 증상에 대해 질문하였다.

### 나.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안강모 외(2011)의 조사는 학교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 3,088명, 중학교 1학년생 4,047명 총 8,0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은 대체로 6~7세이며 중학교 1학년생은 12~13세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생은 OECD 기준인 13~14세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표 2.4.6〉 CO1.6: 12개월 천식 증상 유병률, 2010

	초등학교 1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유병률	10.3	8.3

자료: 안강모 외(2011).

#### 출처 및 관련자료

안강모·김지현·권호장·채유미·함명일·이기재·박용민·이소연·한만용·김우경(2011). "2010년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천식, 알레르기 비결막염, 아토피피부염 증상 유병률 조사 :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한 전국 서베이", **대한의사협회지**, 54(7), pp.769-778

## 7. CO1.7: 15세의 성별 과체중과 비만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보고서에서 과체중은 체질량지수(BMI)<sup>6)</sup> 25 이상으로 정의된다. 한국에서는 비만과 과체중 정의를 OECD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여기 제시된 통계치는 과체중에 대해 다른 측정을 이용한다. 한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학생표본건강실태조사에서는 1)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수 이상이거나, 2)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경우 “비만인” 학생(과체중이 아닌)으로 분류하며,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85~95백분위수 사이인 경우를 “과체중”으로 정의한다. 한국에서 이용한 “비만” 분류는 대체로 OECD의 과체중 정의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한국에서의 비만을 의미하는 통계를 OECD의 과체중을 의미하는 통계로 제시하며 지금부터는 과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로 인해 과체중이 과다추정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는 체질량지수(BMI) 25 정도이므로(대략 체질량지수 27) 실제로는 이 정의는 OECD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2단계 층화집락추출법(1단계는 학교이며 2단계는 학급)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온라인 조사이다. 표적 인구집단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며 2005년에 표본 크기는 65,000명 정도였으며 그 이후로는 80,000명 정도이다. 응답률은 2005년 89.7%에서 2010년 97.7%까지 증가해 왔다. 이 조사는 자발적인 학생들만이 조사에 응답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라인 조사가 아니며,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다양한 건강 행동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왔다.

한국 학교건강검진조사로부터 온 학생표본건강실태조사 자료 역시 층화집락무선표집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횡단면 연구이다. 이 연구는 기준 인구집단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며, 학교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표본 크기는 매년 대략 190,000명이다. 그러나 신체검사에 의한 건강검진(응답된 건강이 아닌 측정된 건강)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력이상, 치아우식증과 같은 장애, 비만 유병률, 식생활이나 운동 횟수와 같은 건강 행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 관련 변수들이 관측되어 왔다.

6) 체중(kg)을 키의 제곱(m<sup>2</sup>)으로 나눈(kg/m<sup>2</sup>) 값

Chart CO1.7.D(15세 과체중과 비만율)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비만율의 경우에는 OECD 기준에 맞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 나. 주요 결과

본인이 보고한 과체중 비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지만 측정된 과체중 비율은 증가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런 추세는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2.4.7〉 CO1.7 15세의 과체중 비율, 2005-2010

년도	자가 보고 <sup>1)</sup>			측정 <sup>2)</su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5	10.0	13.8	5.5			
2006	9.3	13.0	5.1	5.8	6.5	5.2
2007	8.6	12.4	4.3	11.8	14.9	8.7
2008	9.1	12.1	5.8	11.4	14.7	8.0
2009	8.8	12.1	4.9	14.6	17.9	10.9
2010	8.9	12.8	4.4	15.8	19.2	11.6

주: 1) 자가 보고 키와 몸무게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 이용. 2) 측정된 키와 몸무게는 학교건강검진조사 중 학생표본건강 실태조사 자료 이용. 이 표에 제시된 통계치는 이 통계치를 계산한 기관에 의해 “비만인” 것으로 간주됨. 자세한 내용은 정의 및 방법론 참고.

학생표본건강실태조사와 학교건강검진조사 자료는 OECD에서 사용하는 비만 정의인 체질량지수(BMI) 수치 30 이상의 통계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 제시된 통계치는 체질량지수(BMI)가 1)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수 이상이거나, 2)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학생이다. 따라서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에 속하지만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 아닌 학생들이 몇몇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통계치가 과다추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 섹션에 제시된 통계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치이며, 이들은 대체로 15세이지만 조사가 9월~11월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학생들이 16세일 수도 있다.

**출처 및 관련자료**

질병관리본부(2010). 『제6차(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학생 표본 건강실태 조사 및 분석』. CR 2010-38-2.

**8. CO1.8: 15세 중 성별 정기적 흡연자****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보고서에서는 정기적 흡연자를 “지난 1주일 동안 담배 한 개 이상을 피운 15세”로 정의한다. 한국 자료에서는 15세의 흡연에 대해 조사한 두 개의 전국 조사가 있으나, 이 두 조사에서는 매일 흡연한 경우를 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여기서는 두 조사 중 더 대표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아래 표에는 두 가지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여기 제시된 통계치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 선택지는 “매일”부터 “최근 30일 동안 없다”까지의 범위이다. 이 조사는 현재 흡연자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 매일 흡연자를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흡연자에 대한 OECD 통계보다 더 보수적인 것이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1.7 영역에 제시되어 있다.

〈표 2.4.8〉 CO1.8: 15세 흡연자 비율, 2005-2010

년도	월간 흡연 <sup>1)</sup>			매일 흡연 <sup>2)</su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5	16.8	20.5	12.5	6.6	8.8	4.0
2006	16.6	19.9	12.8	7.1	8.7	5.2
2007	16.3	22.0	10.0	7.5	11.2	3.4
2008	16.6	22.0	10.4	9.1	12.4	5.3
2009	16.0	22.0	9.0	8.3	12.1	4.0
2010	14.8	19.8	9.1	7.2	10.0	4.0

주: 1) 조사 전 지난 30일 동안 하루 이상 담배를 피운 학생의 비율. 2) 조사 전 지난 30일 동안 매일 담배를 피운 학생의 비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OECD와 한국 자료 간 흡연자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이 섹션에 제시된 통계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치이며, 이들은 대체로 15세이지만 조사가 9월~11월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학생들이 16세일 수도 있다.

### 출처 및 관련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9. CO2.1: 소득불평등과 가구유형별 소득지위 추세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는 소득 불평등을 세금 및 이전 후의 가처분 소득의 분포 측면에서 측정하는데, 이는 현 통계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온 것이다. 여기서도 세 가지 소득불평등(지니계수, 5분위배율, P90/10 분위수배율)을 측정하기 위해 OECD와 같은 정의를 이용한다. CO2.1.A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구축한 김문길 외(2011)에서 가져온다.

CO2.1.B 자료는 이와 유사한 전국을 대표하는 자료를 찾지 못해 OECD(2008)의 보고서에서 바로 가져왔다.

### 나. 주요 결과

모든 불평등 지표를 보면 소득 분배 불평등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불평등 지표에서 한국이 EU 27개국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OECD 30개국에 비해서는 소득이 더 평등하게 분배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2.4.9> CO2.1.A: 불평등 지표, 1990-2010

년도	지니 계수				5분위배율				P90/10 분위수배율			
	도시 <sup>1)</sup>		전체 <sup>2)</sup>		도시 <sup>1)</sup>		전체 <sup>2)</sup>		도시 <sup>1)</sup>		전체 <sup>2)</sup>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990	0.24				3.4				3.0			
1991	0.24				3.3				2.8			
1992	0.23				3.2				2.8			
1993	0.23				3.5				3.0			
1994	0.23				3.3				2.9			
1995	0.23				3.3				2.9			
1996	0.24				3.4				3.0			
1997	0.24				3.4				3.0			
1998	0.26				3.8				3.3			
1999	0.27				4.0				3.4			
2000	0.25				3.6				3.4			
2001	0.26				3.8				3.6			
2002	0.26				3.8				3.7			
2003	0.25		0.28		3.7		4.4		3.3		3.7	
2004	0.26		0.28		3.9		4.6		3.5		4.0	
2005	0.26		0.29		4.0		4.8		3.4		4.1	
2006	0.26	0.26	0.29	0.30	3.9	4.0	4.8	5.2	3.4	3.5	4.0	4.4
2007	0.27	0.27	0.29	0.30	4.1	4.2	5.0	5.4	3.5	3.6	4.2	4.5
2008	0.27	0.27	0.29	0.31	4.0	4.1	5.0	5.5	3.6	3.6	4.2	4.6
2009	0.27	0.27	0.29	0.30	4.1	4.2	4.9	5.5	3.7	3.7	4.2	4.7
2010	0.26	0.27	0.28	0.30	4.0	4.1	4.8	5.4	3.5	3.6	4.1	4.7

주: 1) 도시근로자만이 포함됨. 2) 전체가구근로자가 포함됨.  
 자료: 김문길 외(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4.10> CO2.1.B: 가구유형별 상대소득, 2000년대 중반

	WASACH = 근로연령가구주, 유자녀 성인1인	WATACH = 근로연령가구주, 유자녀 성인2인이상
한국	0.76	0.92

자료: OECD(2008).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이 자료는 농어촌 가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전체 인구의 85.2%를 포함한다.

**출처 및 관련자료**

김문길·김태완·박신영·이병희·임병인·이서현(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2008).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10. CO2.2: 아동빈곤****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서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각 년도별 중위 소득 50% 미만의 균등화 가치분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애초에 가구의 소득원을 모아 공유하는 가구가 분석단위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각 가구원의 수로 변환한 후 인구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용된 아동빈곤 지표는 각 년도별 중위소득 50% 미만의 균등화 소득으로 생활하는 아동의 비율이다. 아동은 1-17세로 정의된다.

이봉주 외(2009)의 자료는 OECD와 동일한 정의를 이용하였으나 18세를 포함하였고 김문길 외(2011)의 자료는 OECD의 정의와 동일하지만 통계청 승인통계가 아니다.

여기서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와 자녀가 있는 커플 가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Chart CO2.2.C(가구 유형별 빈곤율), Chart CO2.2.D(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고용률과 아동빈곤율), Table CO2.2.A(아동 및 유자녀 가구 빈곤율)의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서구 국가와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이 있어서 한부모 범주에 자녀의 조부모와 함께 사는 한부모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 더 심각한 것은, 같은 가구로 살지 않는 커플 가족이 많다는 것이며, 이것이 커플 가족의 정의를 모호하게 만든다. 게다가, 한국은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고용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

**나. 주요 결과**

빈곤통계연보에서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농어촌 근로자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에도 OECD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통계연보에서의 아동빈곤은 OECD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2005년에는 더 높게, 2008년에는 더 낮게 측정되었다.

빈곤통계연보의 통계치를 이용한 전체 인구와 아동의 빈곤율은 다음과 같다. 이 통계치는 1인가구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2003년 이후로 12% 전후로 변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빈곤율은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보인다. 아동빈곤율은 2008년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표 2.4.11> CO2.2: 아동빈곤, 1990-2010

	OECD		이봉주외 <sup>1)</sup>	빈곤통계연보 <sup>2)</sup>							
	전체 인구	아동	아동	전체인구				아동			
				도시근로자가구		전체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전체가구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990				5.7				6.3			
1991				5.2				5.2			
1992				5.2				5.7			
1993				5.5				5.8			
1994				5.5				6.2			
1995				5.6				6.7			
1996				6.3				5.9			
1997				6.2				6.7			
1998				8.2				7			
1999				9.2				7.6			
2000				6.9				6.3			
2001				7.3				6.3			
2002				6.9				5.5			
2003				8.2		11.1		7		10	
2004				9.3		11.8		7.1		10.7	
2005		10.7		9.2		12.4		7.9		11.2	
2006	14.4			9.2	9.3	12.1	13.4	6.3	6.3	10	10
2007				9.1	9.6	12.6	14.1	6.5	6.5	10.6	10.6
2008	15	10.3	11.5	9.2	9.5	12.6	14.1	6.2	6.2	9.6	9.7
2009				9.7	10.2	12.2	14.1	6.3	6.3	8.8	8.8
2010				8.3	9	12	13.8	5.8	5.8	8.6	8.6

주: 1) 이봉주 외(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 김문길 외(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OEC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농촌 가구 경제 조사와 결합). 이봉주 외(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김문길 외(2011):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이봉주 외(2009)의 자료는 18세 아동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른 통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김문길 외(2011)의 자료는 농어촌 가구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전국을 대표하는 자료가 아닐 수 있다. 자료 수집을 담당한 곳에서는 이 자료가 85.2%를 커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출처 및 관련자료

김문길·김태완·박신영·이병희·임병인·이서현(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봉주 외(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11. CO3.1: 성별 교육수준과 정규교육 수학기간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보고서와 일치하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라 통계를 계산한다. 한국의 교육제도 구분은 아래와 같다.

국제표준교육 달성		한국에서의 교육연수
0	초등미만	0
1	초등	6
2	전기중등	9
3	후기중등	12
4	중등후 비고등	N.A.
5	단기 수준 고등	14
6	학사 학위 수준 또는 동등 학위	16
7	석사 학위 수준 또는 동등 학위	18
8	박사 학위 수준 또는 동등 학위	22
9	어디에도 분류되어 있지 않음	N.A.

OECD는 교육연수를 산정할 때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를 사용하여 아래 수준에서 다음 수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연수를 구한 후 이러한 연수를 그 수준을 통과한 인

구비율로 가중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따랐으며, 교육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 나. 주요 결과

교육수준에 관한 통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더 높은 교육수준의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 남성의 평균 교육기간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반면 한국 여성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지 않다. 이는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성 차별적 교육에 대한 기대로 인해 고령 여성 코호트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4.12〉 CO3.1 교육수준, 2010

성별	연령	중등 <sup>1)</sup>	고등 <sup>2)</sup>	평균 교육 연수 <sup>3)</sup>
남성	25-34	98	71	14.2
	35-44	95	54	13.8
	45-54	82	38	12.7
	55-64	60	22	11.0
	소계			13.1
여성	25-34	98	70	14.3
	35-44	95	44	13.3
	45-54	70	21	11.4
	55-64	38	10	9.0
	소계			12.3
전체				12.7

주: 1) 후기중등교육 이상에 도달한 인구 비율. 2) 3차 교육에 도달한 인구 비율. 3) 성공적으로 완료한 정규 교육과정 평균 교육 연수로 표기된 교육 수준.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총조사.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박사학위 또는 동등 수준의 완료 소요 연수는 전공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석사 학위 후에 대개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공학이나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4년이 소요되며 여기서는 4년을 평균으로 취하였는데 이것이 실제 박사학위나 그에 준하는 수준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연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출처 및 관련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총조사.

**12. CO3.2: 전공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가. 정의 및 방법론**

이 자료는 UNESCO와 OECD, EUROSTAT을 통해 교육 체계에 대한 자료를 매년 수집하는 OECD Education database에서 가져왔다.

**나. 주요 결과**

여성 졸업자들은 인문학과 예술 학문 분야에 많은 반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핵심 학과인 컴퓨터나 공학, 제조, 건설에서는 적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인문학과 예술에서의 여성 비율은 2004년 72.4%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로는 감소하여 2009년 66.3%였다. 컴퓨터에서의 여성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41.9%에서 20.1%로 감소한 것은 두드러진 변화이다. 반면, 공학, 제조, 건설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의 비율에 별로 차이가 없다.

〈표 2.4.13〉 CO3.2: 고등교육 학위에서 여성의 비율, 1998-2009

년도	인문학과 예술	컴퓨터	공학, 제조, 건설
1998	64.6	41.9	20.2
1999	67.6	45.6	22.8
2000	69.1	41.6	23.3
2001	69.3	36.9	22.5
2002	70.2	36.0	25.2
2003	70.9	39.2	23.6
2004	72.4	33.8	23.7
2005	71.5	30.9	24.6
2006	71.5	28.6	24.2
2007	69.8	24.2	23.0
2008	66.9	21.3	22.1
2009	66.3	20.1	22.5

자료: OECD Education database.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위의 표는 OECD Education database에서 바로 가져왔으므로 비교 시 고려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다.

### 출처 및 관련자료

OECD Education database.

## 13. CO3.3: 10세의 성별 문해 점수

### 가.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한국은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에 참여하지 않아 읽기 성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도 한국은 4학년 수준의 수학과 과학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10세의 성별 문해 점수(CO3.3)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전국 대표 표본으로 수집된 자료로 비교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학업 성취를 다르게 측정하여 척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

## 14. CO3.4: 15세의 성별 문해 점수

### 가. 정의 및 방법론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모든 자료를 가져왔으므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교육수준별 평균 점수는 PISA 보고서에서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므로 Chart3.4.C(부모의 교육수준별 평균 과학 문해 점수) 자료는 없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은 문해 점수에 있어서 OECD 국가들 중 최고는 아니지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성별 문해 점수에 있어서는 매우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남학생은 수학 시험에서 더 좋은 수행을 보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이 차이는 감소되어 온 반면 여학생은 읽기 시험에서 남학생보다 더 나았으며 지난 10년 동안 이 차이가 증가해 왔다. 흥미롭게도 여학생들은 2006년 이전에는 과학에서 남학생에 뒤처졌지만 그 이후로는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표 2.4.14〉 CO3.4 PISA 문해 점수, 2000, 2003, 2006, 2009

년도	수학			읽기			과학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2000	559	532	547	519	533	525	561	541	552
2003	552	528	542	525	547	534	546	527	538
2006	552	543	547	539	574	556	521	523	522
2009	548	544	546	523	558	539	537	539	538

자료: 2000년: Knowledge and Skills for Life: First Results from the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00, 2003년: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First Results from PISA 2003, 2006년: PISA 2006 Volume 2: Data, 2009년: PISA 2009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 출처 및 관련자료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 15. CO3.5: 교육이나 취업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

### 가.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OECD에서는 이 통계치를 교육이나 취업에 참여하지 않는(주당 1시간 이상) 15~19세 청소년의 비율로 정의한다. 한국은 이러한 정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계치를 측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들을 조사하는 방법론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 16. CO3.6: 이민 아동의 비율과 이들의 교육 성과

### 가.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이 섹션의 OECD 자료는 1)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 2)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 3)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로부터 온다. Table CO3.6.1(이민자 지위별 학생 비율)을 보면, 한국이 국제 성취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참여할 만한 이민자 자녀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비교가능한 성취 지표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 조사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 17. CO4.1: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비정부기구 회원

이 섹션은 OECD 자료가 완료되어 있다.

## 18.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

### 가. 정의 및 방법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년 실시) 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OECD에서 이용된 것과 같은 정의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투표율에서의 성별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여성 투표율을 남성투표율로 나누었다.

### 나. 주요 결과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나이든 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24세 이하와 60세 이상 여성은 특히 투표율이 낮다.

〈표 2.4.15〉 CO4.2: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생애 첫 투표 참여율

연령		전체	19-24세	25-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성	선거인수	1,919,490	208,253	1,097,843	306,048	307,346
	투표자수	929,523	84,465	423,657	192,992	228,409
	투표율	48.40	40.56	38.59	63.10	74.30
여성	선거인수	1,981,730	190,964	1,066,134	305,125	419,507
	투표자수	878,496	47,072	408,081	175,399	247,944
	투표율	44.30	24.65	38.28	57.50	59.10
전체	선거인수	3,901,220	399,217	2,163,977	611,173	726,853
	투표자수	1,808,019	131,537	831,738	368,391	476,353
	투표율	46.34	32.95	38.44	60.28	65.54
성차 <sup>1)</sup>		0.92	0.61	0.99	0.91	0.80
생애 첫 투표자 <sup>2)</sup>		0.86				

주: 남성 대비 여성 투표율. 2) 25~49세 대비 19~24세 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OECD의 이전 추정치는 의심스러운 정도로 과대추정되어 있는데, 왜그런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투표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은 19세 이상이므로 한국 자료를 투표권이 있는 연령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는 비교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출처 및 관련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19. CO4.3: 청소년의 약물 남용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는 “두 번” 이상 술을 마셔본 적 있는 15세 청소년의 비율을 제시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는 “한 번” 이상 술을 마셔본 적 있는 15세 청소년의 비율을 제시한다. 따

라서 여기서 제시된 수치가 OECD 통계치보다 더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1.7 영역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대마초를 거의 피우지 않기 때문에 대마초에 대한 전국 대표성 있는 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나. 주요 결과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15세 음주율은 꽤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의 음주율 정의가 OECD에 비해 더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4.16〉 한번 이상 술을 마셔본 적 있는 15세 비율, 2005-2010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68.6	68.1	65.6	64.9	62.3	60.3
남성	66.7	66.9	67.8	66.4	64.3	62.6
여성	70.7	69.5	63.2	63.2	60.0	57.8

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음주 행동 측정에 있어서 OECD와 한국 자료 간에 차이가 있다. 여기 제시된 수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은 15세이지만 일부는 16세가 포함되었다.

### 출처 및 관련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20. CO4.4: 십대 자살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 통계는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15~19세의 사망률에 대한 정의는 OECD 보고서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십대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변동이 큰 것으로 보이나, 증가하는 징후를 볼 수 있다. 이는 기간효과 때문이거나 표본 크기가 적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한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위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4.17〉 CO4.4: 10만명 당 15~19세 자살률, 2000-2010

년도	전체	남성	여성
2000	6.3	7.0	5.6
2001	5.3	5.8	4.9
2002	6.0	6.6	5.2
2003	8.2	9.9	6.3
2004	6.5	7.7	5.2
2005	7.6	7.8	7.4
2006	6.2	6.6	5.9
2007	7.9	8.3	7.4
2008	8.0	8.7	7.2
2009	10.7	11.5	9.8
2010	8.3	8.8	7.7

자료: KOSIS.

### 다. 비교가능성 및 자료 관련 이슈

위에 제시된 추정치는 살아남은 친척들이 자살에 대한 오명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보고하기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추산되었을 수 있다.





## 제3장 OECD Family database: 시계열 자료

제1절 핵심 지표에 대한 분석

제2절 OECD Family database의 LFS questionnaires





# 3

## OECD Family database:

### 시계열 자료 <<

#### 제1절 핵심 지표에 대한 분석

OECD Family database는 4개 대분류 영역에서 각 5개의 중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20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였다. “가족의 구조”에서 선정된 지표는 합계 출산율, 한부모 가족 비중, 평균 초산 연령, 혼외 출생 비중, 조이혼율이다.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에 대해서는 직업 없는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 비중, 모성 취업률, 한부모 취업률, 종일제 취업자 중위 소득의 성별 격차, 취업률의 성별 격차이다. “가족 및 아동 정책”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전체 임금이 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 출산전 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만0~2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만 3~5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가족에 대한 조세 혜택이 핵심 지표이다. “아동 성과”에 대해서는 영아 사망률, 기대수명, 아동빈곤율, 국제학업성취도평가점수, 청소년 출산율이 핵심 지표이다. 이러한 핵심 지표에 대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였으며 구축된 자료의 주요 특징과 현황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1. 가족의 구조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통계 보고서”를 기초로 1970~2011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유지한 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다. 2011년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비중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해 5년의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년도의 자료 제공이 가능하였다. 한부모 가족의 비중은 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혹은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한부모 가족의 비중은 1985년 8.9%에서 1996년 7.4%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10년 현재 9.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통계청의 “각 연도별 출생통계 보고서” 자료로부터 수집하였다. 1983년부터 2010년까지 각 연도별 자료 구축이 가능하였다. 한국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1983년 24.4세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30.1세를 보이고 있다.

혼외 출생 비중 역시 통계청의 “각 연도별 출생통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혼외 출생 비중은 198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증가 추이를 보여 2010년 현재 2.0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혼외 출생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조이혼율 자료 역시 통계청의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로부터 수집하였으며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로 정의된다. 조이혼율은 1970년 이래 미약하지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0.4건수를 보이던 조이혼율은 2003년에 3.4건까지 증가하였으며, 2010년 현재 2.3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1.1〉 OECD Family database 핵심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가족의 구조

	SF2.1 (Chart SF2.1.A)	SF1.1 (Table SF1.1.A)	SF2.3 (Chart SF2.3.A)	SF2.4 (Chart SF2.4.A)	SF3.1 (Chart SF3.1.E)
	합계출산율	한부모가족 비중	평균 초산 연령	혼외 출생 비중	조이혼율
1970	4.53				0.4
1971	4.54				0.3
1972	4.12				0.4
1973	4.07				0.4
1974	3.77				0.4
1975	3.43				0.5
1976	3.00				0.5
1977	2.99				0.6
1978	2.64				0.5
1979	2.9				0.5
1980	2.82				0.6
1981	2.57			1.123	0.6
1982	2.39			1.0612	0.7
1983	2.06		24.38	1.0444	0.7
1984	1.74		24.61	1.0171	0.9
1985	1.66	8.9	24.81	1.013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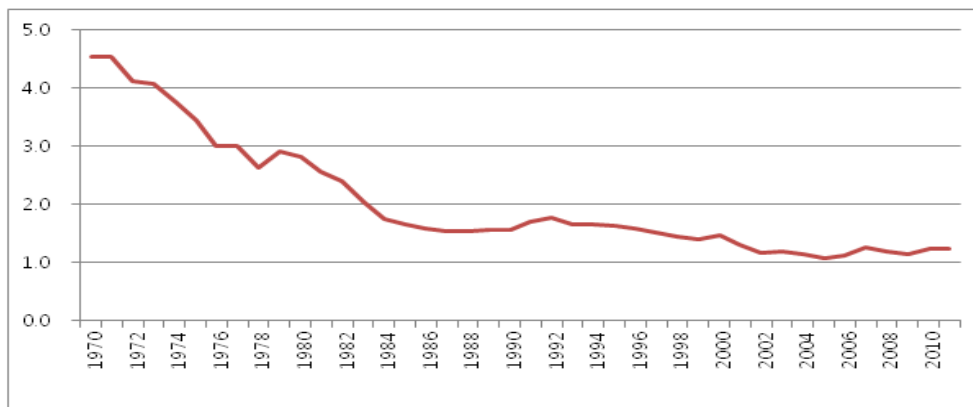
〈표 3.1.1〉 계속

	SF2.1 (Chart SF2.1.A)	SF1.1 (Table SF1.1.A)	SF2.3 (Chart SF2.3.A)	SF2.4 (Chart SF2.4.A)	SF3.1 (Chart SF3.1.E)
	합계출산율	한부모가족 비중	평균 초산 연령	혼외 출생 비중	조이혼율
1986	1.58		25.01	1.0309	0.9
1987	1.53		25.26	0.9392	1.0
1988	1.55		25.48	0.8294	1.0
1989	1.56		25.68	0.8071	1.0
1990	1.57	7.8	25.85	0.9467	1.1
1991	1.71		25.98	1.0234	1.1
1992	1.76		26.05	1.1365	1.2
1993	1.654		26.2	1.2292	1.3
1994	1.656		26.4	1.2857	1.4
1995	1.634	7.4	26.5	1.2235	1.5
1996	1.574		26.6	0.91	1.7
1997	1.52		26.9	0.6278	2.0
1998	1.448		27.1	0.6976	2.5
1999	1.41		27.4	0.7678	2.5
2000	1.467	7.9	27.7	0.8731	2.5
2001	1.297		28.0	0.9605	2.8
2002	1.166		28.3	1.0534	3.0
2003	1.18		28.6	1.2399	3.4
2004	1.154		28.8	1.2937	2.9
2005	1.076	8.6	29.1	1.4847	2.6
2006	1.123		29.3	1.5185	2.5
2007	1.25		29.4	1.5763	2.5
2008	1.192		29.6	1.7951	2.4
2009	1.149		29.9	1.9512	2.5
2010	1.226	9.2	30.1	2.0501	2.3
2011	1.244				

자료: 1) 합계출산율, 평균 초산 연령, 혼외 출생 비중, 조이혼율 자료는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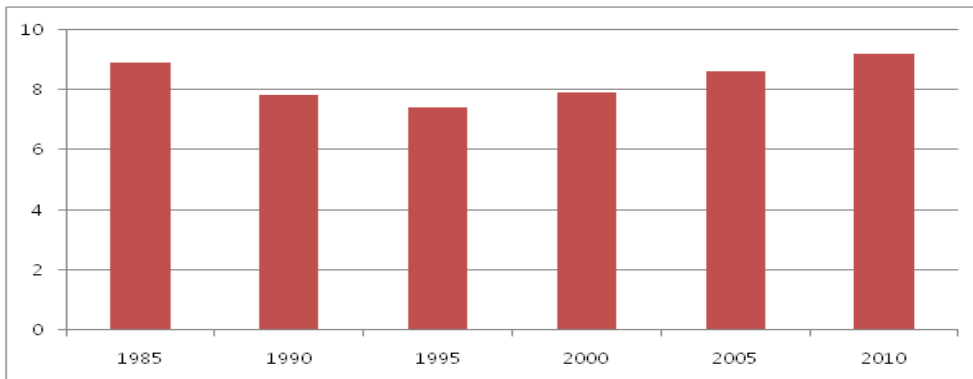
2) 한부모 가족 비중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참조함

〔그림 3.1.1〕 합계 출산율 (197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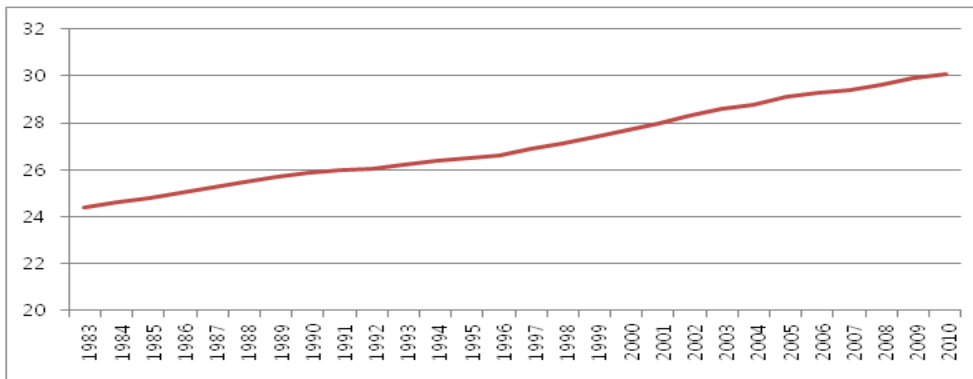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그림 3.1.2] 한부모 가족의 비중 (198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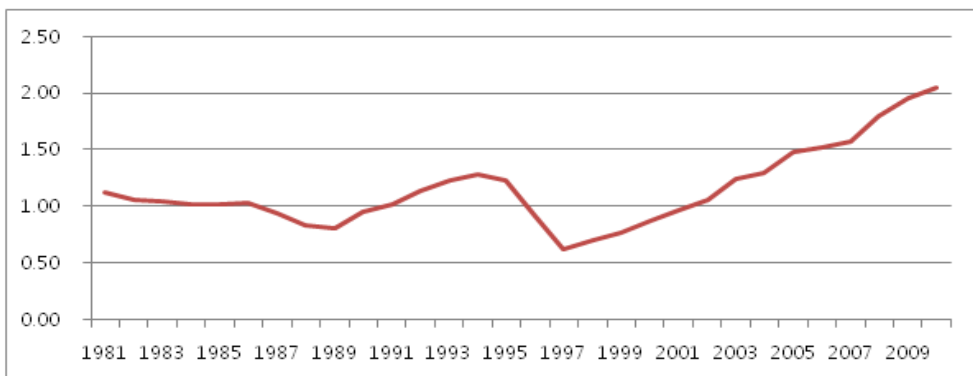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1.3] 평균 초산 연령 (1983~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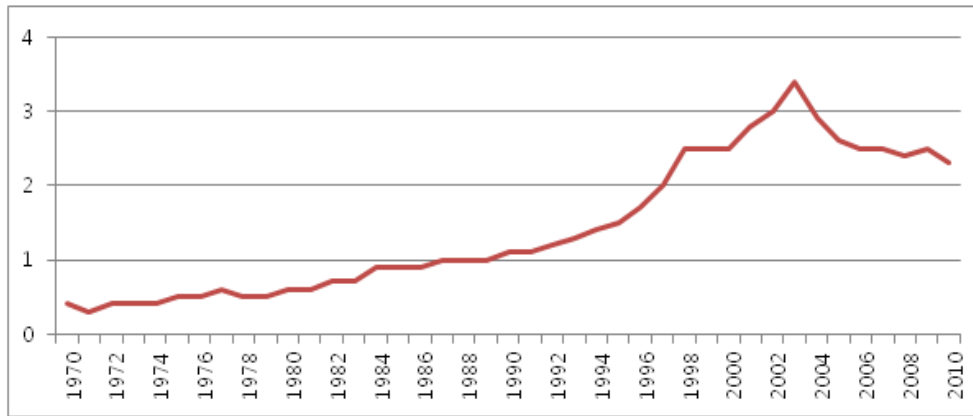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그림 3.1.4] 혼외 출생 비중 (1981~2010)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그림 3.1.5] 조이혼율 (1970~2010)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 2.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지표 다섯 가지 중에서 직업 없는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 비중, 모성 취업률, 한부모 취업률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한국노동패널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본 영역에 해당되는 다른 핵심 지표인 “종일제 취업자 중위 소득에서의 성별 격차” 및 “취업률의 성별 격차”에 대한 자료는 OECD Employment Outlook 자료에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앞서 "LMF1.1: 부모 고용 형태에 따른 아동 현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노동패널자료는 패널자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누락되고 또 추가되는 샘플로 인하여 전국 대표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분석하여 제시한 아래의 결과를 볼 때 전국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업이 없는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의 비중은 양부모 가족과 비교하여 한부모 가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직업이 없는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의 비중은 1999년 4.4%에서 2009년 2.0%로 하락한 반면에, 한부모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직업 없는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22.1%에서 27.4%로 증가하였다.

모성 취업률은 1999년 47.3%에서 2009년 5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부모의 취업률은 15~64세 전체 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볼 때 25~49세 연령집단이 약간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 연도별 취업률 변화 추이는 15~64세 연령 집단과 25~49세 연령 집단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집단 모두 199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006~2007년에 하락하고 이후 2009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1.2〉 OECD Family database 핵심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LMF1.1 (Table LMF1.1.A)			LMF1.2 (Chart LMF1.2.A)	LMF1.3 (Table LMF1.3.A)	
	직업없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모성 취업률	한부모 취업률	
	전체	부부	한부모		15~64세	25~49세
1999	5.0	4.4	22.1	47.3%	68.0%	73.7%
2000	4.9	3.3	28.8	45.6%	70.1%	74.3%
2001	4.0	3.2	26.3	47.4%	69.0%	73.7%
2002	3.2	2.3	16.6	50.1%	78.8%	81.4%
2003	5.0	3.7	25.1	50.1%	73.5%	78.2%
2004	4.6	2.9	17.8	52.2%	74.1%	80.0%
2005	5.5	3.9	23.8	52.7%	75.4%	77.6%
2006	5.0	3.0	29.0	53.3%	70.9%	71.7%
2007	5.5	2.4	32.4	53.2%	71.1%	70.1%
2008	4.9	1.8	27.8	55.6%	75.0%	79.7%
2009	6.6	2.0	27.4	56.2%	74.1%	78.5%

주: 1)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1998)는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의 변화로 인하여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2) 모든 비중은 연도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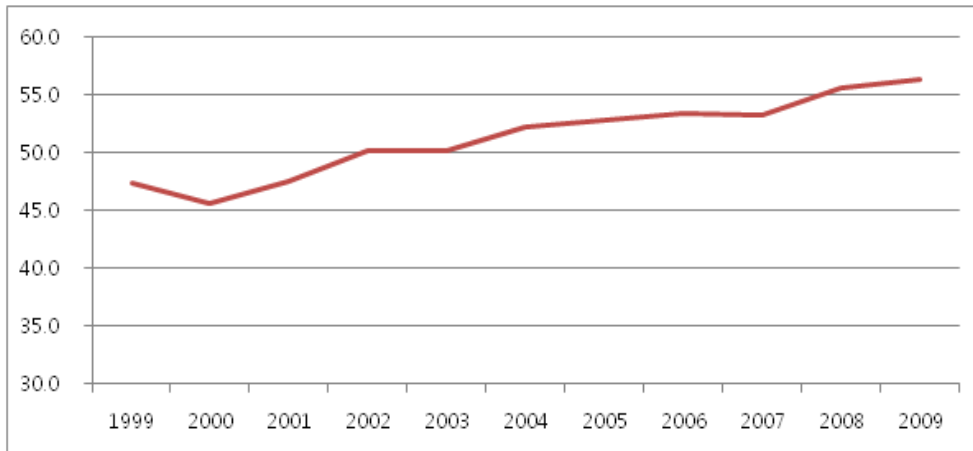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9~2009)

〔그림 3.1.6〕 직업 없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1999~2009)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9~2009)

[그림 3.1.7] 모성취업률 (1999~2009)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9~2009)

[그림 3.1.8] 한부모의 취업률 (1999~2009)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9~2009)

### 3. 가족 및 아동 정책

동 영역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핵심 지표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만 0~2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만 3~5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한다. 전체 임금이 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아직 국내에서 구축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본 연구가 구축한 2012년도 현황 자료만 제공하기로 하고 동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구축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도록 한다. 가족에 대한 조세 혜택 자료는 OECD Tax/Benefit model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시계열 자료는 이를 근거로 하여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기초로 하여 1990~2007 기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였다. 1990년 전체 GDP의 1.0% 수준에 불과하던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규모는 2007년 현재 전체 GDP의 6.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임금이 급여로 지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2012년 현재 11.1주 혹은 11.7주로 추정되었다.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임금이 급여로 지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도의 휴가 기간은 20.8주 혹은 23.4주로 추정되었다.

만 0~2세 영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1년부터 2011년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였다. 만 3~5세 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동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동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구축을 위해서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현황 자료인 교육통계서비스의 2001~2011년 유아 교육통계자료와 보육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현황 자료인 2001~2011년 보육 통계 자료 두가지를 활용하였다. 모수가 되는 만 0~5세 각세별 전체 아동 수는 통계청 주민등록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집하였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의 비중은 2001년도에 9.4%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현재 전체 만 0~2세 아동 중 54.1%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 3~5세 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역시 2001년 현재 28.2%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1년 현재 전체 만 3~5세 아동 중 82.0%가 보육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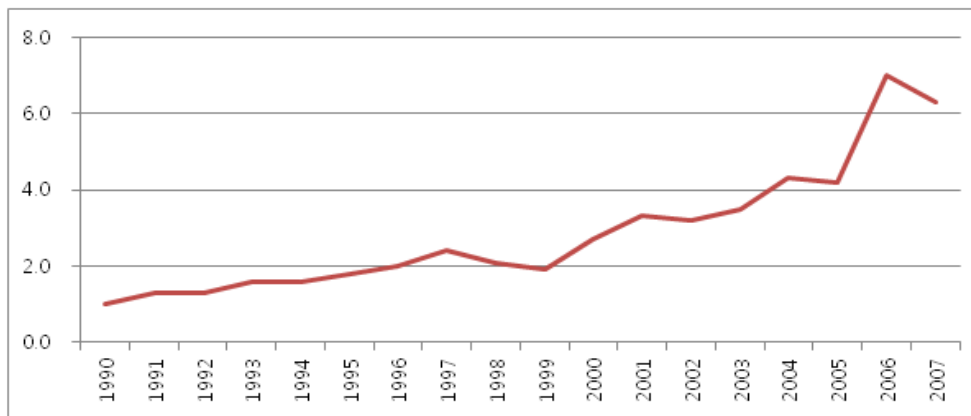
〈표 3.1.3〉 OECD Family database 핵심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가족 및 아동 정책

	PF1.1 (Chart PF1.1.A) GDP에서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PF3.2 (ChartPF3.2.A) 만 0~2세 영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PF3.2 (ChartPF3.2.A) 만 3~5세 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1990	1.0		
1991	1.3		
1992	1.3		
1993	1.6		
1994	1.6		
1995	1.8		
1996	2.0		
1997	2.4		
1998	2.1		
1999	1.9		
2000	2.7		
2001	3.3	9.4	28.2
2002	3.2	12.4	57.0
2003	3.5	15.9	59.7
2004	4.3	18.3	64.4
2005	4.2	22.0	69.6
2006	7.0	26.3	76.4
2007	6.3	30.6	79.4
2008		37.7	79.8
2009		41.6	82.0
2010		50.5	80.7
2011		54.1	82.0

자료: 1) GDP에서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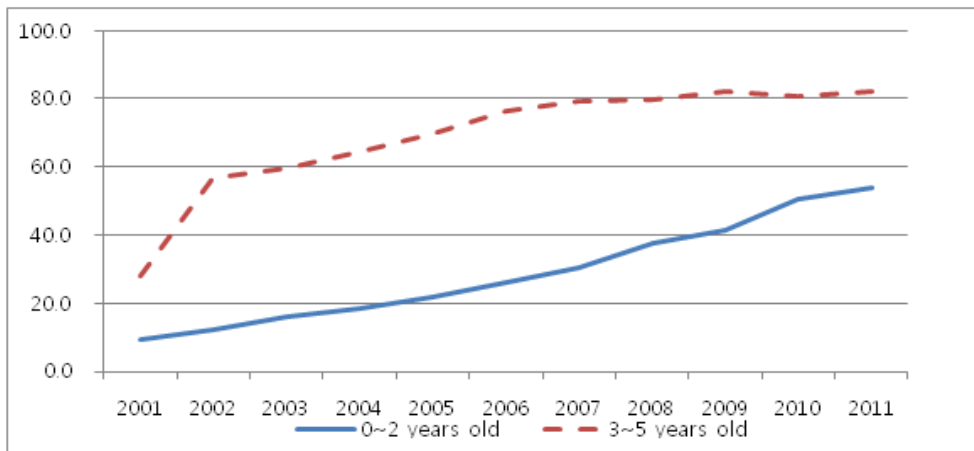
2) 만0-2세 영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만3~5세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01~2011),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 (2001~2011),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2001~2011).

〔그림 3.1.9〕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0~2007)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2)

[그림 3.1.10]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2001~201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01~2011),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2001~2011),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2001~2011).

#### 4. 아동 성과

아동 성과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지표는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아동 빈곤율, 국제 학업성취도(PISA)평가점수, 청소년 출산율의 다섯가지 지표이다.

영아 사망률 자료는 OECD Health data와 통계청 사망원인자료를 근거로 수집하였다. OECD Health data는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영아 사망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매해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통계청 사망원인자료는 1983년부터 2010년까지 각 연도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영아 사망률은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사망원인자료에서 나타난 영아 사망률 시계열 변화 추이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영아 사망률은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2003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영아 사망률은 2010년까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영아 사망률이 이러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CO1.1의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에서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영아 사망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이를 따른다면 향후 영아 사망률은 더욱 감소할 것을 예상된다. 최근 한국의 영아 사망률 수치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대 수명 자료는 OECD Health data와 통계청 자료의 두 가지 자료원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두 자료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960년에 52.4세였으나 2009년도에 80세로 증가하였다.

아동 빈곤율 자료는 김문길 외 (2011) “빈곤통계연보”자료를 기초로 수집하였다. 김문길 외 (2011)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아동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한국의 아동 빈곤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점수는 2000, 2003, 2006, 2009년도 결과를 제공하였다. 수학점수는 모든 연도 기간 동안에 540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읽기와 과학 점수는 같은 기간 동안 520~550점 구간에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출산율 자료는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를 기초로 1980~2010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로 정의된다. 청소년 출산율은 1981년 22.7명에서 2010년 1.8명으로 하락하였다.

〈표 3.1.4〉 OECD Family database 핵심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아동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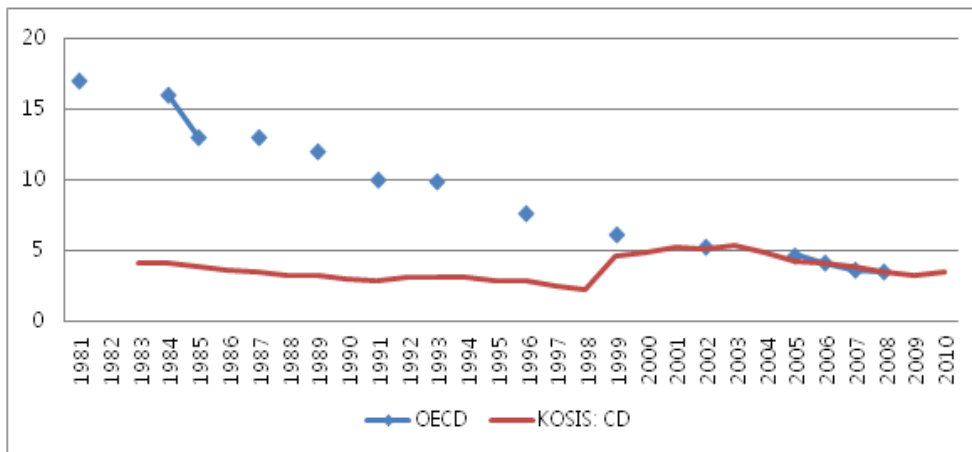
	CO1.1 (Chart CO1.1.A)	CO1.2 (Chart CO1.2.B)	CO2.2 (Chart CO2.2.A)	CO3.4 (Chart CO3.4.A)			SF2.4 (Chart SF2.4.D)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아동 빈곤율	국제학업성취도평가점수 수학	읽기	과학	청소년 출산율
1960		52.4					
1970	45	62.1					
1971		62.5					
1972		63.0					
1973		63.3					
1974		63.7					
1975		64.0					
1976		64.4					
1977		64.8					
1978		65.0					
1979		65.4					
1980		65.9					12.9
1981	17	66.4					22.7
1982		66.9					14.9
1983		67.3					13.0
1984	16	68.0					11.7
1985	13	68.7					10.1
1986		69.3					8.7
1987	13	69.9					7.0
1988		70.5					5.7

〈표 3.1.4〉 계속

	CO1.1 (Chart CO1.1.A)	CO1.2 (Chart CO1.2.B)	CO2.2 (Chart CO2.2.A)	CO3.4 (Chart CO3.4.A)			SF2.4 (Chart SF2.4.D)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아동 빈곤율	국제학업성취도평가점수 수학    읽기    과학			청소년 출산율
1989	12	71.0					4.4
1990		71.4	6.3				4.2
1991	10	71.8	5.2				4.3
1992		72.3	5.7				4.7
1993	9.9	72.8	5.8				4.4
1994		73.2	6.2				4.0
1995		73.5	6.7				3.6
1996	7.7	74.0	5.9				3.3
1997		74.3	6.7				3.0
1998		74.8	7.0				2.8
1999	6.2	75.5	7.6				2.6
2000		76.0	6.3	547	525	552	2.5
2001		76.4	6.3				2.2
2002	5.3	77.0	5.5				2.6
2003		77.3	7.0	542	534	538	2.5
2004		78.0	7.1				2.3
2005	4.7	78.5	7.9				2.1
2006	4.1	79.0	6.3	547	556	522	2.2
2007	3.6	79.4	6.5				2.2
2008	3.5	79.9	6.2				1.7
2009		80.3	6.3	546	539	538	1.7
2010			5.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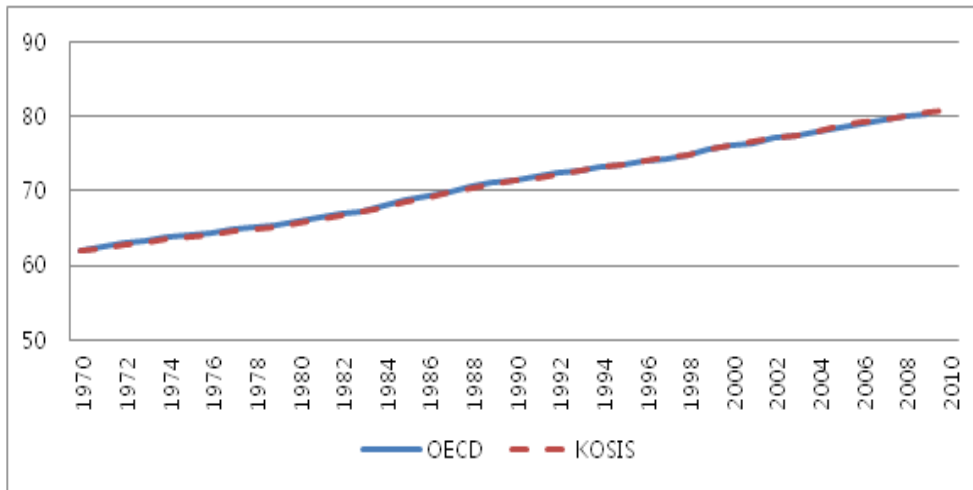
자료: 1)영아 사망률, 기대수명: OECD Health data, KOSIS, 2) 아동빈곤율: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3) 국제학업성취도평가점수: PISA(2000, 2003, 2006, 2009), 4) 청소년 출산율: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그림 3.1.11] 영아 사망률 (198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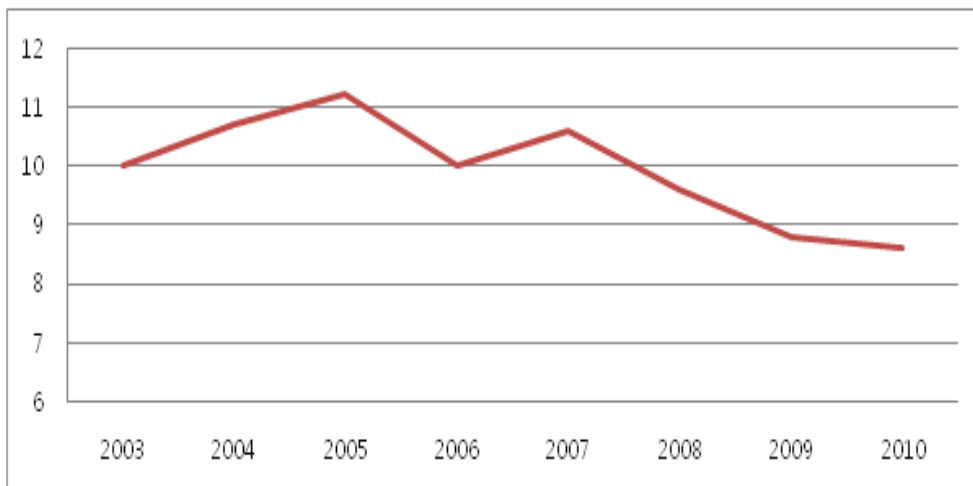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data, 통계청 사망원인

[그림 3.1.12] 기대 수명 (197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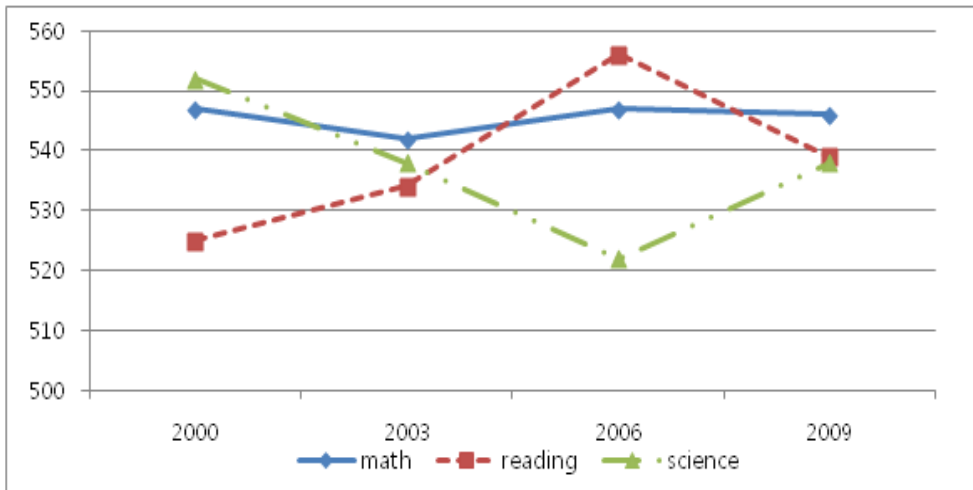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data, 통계청

[그림 3.1.13] 아동 빈곤율 (2003~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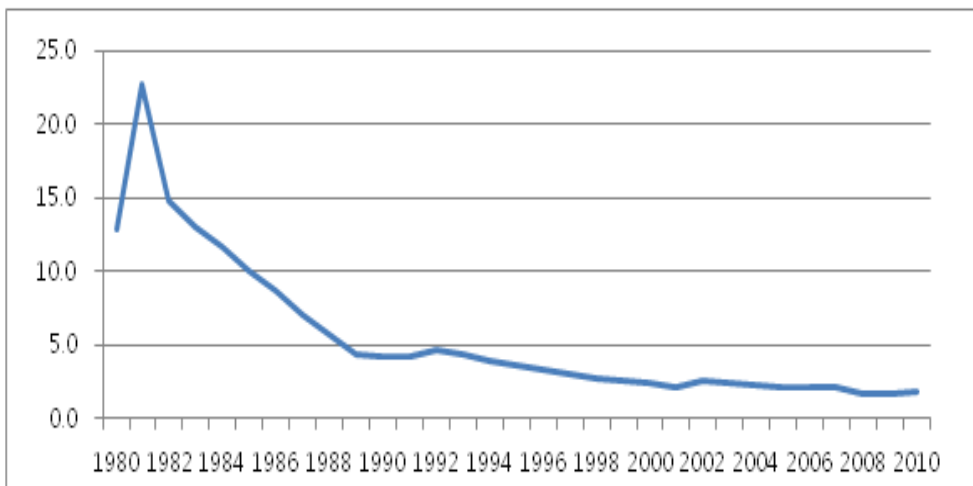
자료: 김문길 외 (2011) "빈곤통계연보"

[그림 3.1.14] 국제학업성취도평가점수 (2000년대)



자료: 국제학업성취도평가점수 (2000, 2003, 2006, 2009)

[그림 3.1.15] 청소년 출산율 (1980~2010)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출생 통계 보고서

## 제2절 OECD Family database의 LFS questionnaires

OECD Social Policy Division은 최근 OECD Family database의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시계열 자료 구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 시계열 자료 구축 작업은 최근 유럽 국가의 경제 위기에 따른 가족 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가족의 지위 영역에 해당되는 중심 지표들로 구성된 "OECD Family database LFS questionnaires"에 대한 자료를 구축 중에 있다.

"OECD Family database LFS questionnaires"는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막내 자녀 연령별 부모의 취업 유형"에 대한 지표들이며, 두 번째 영역은 "자녀 수와 자녀 연령별 여성의 취업 유형"에 대한 지표들이다.

막내 자녀 연령별 부모의 취업 유형은 막내 자녀 연령을 0~2세, 3~5세, 6~14세로 구분하고 부모의 유형을 부부와 한부모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취업 유형은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한 후 "취업" 부모에 대해서는 "종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로 구분하였다.

자녀 수와 자녀 연령별 여성의 취업 유형은 가족 유형을 부부 가족과 한부모로 구분한 뒤 다시 막내 자녀 연령을 15세 미만, 0~2세, 3~5세, 6~14세로 구분하였다. 자녀 수는 15세 미만의 자녀 없음, 15세 미만 자녀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취업 유형은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비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0~2009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연도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샘플 자체의 빈도와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막내 자녀 연령이 0~24세인 부모의 샘플 수는 2,500~2,900건으로서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샘플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막내 자녀 연령이 0~2세, 3~5세 부모 샘플 수는 분석을 위한 충분한 샘플 수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한부모 여성 가구 및 15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가지고 있는 여성의 샘플 수 역시 분석을 위한 충분한 샘플 수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노동패널자료로서는 자녀 연령 및 자녀수별 부모의 취업 행태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동 분석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고 샘플 수가 충분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자녀 수 및 자녀 연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녀 특성별 부모의 취업 행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3.2.1〉 막내 자녀 연령 0~24세 가구의 취업 유형별 빈도수

	자녀 연령 0~24세 가구																		
	전체 가구수	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부부 가구 전체	둘다 비취 업	한 사람만 취업				둘 다 취업				한부모 가구 전체	비취 업	취업					
				전체	종일제	시간 제	모름	전체	모두종 일제	각각 종일제 시간제	모두 시간 제			모름	전체	종일 제	시간 제	모름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빈도수																			
2000	2,760	2,519	141	1,297	1,227	65	5	1,021	866	141	12	2	230	74	145	137	8	1	
2001	2,701	2,478	118	1,258	1,191	61	6	1,023	834	151	28	10	216	69	140	117	23		
2002	2,634	2,417	87	1,182	1,136	44	2	1,056	914	124	13	5	212	52	144	132	12		
2003	2,744	2,492	122	1,203	1,152	47	4	1,053	899	138	13	3	249	78	144	130	14	1	
2004	2,783	2,529	104	1,271	1,225	43	3	1,018	887	120	7	4	249	67	146	135	11	1	
2005	2,695	2,449	115	1,203	1,166	34	3	977	861	106	7	3	243	66	152	146	6		
2006	2,644	2,404	92	1,173	1,130	40	3	960	845	108	4	3	237	73	138	132	6		
2007	2,597	2,374	74	1,142	1,109	28	5	959	850	98	8	3	220	63	130	120	10	1	
2008	2,500	2,302	59	1,087	1,065	21	1	927	830	91	6		197	61	120	114	6		
2009	2,967	2,699	83	1,260	1,221	39		1,032	915	113	3	1	267	95	153	145	8		
가중치 적용한 빈도수 (천명)																			
2000	7,744	7,083	401	3,668	3,474	180	14	2,874	2,431	400	37	5	636	203	402	379	24	2	
2001	7,701	7,074	346	3,598	3,407	171	20	2,948	2,394	436	88	31	608	200	391	325	66		
2002	7,534	6,937	255	3,397	3,259	131	6	3,070	2,643	375	37	14	585	140	399	364	35		
2003	7,413	6,750	319	3,267	3,123	133	11	2,906	2,466	395	39	7	658	214	378	340	38	2	
2004	7,311	6,649	270	3,297	3,177	113	8	2,756	2,373	353	19	11	650	189	379	351	27	3	
2005	7,006	6,365	309	3,097	3,007	85	6	2,611	2,295	287	21	8	636	176	402	385	17		
2006	6,743	6,117	250	2,999	2,887	107	5	2,483	2,188	277	11	7	622	204	358	343	15		
2007	6,580	5,996	205	2,858	2,775	74	8	2,503	2,231	246	21	5	579	183	332	306	26	3	
2008	6,384	5,845	174	2,687	2,632	52	2	2,463	2,200	247	15		538	171	323	304	18		
2009	6,209	5,691	184	2,524	2,443	81		2,290	2,028	255	6	1	517	179	289	278	12		

주: 제12차 조사 (2009)에는 1,500명의 새로운 샘플이 추가되었음  
 자료: 제3차~12차 한국노동패널 (2000~2009)





<표 3.2.3> 막내자녀 연령 3~5세 가구의 취업 유형별 빈도수

	자녀 연령 3~5세 가구																
	전체 가구수	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부부 가구 전체	둘다 비취 업	한 사람만 취업				둘 다 취업				한부모 가구 전체	비취 업	취업			
				전체	종일제	시간 제	모름	전체	모두종 일제	각각 종일제 시간제	모두 시간 제			모름	전체	종일 제	시간 제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빈도수																	
2000	386	376	12	231	221	10		125	96	28	1		6	1	3	3	
2001	376	367	13	213	210	3		120	93	24	3		6	1	4	3	1
2002	354	338	6	186	184	2		122	95	25	1	1	13	2	8	6	2
2003	350	334	15	185	182	3		111	91	19	1		15	1	7	6	1
2004	380	368	10	208	201	7		116	100	15		1	11		5	5	
2005	374	369	14	205	201	3	1	121	102	18	1		5	1	2	2	
2006	391	382	9	215	211	2	2	112	97	14		1	8	2	4	3	1
2007	367	360	7	201	194	5	2	110	92	16	1	1	5	2	2	2	
2008	347	341	5	179	175	3	1	111	99	12			6	1	3	2	1
2009	431	419	8	223	220	3		118	105	13			12	4	4	4	
가중치 적용한 빈도수 (천명)																	
2000	1,124	1,098	39	675	647	27		364	277	85	2		18	2	9	9	
2001	1,120	1,094	47	648	641	8		354	276	69	9		18	3	13	9	3
2002	1,037	995	18	551	545	6		370	287	77	2	3	35	4	17	12	6
2003	956	916	41	525	516	9		292	236	54	2		38	3	14	12	2
2004	951	922	22	535	516	19		285	238	43		5	26		13	13	
2005	865	851	37	489	478	8	3	264	225	37	2		14	3	5	5	
2006	821	798	21	454	447	4	3	218	194	22		2	21	4	13	9	4
2007	713	693	10	398	390	5	3	201	174	24	1	2	16	7	7	7	
2008	678	657	12	346	340	4	2	207	184	23			21	4	12	10	2
2009	768	757	10	379	375	4		211	189	23			11	3	2	2	

주: 제12차 조사 (2009)에는 1,500명의 새로운 샘플이 추가되었음  
 자료: 제3차~12차 한국노동패널 (2000~2009)

〈표 3.2.4〉 막내자녀 연령 6~14세 가구의 취업 유형별 빈도수

	자녀 연령 6~14세 가구																
	전체 가구수	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부부 가구 전체	둘다 비취 업	한 사람만 취업				둘 다 취업				한부모 가구 전체	비취 업	취업			
				전체	종일제	시간 제	모름	전체	모두종 일제	각각 종일제 시간제	모두 시간 제			모름	전체	종일 제	시간 제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빈도수																	
2000	1,121	1,037	36	495	473	21	1	480	409	70	1		84	25	55	53	2
2001	1,028	954	30	435	407	25	3	458	378	71	5	4	74	20	48	39	9
2002	1,028	955	22	410	397	13		486	419	59	5	3	73	18	46	41	5
2003	1,088	995	28	429	411	16	2	490	410	75	3	2	93	32	46	43	3
2004	1,097	998	33	446	432	13	1	469	407	59	3		98	16	59	56	3
2005	1,091	996	38	438	426	12		455	392	57	5	1	95	19	59	58	1
2006	1,084	984	30	450	436	13	1	445	385	57	1	2	100	30	52	50	2
2007	1,094	998	28	439	424	14	1	456	401	52	3		96	27	51	48	3
2008	1,033	951	25	397	390	7		439	390	48	1		82	32	44	42	2
2009	1,260	1,146	29	495	476	19		499	434	63	1	1	114	43	60	58	2
가중치 적용한 빈도수 (천명)																	
2000	3,140	2,914	91	1,395	1,333	59	3	1,362	1,165	194	3		226	70	145	139	6
2001	3,018	2,813	85	1,294	1,216	69	9	1,353	1,113	214	16	9	206	57	133	108	26
2002	3,066	2,866	63	1,265	1,222	43		1,444	1,239	179	18	8	199	48	127	113	14
2003	3,113	2,878	85	1,236	1,186	45	5	1,442	1,201	226	11	5	235	83	120	111	9
2004	3,096	2,845	89	1,274	1,239	33	3	1,359	1,167	179	12		249	43	150	144	7
2005	3,119	2,881	121	1,261	1,230	30		1,336	1,144	172	17	4	238	45	152	150	2
2006	3,018	2,773	90	1,300	1,259	40	2	1,249	1,077	164	4	5	246	79	122	117	5
2007	3,041	2,791	87	1,259	1,216	41	1	1,291	1,133	148	9		250	81	125	117	9
2008	2,874	2,653	76	1,128	1,107	21		1,265	1,126	136	3		221	82	118	113	5
2009	2,664	2,450	62	1,065	1,020	45		1,110	963	143	3	1	214	80	102	100	3

주: 제12차 조사 (2009)에는 1,500명의 새로운 샘플이 추가되었음  
 자료: 제3차~12차 한국노동패널 (2000~2009)

〈표 3.2.5〉 부부 가구 중 여성(15~64세)의 막내 자녀 연령별 취업 유형 빈도수

	막내자녀 15세 미만 여성			막내자녀 0~2세 여성			막내자녀 3~5세 여성			막내자녀 6~14세 여성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빈도수												
2000	573	81	918	66	7	285	118	23	239	389	51	392
2001	581	86	882	80	14	297	118	24	231	382	48	353
2002	599	76	846	77	7	297	119	19	208	402	50	339
2003	588	96	873	91	9	295	110	19	202	386	68	375
2004	621	73	913	92	5	317	123	17	224	405	51	371
2005	637	68	903	108	4	298	119	16	230	408	48	375
2006	651	64	866	115	10	269	125	11	239	409	43	358
2007	612	70	878	115	4	284	114	20	226	381	46	368
2008	613	56	855	105	11	315	121	12	204	385	32	336
2009	686	74	1,019	114	9	334	136	11	258	434	53	426
가중치 적용한 빈도수												
2000	1,628,321	233,541	2,596,566	170,841	14,896	779,797	337,960	72,065	707,181	1,119,520	146,580	1,106,483
2001	1,688,352	260,334	2,530,896	196,122	38,579	747,281	348,500	68,456	711,846	1,142,836	153,299	1,069,286
2002	1,778,414	243,055	2,414,226	181,863	18,456	709,630	364,566	61,907	623,279	1,230,778	162,692	1,078,747
2003	1,666,996	286,491	2,340,714	181,766	18,003	614,951	296,100	54,294	597,853	1,188,127	214,193	1,127,910
2004	1,754,661	233,899	2,354,836	193,505	11,505	623,794	317,707	49,296	608,610	1,242,384	173,098	1,120,401
2005	1,803,139	194,286	2,364,669	222,082	6,033	576,847	274,918	36,665	610,668	1,302,243	151,588	1,177,153
2006	1,770,405	180,747	2,274,747	243,234	18,162	551,070	278,340	20,030	560,234	1,244,812	142,555	1,163,443
2007	1,692,263	190,619	2,237,325	257,911	6,696	568,641	245,322	34,919	497,267	1,184,914	149,004	1,171,417
2008	1,726,684	146,976	2,184,664	255,456	21,884	669,960	258,774	26,839	446,193	1,207,666	95,229	1,068,512
2009	1,647,078	179,102	2,149,919	257,879	14,298	636,955	310,403	18,613	504,743	1,077,555	142,964	1,005,033

주: 제12차 조사 (2009)에는 1,500명의 새로운 샘플이 추가되었음  
 자료: 제3차~12차 한국노동패널 (2000~2009)

〈표 3.2.6〉 한어머니(15~64세) 가구의 막내 자녀 연령별 취업 유형 빈도수

	막내자녀 15세 미만 여성			막내자녀 0~2세 여성			막내자녀 3~5세 여성			막내자녀 6~14세 여성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빈도수												
2000	26	2	13	5		2	2		1	19	2	10
2001	20	3	8	2		1	1		1	17	3	6
2002	22	1	5	1			4		1	17	1	4
2003	38	1	9	4		1	7		1	27	1	7
2004	38	3	11			2	4	1	1	34	2	8
2005	31	1	10	2		3	1	1		28		6
2006	25	3	15	1		2	2	1	2	22	2	11
2007	24	3	12			3	1		2	23	3	7
2008	22	2	8			1	1	1	1	21	1	6
2009	29	2	16	1			1		6	26	2	9
가중치 적용한 빈도수												
2000	68,017	6,239	37,784	13,365		3,104	5,613		4,817	49,039	6,239	29,863
2001	54,097	8,752	21,677	4,445		1,872	2,707		3,257	46,945	8,752	16,548
2002	59,674	2,836	19,335	1,835			11,799		7,681	46,040	2,836	11,653
2003	89,599	3,613	31,215	9,529		2,139	13,404		7,899	66,665	3,613	21,177
2004	98,499	7,782	37,609			4,536	9,369	2,750	2,053	89,130	5,032	31,021
2005	77,780	2,720	42,194	3,915		9,937	2,968	2,720		70,897		29,315
2006	62,892	7,969	49,775	1,723		2,689	3,950	2,641	4,499	57,219	5,328	42,588
2007	63,697	11,640	44,836			4,630	2,087		8,308	61,609	11,640	31,898
2008	65,069	4,149	33,339			0	7,424	2,152	4,710	57,645	1,997	28,629
2009	65,439	2,820	29,248	3,800					5,191	59,524	2,820	24,057

주: 제12차 조사 (2009)에는 1,500명의 새로운 샘플이 추가되었음  
 자료: 제3차~12차 한국노동패널 (2000~2009)

<표 3.2.7> 부부 가구 중 여성(15~64세)의 취업 유형 및 자녀수별 빈도수

	15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			15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여성			15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여성			15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여성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빈도수												
2000	748	65	884	238	29	337	289	51	511	46	1	68
2001	715	92	847	253	27	339	291	55	472	36	4	70
2002	793	61	799	255	28	345	313	44	435	30	4	65
2003	789	78	864	256	35	358	299	52	452	32	9	61
2004	792	79	860	286	36	390	306	35	457	28	2	64
2005	758	68	880	319	30	403	287	34	442	29	4	58
2006	783	73	900	324	32	373	293	30	437	32	2	56
2007	837	59	867	292	32	382	294	31	440	24	7	55
2008	845	78	875	306	18	365	273	34	427	33	3	63
2009	1,085	98	1,110	337	29	415	315	37	521	32	7	82
가중치 적용한 빈도수												
2000	2,004,425	179,117	2,380,570	655,329	75,570	929,735	841,412	154,971	1,465,165	131,580	2,999	198,561
2001	1,963,378	253,826	2,373,178	695,764	69,552	887,074	883,339	177,287	1,428,435	108,356	13,495	212,904
2002	2,217,829	178,182	2,314,958	696,088	87,346	859,766	979,031	144,473	1,349,071	102,088	11,236	205,458
2003	2,143,432	208,668	2,437,573	658,739	96,478	853,264	906,491	162,784	1,298,494	100,763	27,229	185,725
2004	2,150,834	216,071	2,479,876	741,107	107,850	910,397	928,136	120,703	1,248,462	84,353	5,347	191,537
2005	2,118,746	184,647	2,626,775	840,808	90,675	962,882	867,493	95,135	1,225,121	90,942	8,476	176,666
2006	2,179,612	219,114	2,673,757	839,926	100,344	906,374	826,177	77,216	1,204,215	100,283	3,187	164,158
2007	2,406,781	165,503	2,600,782	782,769	94,401	932,149	832,514	78,207	1,146,271	72,864	18,010	156,512
2008	2,551,266	238,109	2,638,690	862,921	53,819	953,524	767,476	82,113	1,056,210	95,087	8,021	174,931
2009	2,741,775	254,645	2,802,945	856,698	67,454	897,115	720,799	81,711	1,090,162	68,340	26,710	159,453

주: 제12차 조사 (2009)에는 1,500명의 새로운 샘플이 추가되었음

자료: 제3차~12차 한국노동패널 (2000~2009)

〈표 3.2.8〉 한어머니(15~64세) 가구의 취업 유형 및 자녀수별 빈도수

	15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			15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여성			15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여성			15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여성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하지 않음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빈도수												
2000	648	59	1,081	15	2	9	10		2	1		2
2001	665	79	1,018	13	3	5	5		3	2		
2002	683	81	975	12		3	7	1	2	3		
2003	753	76	1,050	22		5	14		3	1	1	1
2004	758	64	990	22	2	7	14	1	3	2		1
2005	735	72	967	21	1	6	8		2	2		1
2006	764	63	957	16	3	8	8		6	1		1
2007	714	81	953	17	3	6	5		5	2		1
2008	684	64	923	19	1	3	3	1	4			1
2009	825	79	1,101	21	1	8	5	1	5	2		2
가중치 적용한 빈도수												
2000	1,799,100	170,677	3,064,781	39,824	6,239	25,246	25,295		5,090	2,898		2
2001	1,950,653	227,788	2,965,690	37,431	8,752	12,852	11,178		8,825	5,488		
2002	2,016,880	260,303	2,919,428	34,297		7,702	17,437	2,836	11,632	7,940		
2003	2,209,500	229,639	3,049,119	53,003		16,869	33,157		11,853	1,610	3,613	1
2004	2,250,493	201,604	2,924,600	56,544	4,900	21,405	36,882	2,882	13,768	5,073		1
2005	2,286,780	245,117	2,961,028	51,653	2,720	25,115	21,076		12,579	5,051		1
2006	2,361,050	202,956	2,973,770	37,201	7,969	25,324	22,307		22,638	3,384		1
2007	2,244,906	254,293	3,023,915	43,648	11,640	23,294	14,069		19,597	5,979		1
2008	2,240,055	241,437	3,052,611	55,416	1,997	13,565	9,653	2,152	19,774			1
2009	2,334,277	228,469	3,004,156	51,847		9,706	11,477	2,820	19,542			2

주: 제12차 조사 (2009)에는 1,500명의 새로운 샘플이 추가되었음

자료: 제3차~12차 한국노동패널 (2000~2009)







## 제4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향후 정책 방안 및 제언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OECD Family database의 4대 대분류 영역에 걸친 지표들에 대하여 누락된 한국 자료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 및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통계청이 최근 들어 새롭게 발표한 2010년도 인구총조사 결과 및 2011년 출생 통계 결과는 2012년 현재 OECD Family database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동 자료를 기초로 관련된 지표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SF1.1(가족의 규모와 가구구성) 및 SF1.4(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의 관련 지표를 보완하였다. 2011년 출생통계결과를 활용하여 SF2.1(출산율), SF2.3(첫자녀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SF2.4(혼외 출산 비율과 10대 출산), SF2.5(무자녀), 그리고 SF3.1(혼인율과 이혼율) 지표를 업데이트하였다. 이러한 한국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파악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이해 급속하게 하락하여 2011년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1.24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출산 행태 및 가족 구조는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초산 연령은 1983년 24.4세에서 2010년 29.1세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준은 독일 30.0세, 영국 30.0세, 프랑스 28.6세, 스웨덴 28.4세 등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한 양상이다. 조혼인율은 1970년 9.2건에서 2010년 6.5건으로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5.0건에 가까워 졌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05년 3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역시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2.6명과 유사한 수치이다. 부부 가구의 비중은 2005년 72.6%에서 2010년 52.4%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역시 OECD 국가 평균 수준

7) 본 장에서 제시한 OECD 국가 평균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 하였다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인 57.6%와 비슷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 23.9%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인 27.7%와 비교하여 약간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내 출산 행태와 가족 구조가 OECD 평균에 유사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혼외 출산 비중과 이혼율과 같은 지표들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도 OECD 평균 혼외 출산 비중이 36.3%인데 반해 국내 혼외 출산 비중은 2010년 현재 2.05%로 현격하게 낮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조이혼율은 2010년 현재 2.3건으로서 역시 2009년도 OECD 국가 평균 13.6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 구조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서구국가의 모습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출산 및 결혼 문화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한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둘째,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영역 중 한국 자료가 누락된 주요한 지표에 대해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간 사용과 관련한 주요 지표들을 보완하였다.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된 주요 지표는 LMF1.1(부모 고용 형태에 따른 아동 현황), LMF1.2(모성취업률), LMF 1.3(혼인상태별 모성취업률), LMF2.2(양부모 가족 부모의 막내 자녀 연령별·자녀수별 근로시간 분포)이다. 통계청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지표는 LMF2.5 (근로·돌봄·기타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와 LMF 2.6 (출퇴근에 보낸 시간)이다.

2009년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 결과 25~49세 여성의 취업률은 58.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OECD 국가 평균 25~49세 여성 취업률 71.9%보다 낮은 수준이다. 막내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은 여성의 취업률은 20.1%로서 역시 OECD 국가 평균인 50.9%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부 가족의 취업 유형은 OECD 국가 부부 가족의 취업 유형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종일제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45.7%로 OECD 국가 평균 33.3%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부부 중 한명이 종일제로 일하고 나머지 한명이 시간제로 일하는 가구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4.1%로서 OECD 국가 평균인 23.6%와 비교하여 상당 수준 낮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의 가족 구조가 지배적이며 여성들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한명은 종일제 근로를 하고 나머지 한명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부부의 비중이 적은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보장, 근로 환경, 급여 측면에서 여성들이 일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 결과 한국 여성들은 다른 OECD 국가 여성들과 비교하여 더 오래 일하고 돌봄 노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가구 중에서 0~14세 자녀를 가진 취업 여성의 42.3%가 주당 40~44 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9.2%의 여성들이 주당 4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 가구 중에서 0~14세 자녀를 가진 취업 여성의 약 80% 이상이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비중은 OECD 국가 취업 여성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을 볼 때 주당 40~44 시간 일하는 0~14세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의 비중은 35.1%, 45시간 일하는 비중은 9.5%로 나타났다.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한국 여성들은 하루 시간의 16%를 돌봄 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랑스의 8.8%, 스웨덴의 1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성휴가정책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정책 등 최근 변화된 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을 관련 지표에 반영하였다. 국내 가족 정책의 변화가 반영된 지표는 LMF2.4(가족친화제도), PF2.1(모성휴가제도의 주요 특징), PF2.3(취업 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휴가제도), PF2.4(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다. 최근에 확대된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PF3.2(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PF4.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체계), PF4.2(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에 해당되는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육아휴직급여제도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에서 통상 임금의 40%를 지원하는 정률제로 변화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Family database에 보고된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의 대체율은 21.2% 였으나 본 연구결과 2012년도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0~4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변화됨에 따라 임금 전액이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의 육아휴직기간도 2008년 9.7주에서 2012년 20.8~23.4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도 확대되었다. 2011년 현재 만 0~2세 영아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54.1%,

만 3~5세 유아의 보육·교육 시설 이용률은 82.0%로 나타났는 바 이는 2008년도 OECD 국가 평균의 30.1%(만 0~2세)와 77.3%(만 3~5세)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넷째, 아동 성과와 관련한 지표에 대하여 2010~2011년도 현황을 반영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본 연구가 업데이트한 대표적인 지표는 CO1.2(기대수명), CO1.3(저체중 출생), CO1.7(15세의 성별 과체중과 비만)이다. 기대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10년 80.8세로 증가하여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치로 향상되었다. 저체중출생 비중은 1993년 2.6%에서 2010년 5.0%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OECD 국가 평균인 6.6%와 비교하면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 제2절 향후 정책 방안 및 제언

OECD Family database에 대해 양질의 한국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가족 관련 자료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향후 국내 통계 생산 및 관련 연구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은 인구총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가구 구성에 대한 보다 많은 공식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OECD Family database의 가족 구성에 대한 지표 중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자료는 “Chart SF1.1A: 가구의 규모”에서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와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두가지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지표를 자료를 구축하였다.

- Chart SF1.1A: 가구 규모 (한부모 가구의 평균가구원 수)
- Table SF1.1A: 가구 유형
- Table SF1.1B: 자녀가 있는 가구
- Chart SF2.5A: 코호트별 무자녀 여성 추이
- Chart SF3.1C, Chart SF3.1D: 초혼 연령, 초혼 연령의 성차 (전체 인구의 초혼 연령)

위에 해당되는 지표의 자료는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공식 자료를 통하여 분석

이 가능하므로 자료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직접 분석하여 공식적인 통계청 자료로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산출 가능한 지표로는 “Table SF1.1C: 아동수별 가구 비중,” “SF1.2: 가족에서의 아동” 과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Table SF2.5.A: 자녀 없는 가구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다. 동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체 가구 중 자녀 없는 가구의 비중, 자녀 1명 있는 가구 비중 등 자녀 수 별 가구 비중, 자녀 없는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 등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들이다. 또한 전체 0~14 아동 중에서 한부모, 부부가구, 기타 성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그리고 전체 0~14 아동 중에서 자녀 1명, 2명, 3명 있는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 비중 등 아동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지표의 자료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 기관에서도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총조사 샘플 자료를 제공 받아 이러한 지표의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 수행이 요청된다.

둘째, 최근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인구총조사는 혼인 상태의 다양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구총조사에서 혼인상태 대한 질문은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의 네가지로만 판단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있음”이라는 항목을 통해 법적 혼인 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파악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SF 3.3 동거”와 관련한 한국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출산한 자녀수에 대해 “기혼 여성”만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혼외 출생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 구조에 대한 질문 내용을 수정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가족 유형별 부모의 취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사 자료 마련이 요청된다. 자녀 수 및 자녀 연령별 부모의 취업 유형, 근로 시간 현황 파악은 저출산 정책의 핵심 분야인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장에서의 지위,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 행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자녀 수 및 자녀 연령 등 가족에 대한 정보가

8) 다만, 해당 질문 하단에 “미혼 여성이 출산한 자녀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어 질문에 일관성이 없으며 혼외 출산에 편견을 준다는 인상 부여하고 있다.

누락되어 있어 자녀 수 및 자녀 연령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고용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개인을 단위로 하는 조사이며 가구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European Labor Force Survey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구 특성별 근로자의 근로 행태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European Labor Force Survey가 가구 조사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향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자녀 수 및 자녀 연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 1회에 한해서는 가구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역시 자녀수, 자녀 연령, 출생 순위 등 자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자녀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자녀 돌봄 노동 및 근로 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자녀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또한 자녀 돌봄 활동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분석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 한 행동 외에도 성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녀가 옆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인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모성휴가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모성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자녀 수, 자녀 연령, 출생 순위 등 보다 자세한 정보의 수집이 요청된다.

여섯째, 국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는바 국내 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OECD 국가 정책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OECD Family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 지표 표준에 맞는 자료의 생산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 비공식적인 보육 서비스 그리고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표의 정의를 통일화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아동 예방접종률, 천식 유병률,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율 등 아동 보건에 대한 지표 역시 OECD 기준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동 보건 지표의 정의가 OECD 국가의 아동 보건 지표의 정의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떤 정의가 우리나라 아동



의 보건 상태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건강수명 등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것이 요청된다. 청소년의 위험 행태와 관련된 지표의 경우 “대마초 흡연” 등 우리나라 문화와 맞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한국의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및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학업능력 평가시험인 PIRLS 및 TIMS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결혼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읽기 능력에서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국제결혼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인지능력 평가를 위한 PIRLS, TIMSS, PISA 시험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정책적인 제언과 본문의 각 지표 영역에서 기술한 “비교 가능성과 자료 관련 이슈”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OECD family database의 각 지표별로 한국 자료 구축 및 질적인 향상을 해당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시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OECD family database 한국 자료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

지표	정책 제언	정부 부처
SF 1.1, SF1.4	- 2010년도 인구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 OECD
SF1.2, SF1.3	-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청 자료가 요청됨 · 한부모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 전체 가구에서 couple household, single-person household, sole-parent household, complex household 비중 · 전체 가구 중 유자녀 가구 비중, 전체 couple household 중 유자녀 가구 비중, 전체 유자녀 가구 중 유자녀 한부모 가구 비중 · 특정 코호트 여성의 특정 연령에서의 무자녀 비율 · 전체 인구의 초혼 연령 (남성과 여성을 합한 인구) · 전체 가구 중 자녀 없는 가구 비중, 자녀 1명, 2명, 3명 이상 가구의 비중, 전체 가구 중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 · 가구 유형을 아동 중심으로 비율을 구하는 지표들 · 전체 0~14세 아동 중 한부모/양부모/기타 성인과 거주하는 아동의 비중 · 전체 0~14세 아동 중 자녀가 1명, 2명, 3명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비중 · 전체 0~14세 아동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비중 · 가구 유형을 여성 중심으로 비율을 구하는 지표들 · 25~29세/30~34세/35~39/40~44세 여성 중 자녀가 없는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비중	- 통계청

〈표 4.1〉 계속

지표	정책 제언	정부 부처
SF2.1, SF2.3, SF2.4	- 자녀 출생에 대한 과거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1950년대 코호트에 대한 자료 및 1970~1980년대 출산율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연령별 출산 현황 자료를 5세별이 아닌 각세별로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SF2.2	- 이상 자녀수에 대한 지표 정의 및 샘플 특성을 OECD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SF2.5	- 혼인 여부에 무관하게 모든 여성의 출생 자녀수를 조사해야 할 것임	- 통계청
SF3.2	- 부모의 이혼율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부양자녀 연령은 18세 미만이 되어야 할 것임 (현재는 부양 자녀 연령을 20세 미만으로 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한부모를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음	- 통계청
SF3.3	- 인구총조사에서 혼인상태에 대한 항목을 "법률훈" 과 "사실혼"으로 구분하여 사실혼 관계에서의 가족 구조에 대한 현황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실혼" 관계에서의 가족 생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	- 통계청 - 여성가족부
SF3.4	-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는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임 - 기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현황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
LMF1.1 LMF1.2 LMF1.3 LMF2.2	- 가족 구조 및 가족 특성에 따른 취업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혼인상태, 자녀 수, 자녀 연령, 자녀 출생 순위 등 가족 구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매월 수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연간 최소 1회 가구조사를 포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LMF1.2	- 25~29세 여성의 취업률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임 -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통계청
LMF1.6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OECD 기준에 따라 4단위까지의 세부적인 직업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 통계청
LMF2.4	-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는 유럽의 특수한 노동 환경을 반영하고 있어 한국 등 아시아 개발 국가의 노동환경에 부합되지 않음 - 사업체패널조사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환경과 기업의 보육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경제활동조사에서 가족친화제도 현황 및 근로자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임	- OECD - 고용노동부
LMF2.5, LMF2.6	- 생활시간조사는 자녀수, 자녀 연령, 자녀 출생 순위 등 자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임 - 각 행동을 했을 때 자녀가 옆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LMF2.8	-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PF2.1, PF2.4	- 전체 임금이 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때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추정할 때 각 국가가 자국의 제도를 적용하여 어떻게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동 추정 방법론에 대하여 OECD가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임 -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영문 명칭이 "parental leave" 보다는 "childcare leave"가 더 적절함	- OECD

〈표 4.1〉 계속

지표	정책 제언	정부 부처
PF2.2, PF2.3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용률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및 자료 마련이 필요함 - 고용보험가입자 이외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모성 휴가 사용률 현황이 전국적인 통계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 통계청
PF3.2	-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현황도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 이용률 현황에 포함되어야 함 - 전국보육실태조사는 OECD Family database의 보육관련 지표 해당하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 및 분석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PF3.3	- OECD는 “비공식 보육 서비스”에 대해 정의할때 유럽 국가 기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보육 서비스”)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기준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보육 서비스”)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지 조사해야 할 것임	- OECD - 보건복지부
PF4.2	-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지표로서 “아동 대 교사 비율” 현황 자료를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PF4.3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CO1.2	- 건강수명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CO1.4	- OECD 기준에 따라 백일해와 홍역 유행률을 정의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CO1.5	- OECD 기준에 따라 모유수유 경험을 정의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CO1.6	- 아동은 학령별이 아닌 연령별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CO1.8	- OECD 기준에 따라 흡연율을 정의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CO3.3	- 한국 학생들이 PIRLS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
CO3.5	- “니트족 (학업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임	- 통계청
CO3.6	- 국제결혼부부,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자녀의 학업능력성취도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OECD - 보건복지부
CO4.3	- OECD 기준에 따라 청소년 음주율을 정의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OECD Family database에 대해 보다 풍부한 한국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연구 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10년도 인구센서스 샘플 자료를 이용한 자녀수와 자녀 연령별 가족 구조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 시계열 변화 분석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전국적인 이용률 현황
- 동거 부부의 가족 생활에 대한 조사
-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의 지표 비교 분석 및 정책 방안 제시



## 참고문헌 <<

### <국내 학회지 논문, 연구보고서 등>

- 강은정 · 조영태 · 김나연 · 신호성 (2008).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 김태완 · 박신영 · 이병희 · 임병인 · 이서현(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 (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 가족지원체계 구축과 자립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영 외 (2006). 이혼 후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원 외(2008). WPS 2005 한국의 사업체와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 박수경 (2009).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및 체계개발.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보고서.
- 안강모 · 김지현 · 권호장 · 채유미 · 함명일 · 이기재 · 박용민 · 이소연 · 한만용 · 김우경 (2011). 2010년 한국 어린이 · 청소년의 천식, 알레르기 비결막염, 아토피피부염 증상 유병률 조사 :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한 전국 서베이. 대한의사협회지, 54(7), pp.769-778.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이미정 외 (2011). 미혼부 책임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봉주 외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이석구 외 (2011).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학교.
- 이은경 · 유효순 (2011). 2010년도 감염병감시체계 운영 결과. 질병관리본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질병관리본부 (2010). 제6차(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한국교육개발원 (2010). 2010년 학생 표본 건강실태 조사 및 분석. CR 2010 -38-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VI).

〈OECD 보고서 및 통계 자료〉

OECD(2008).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OECD Education database.

OECD Health data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국내 정부부처 및 관련연구기관 각종 자료, 법령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12)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moe.go.kr/>)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자료

근로기준법 (2012)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2013) <http://www.escac.or.kr/>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자료

보건복지부 (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내부자료 (2012)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통계청, 사망원인조사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

통계청, 영아모성사망조사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자료

통계청, 주민등록통계자료

통계청, 출생통계자료

통계청, 혼인 및 이혼 통계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2년 4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한국노동패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999년 한국노동패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5년 사업체 패널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자료